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벤처캐피탈 및 벤처투자조합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길라잡이

저자 고철수



KVCA
한국벤처캐피탈협회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2024

VENTURE CAPITAL AML GUIDE BOOK

※ 본 자료는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을 운용하는 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위한 참고자료로, 법령 해석 및 유관기관 지침 등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Contents

제1장 | 자금세탁방지 개요

제1절 자금세탁방지 정의와 특성	2
제2절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6
제3절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법령	12

제2장 | 고객확인 의무

제1절 고객확인 의무와 업무처리	18
제2절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35

제3장 | 위험평가 및 거래 모니터링

제1절 위험평가 개요	42
제2절 국가위험 평가	44
제3절 고객위험 개요	47
제4절 상품 및 서비스위험 개요	48
제5절 거래 모니터링 체계	49
제6절 위험평가 모델의 구축	51

제4장 | 보고체계와 의심거래보고

제1절 보고체계 수립과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56
제2절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58
제3절 의심스러운 거래 판단 기준	59
제4절 의심거래보고 업무 범위와 시기	60
제5절 의심거래보고 방법과 양식	61

제5장 | 내부통제

제1절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102
제2절 교육 및 연수	105
제3절 직원알기제도	107
제4절 독립적 감사	108
제5절 기록보존	110
제6절 비밀보장 및 면책 규정	113

제6장 | 자금세탁방지 감독 및 검사기관

제1절 감독기관 : 금융정보분석원(FIU)	120
제2절 검사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127

제7장 | 해외사례를 통한 벤처캐피탈 가이드언스

제1절 2022년 싱가포르통화청-자본시장 중개인법: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예방 고시 주요 내용	134
제2절 2024년 미국 재무부-투자자문 위험평가 가이드언스 주요 내용	148

부 록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업무규정 별첨

벤처캐피탈 및 벤처투자조합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길라잡이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제1장

자금세탁방지 개요

제1절 자금세탁방지 정의와 특성

제2절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제3절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법령

제1절 자금세탁방지 정의와 특성

가. 국제적 도입 배경

UN, G7, OECD 등 국제기구들은 마약과 테러 등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조직범죄를 억제하고 범죄자들이 불법 수익을 가장·은닉하여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국가 간의 협력과 공조를 강조하는 국제 협약 등을 통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금지¹⁾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 자금 조달금지를 위한 국제 협약은 다음과 같다.

Q 자금세탁방지

- **비엔나 협약²⁾ (1988년)** : 마약 등 관련 범죄수익의 자금세탁행위 범죄화 및 물수를 포함하는 형사처벌, 범죄인도 및 사법공조 등에 관하여 규정 (주요 조항 : 마약범죄의 정의, 자금세탁행위의 범죄화, 물수, 국제협력 등)
- **바젤위원회 선언 (1988년)** : 국제결제은행(BIS)은 금융시장이 범죄와 관련될 경우, 일반인의 신뢰도가 저하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각 회원국들의 은행들이 선언에 합치되는 정책과 관행을 채택하도록 권고 및 장려할 것을 발표 (주요 내용 : 은행의 고객확인 의무, 자금거래와 관련한 법규 준수 및 자금세탁 혐의거래에 대한 지원거절, 고객비밀보호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협조 등)
- **팔레모 협약 (2000년)** : 98년 유엔 총회 결의에 따라 2000년 12월에 이탈리아 팔레모에서 국제 조직범죄 방지와 관련된 협약이 체결되었다 (주요 내용 : 3인 이상 조직범죄 단체의 국제적인 중대 범죄와 관련해 조직범죄단체 가담, 범죄수익금 세탁, 사법방해, 각종 부패행위 등을 처벌하기 위한 국가 간 협력의무와 국내 입법의무를 규정)

1)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Anti Money Laundering & Combat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이하 자금세탁방지)

2) 협상에 의하여 조약을 맺는 것/국가와 국가사이에 문서를 교환하여 계약을 맺음

- **볼프스버그 자금세탁방지 원칙** : 12개 선진 은행들의 모임인 볼프스버그 그룹(Wolfsberg Group)에서는 고객확인,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수집, 내부감독, 의심거래의 확인 및 조치, 내부통제와 직원교육 등에 대하여 원칙을 발표하였다.
- **메리다 협약 (2003년)** : 제58차 UN총회에서 채택된 UN 부패방지협약에서는 선진국과 후진국, 공공 및 민간부문에 해당하는 반부패 국제규범을 채택하였다. (주요 내용 : 예방조치, 범죄규정 및 법집행, 국제협력과 자산 회복 등)

🔍 테러 자금 조달금지

- **테러자금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 (1999년)** : 테러조직의 활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 공조를 위하여 국제협약이 체결되었다. (주요 내용 : 불법적이고 고의적인 자금제공과 모집의 범죄규정, 테러범죄 발생시 조치, 테러자금에 대한 몰수, 금융기관의 실명확인, 관련된 조치와 의심거래보고 신고 등)
- **유엔 안보리 결의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 UNSCR 1373호 (2001년) : 테러자금 자금조달 예방 및 진압조치, 테러행위에 대한 단체 및 개인 지원 행위 금지, 국제협력 등
 - UNSCR 1267호 (1999년) : 탈레반 및 오사마빈라덴 관련
 - UNSCR 1718호 (2006년) : 북한 대량살상무기 관련
 - UNSCR 1988호 (2011년) : 아프간과 탈레반 관련
 - UNSCR 1989호 (2011년) : 알카에다와 테러조직 관련
 - UNSCR 2231호 (2015년) : 이란의 무기수출 관련
 - UNSCR 2253호 (2015년) : ISIL과 알카에다 관련

나. 국제기준에서의 자금세탁 및 테러 자금의 정의

위의 국제 협약인 비엔나 협약(1988년)과 팔레모 협약(2000년), 테러 자금 억제를 위한 국제 협약(1999년)에서는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Q 자금세탁

- 마약밀매 범죄 등에서 유래된 자산임을 알면서도 그 불법 출처를 은닉하거나 가장할 목적으로 또는 관련자의 법적책임을 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자원을 목적으로 당해 재산의 전환 또는 이체하는 경우
- 범죄 또는 그러한 범죄의 가담에서 유래된 자산임을 알면서도 그것의 성질, 출처, 소재, 처분, 이동 권리 또는 소유권의 은닉 또는 가장하는 경우
- 범죄 또는 그러한 범죄의 가담에서 유래된 자산임을 수취 시점에 알면서도 그것의 취득, 소유 또는 사용하는 경우

Q 테러자금 조달

- 자금이 '테러자금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1999년)' 또는 대중을 협박하거나 정부나 국제기구가 금지하는 목적의 무장충돌의 상황에 대하여 적대행위에 가담하지 않은 다른 개인들을 사망하게 하거나 심각한 범죄행위에 의도를 가지고,
- 또는 자금이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가 다음의 행위에 이용되는 것을 알면서도 직접적 또는 간접적, 불법적이고 고의로, 어떠한 수단으로든 자금을 제공하거나 모집하는 경우

다. 자금세탁의 특성

- **국제범죄성 (International Crime)** : 자금세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서, 자금세탁은 일반적으로 한 국가 내에서만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고 금융거래로 대표되는 금융기관, 무역거래, 전자지갑(Electronic Wallet)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여 2개 국가 이상의 국경을 넘나드는 것을 말한다.
- **조직범죄성 (Organized Crime)** : 자금세탁은 자금의 실제소유자가 직접 또는 단독으로 자금세탁을 수행하는 경우는 일부이고, 은밀하게 범죄조직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임.

특히, 조직범죄는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 종사자, 세관원, 투자자문 등 분야뿐만 아니라 특정비금융사업자 관련 전문가들이 자금세탁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

- **화이트칼라형 범죄 (White-Collar)** : 일반범죄와 달리 자금세탁 범죄는 전문지식과 IT기술 등이 필요한 범죄로서 화이트칼라형 범죄의 특성을 갖추고 있다.

화이트칼라형 범죄는 대부분 발견하기 어렵고, 범죄에 연루된 개인이나 조직이 경제적 이득을 취할 때, 사회적 지위나 직업적 특성 및 권한을 이용한다. 또한, 다른 범죄에 비해 간접적으로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 자금세탁의 3단계

- **예치·배치(Placement)** : 범죄행위로 취득한 불법재산을 취급하기 용이하고 덜 의심되는 형태로 변형하여 수사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그 소재를 이전하여 최종적으로 금융기관에 유입시키는 단계를 말한다.
- **은폐·반복(Layering)** : 자금세탁행위자가 범죄자금의 출처와 소유주를 감추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금융거래 단계를 거쳐 거래빈도, 거래량 등에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유사하게 만들어 자금추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단계를 말한다.
- **통합·합법화(Integration)** : 충분한 반복단계를 거쳐 출처 추적이 불가능하게 된 불법자금을 정상적인 금융과 사업활동 등으로 합법재산으로 통합시키는 과정을 말한다.

제2절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가. 자금세탁방지 체계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체계는 사법제도 및 금융제도 그리고 국제협력의 세 가지 특징으로 구분된다. 사법제도의 특징은 자금세탁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전제 범죄에 해당되어야 자금세탁 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다.

금융제도의 특징으로서는 여러 국제 협약과 바젤위원회 선언 등에서 언급된 고객확인 의무, 기록보존, 의심거래보고, 내부 보고체계 등을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국제협력은 사법 및 금융제도의 협력과 더불어 국가간의 정보공유 등을 포함하고 있다.

- 사법제도의 특징
 - 자금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 : 범죄행위 또는 불법활동으로부터 유래된 불법수익의 세탁행위를 범죄로 규정하여 처벌
 - 전제범죄(Predicate Offense) : 전제 범죄로 정립되지 않은 범죄는 불법 자금세탁행위로서 처벌할 수 없음
- 금융제도의 특징
 - 고객확인 의무 / 기록보존 / 의심거래보고 / 고액현금거래보고
 - 금융기관의 내부보고체계 구축 / 금융정보분석원의 설치 운영 및 국제협력 등

나.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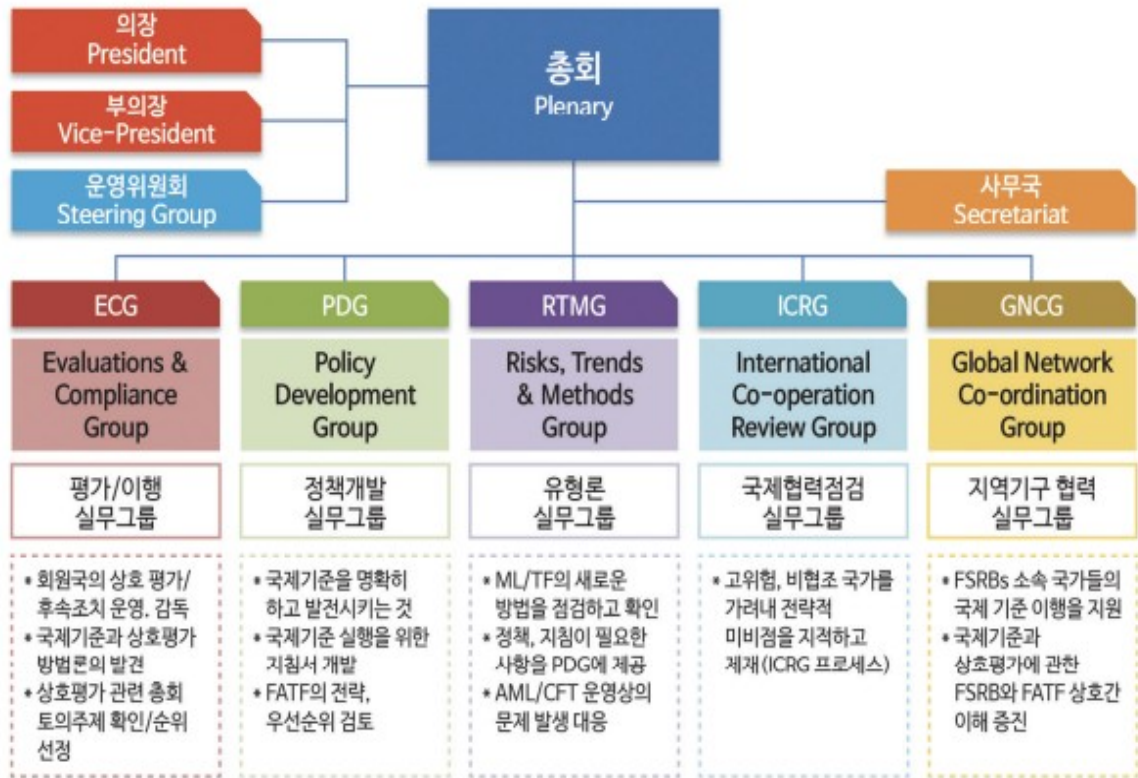
국제사회는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금지에 대한 그간의 국제협약과 유엔의 결의에 따라, 글로벌 기준 미준수와 범죄행위에 근거한 불법 경제활동을 하는 개인(단체) 및 국가에 대해 전쟁이 아닌 제재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1989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G7정상회의에서는 합의를 통해 유엔의 협약과 결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는 국제기구를 설립하고자 했으며 OECD의 특별기구로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이하 FATF)가 출범하게 되었다. FATF는 9개의 지역별 자금세탁방지기구(FATF-Style Regional Body, 이하 'FSRB')와 더불어 유엔안보리 결의안의 실질적 집행기구로서 성명서(Public Statement)를 통해 실질적인 금융거래 제한 국가목록을 발표하고 있다.

전 세계 금융 기관들은 동 성명서의 금융거래 제한 목록에 포함된 국가들(단체 및 개인)과 거래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위반과 연관이 없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이는 FATF가 실질적으로 금융거래를 제한하는 강력한 금융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FATF의 주요 활동은 국제규범(FATF 권고사항) 제·개정 및 FATF와 9개의 지역별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Style Regional Body, 이하FSRB) 회원국들의 국제규범에 대한 이행과 감독이다. 이러한 활동은 자금세탁 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에 대한 효과적인 이행과 국제적 네트워크 강화라고 할 수 있다.

FATF의 조직은 사무국, 운영위원회, 5개 실무그룹 그리고 총회의 구조로 되어 있으며, 중요 이슈에 대해서는 실무그룹의 논의를 거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의 의결로 결정되어 시행된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그룹(VACG)의 운영과 더불어 인터폴(Interpol)과 함께 금융범죄예방에 대한 활동도 강화하고 있다.



• FATF의 40 권고사항과 의의

FATF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관련 국제기준인 FATF 40 권고사항을 발표하였다. FATF 40 권고사항은 모든 회원국들이 준수해야 하며 사법제도 및 금융제도를 동 권고사항에 적합하게 구축해야 한다. FATF 40 권고사항은 세부 내용을 정의한 FATF 40 권고사항의 방법 해설서·주석서(Methodology), 용어 해설서(Glossary)등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40 권고사항은 법적 성격상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국제규범의 형성에 있어 ‘형성 중에 있는 법’ 또는 ‘형성되어야 할 법’(lex ferenda, future law or what the law should be)의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권고서 내용상의 ‘should’ 또는 ‘may’는 ‘must’로 해석해야 한다고 용어집에 기술되어 있기 때문에, 주석서의 내용 파악 시 주의가 필요하다(‘should’ : For the purposes of assessing compliance with the FATF Recommendations, the word should has the same meaning as must).

FATF 40권고사항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에 대하여 효과적인 국제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으로는 정책과 조정, 자금세탁과 몰수, 테러자금조달과 확산금융, 예방조치, 법인·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제소유자, 법 집행기관 등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 국제협력 등이다. FATF는 국 9개의 지역별 국제기구(FATF Style Regional Bodies, 이하 FSRB)와의 공조를 통해 회원국들에 대하여 국제자금세탁 방지기구(FATF)권고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회원국 서로의 상호평가 (Mutual Evaluation, 이하 'ME')를 실시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법제도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갖추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2014년부터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ME)에서 권고사항에 대한 법과 제도 구축에 대한 기술적 평가(Technical Compliance)와 더불어 그 법과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효과성 평가(Immediate Outcomes)가 함께 점검되고 있다. FATF의 상호평가(ME)는 평가 결과가 국제적으로 공포되고 있으며 미흡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보고하고 단계별 제재를 시행하고 있다. 이는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 수준이 해당 국가 및 회사들의 신용도와 연계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정부와 회사들의 협력체계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FATF의 40 권고사항에 따라 각국이 이행해야 할 핵심(Core)적인 조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 위험의 확인, 정책개발과 국내적 조정(Coordination)의 수행
-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 금융을 추적
- 금융 부문과 다른 지정된 분야를 위한 예방조치 적용
- 권한당국(법집행기관)과 조치 기관들의 권한과 책임을 정립
- 국제협력의 추진

(참고1) FATF 40 권고사항 주요 내용

주 제	세 부 내 용	권 고
A. 정책과 조정	국가적 위험평가와 위험중심 접근법 적용,	1~2
	국가 내부 참여주체의 협력과 조정	
B. 자금세탁과 몰수	자금세탁 범죄, 몰수와잠정조치	3~4
C. 테러자금조달과 확산금융	테러자금조달 범죄화 및 정밀금융제재,	5~8
	확산금융 관련 정밀금융제재, 비영리조직	
D. 예방 조치	금융비밀 법률, 고객확인제도, 기록보관, 요주의인물, 환거래은행, 자금·가치 이전서비스, 새로운 기법, 전신송금, 제3자 의존, 내부통제와 해외지점,	9~23
	고위험국가, 의심거래보고, 정보누설, 특정비금융사업자	
E. 법인·법률관계의 투명성/실소유자	법인의 투명성과실소유자 관리시스템	24~25
	법률관계의 투명성과 실소유자 관리시스템	
F. 관계기관의 권한과 책임	금융회사/특정비금융사업자에 대한규제·감독, 감독기관의 권한, 금융정보분석원, 법집행기관/조사당국의 책임과 권한	26~35
	현금반출입관리, 통계, 지침과 피드백, 제재	
G. 국제협력	국제협약이행, 국제사법공조, 범죄인송환, 기타	36~40

- FATF의 상호평가 및 후속 조치

Q FATF의 상호평가

FATF의 상호평가는 FATF 인증 상호평가 교육을 받은 회원국들의 평가자들이 팀을 이루어 회원국들을 평가하고 있으며, 보통 해당 국가의 상호평가 1년 전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주요 활동은 FATF 기술적 이행평가(Technical Compliance Assessment)와 효과성 평가(Immediate Outcomes, 이하 IO)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와 관련된 수검 국가의 전반적인 법제도 기반과 실제 효과에 대해 서류검토 및 방문실사(모니터링, 인터뷰 등) 등 다양한 점검을 통하여 수검국가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향후 FATF 총회에서 발표한다.

Q FATF 상호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FATF 상호평가는 평가 결과에 따라 '후속조치'와 'FATF 국제협력점검 실무그룹(International Co-operation Review Group, ICRG) 점검'으로 나누어진다. 후속 조치는 다시 우수평점인 '정규 후속조치'와 미흡한 평점인 '강화된 후속 조치'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대다수의 FATF 상호평가 수검 국가는 '강화된 후속조치 점검'을 받고 있으며, FATF의 국제협력점검 실무그룹(ICRG)의 제재 절차 운용은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에 대한 체계가 취약한 비협조 국가에 대해 실시되고 있다. FATF의 상호평가가 중요한 것은 회원국가가 미흡한 평점을 받을 경우, 국가신용등급과 국제금융시장에서 자금조달시 금리 상승, 금융거래 제한 등 제재를 동반하므로 FATF의 상호평가의 우수 평가 취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제3절 우리나라의 자금세탁방지 법령

글로벌 자금세탁방지 체계와 FATF 40 권고사항에서는 사법 및 금융제도, 국제협력을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주요 특징으로 제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자금세탁방지 보고제도와 처벌 제도로 나누어 법령으로 정립되어 있다. 보고제도의 법령으로는 금융실명법과 특정금융정보법이 있으며, 처벌제도의 법령으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과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마약거래방지법 등이 있다.

벤처캐피탈의 경우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2조 금융회사 등의 정의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캐피탈)은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가. 보고제도 법령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금융실명법)
 - **(제정 배경)** 1993년 8월 12일에 김영삼 대한민국 대통령은 부정부패 척결 등을 목적으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발동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 1997년 12월 31일 공포될 때까지 약 3년 5개월간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 체제로 금융실명제를 실시하였다.
 - **(금융실명법의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특징)**
 - ▶ **(실지명의 확인)** 금융회사는 실명에 의해 금융거래를 해야 하며, 실명확인인 성명과 주민등록번호의 확인 및 실명확인증표에 첨부된 사진 등에 의하여 반드시 거래자 본인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제시된 실명확인증표의 사진에 의하여 본인여부 식별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실명확인증표를 보완용으로 사용 가능하다.
 - ▶ **(차명 금융거래 금지)** 금융거래에 있어서 차명거래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위반 시 제재에 처한다. 또한 소유권의 경우 차명계좌주로 추정한다.
 - ▶ **(금지행위)**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와 함께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의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 ▶ **(제재)** 불법 차명거래자, 불법 차명거래를 알선·중개한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에게 3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에 처한다.
 - ▶ **(소유권)** 계좌 금전의 소유권은 출연자가 아닌 차명계좌주로 추정한다.

-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 **(제정배경)** 2001년 제2차 외환자유화 조치에 따른 불법자금의 국내외 유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기준 준수와 더불어, 반사회적인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의 확립을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 **(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핵심의무 조항)** 특정금융정보법 법령 대부분이 해당되며 특히 '제2장 금융회사 등의 의무'가 중점 조항임
 - ▶ 제4조 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 ▶ 제4조의2 금융회사등의 고액현금거래보고
 - ▶ 제5조 금융회사 등의 조치 등
 - ▶ 제5조의 2 금융회사등의 고객확인업무
 - ▶ 제5조의 3 전신송금 시 정보제공
 - ▶ 제5조의 4 금융회사등의 금융거래등 정보의 보유기간 등

나. 처벌제도 법령

-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 **(제정배경)** 특정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 은닉행위를 규제하고, 그에 대한 몰수 및 추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특정범죄를 조장하는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건전한 사회질서 유지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특정범죄란 재산상의 부정한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범한 죄로서 형법에서 규정한 범죄단체 조직(114조 1항), 공무원의 수뢰(129조) 및 알선수뢰(132조), 통화위조(207조) 등의 중대범죄와 성매매 알선 등을 영업으로 하는 행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19조 2항 1호) 등으로 정의한다.

-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특징)**
 - ▶ 범죄수익 등의 취득 또는 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범죄수익의 발생원인에 관한 사실을 가장한 자, 특정범죄를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범죄수익 등을 은닉한 자 등에 대한 처벌
 - ▶ 금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는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임을 알게 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되, 그 사실을 신고에 관련된 금융거래 상대방과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됨 (위반시 처벌)

- ▶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 등은 몰수할 수 있다. 몰수대상 재산이 몰수대상 이외의 재산과 혼화된 경우에는 혼화재산 가운데 몰수대상 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 ▶ 몰수대상 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이외의 자에게 귀속된 경우에는 몰수 요건의 예외로 하되, 범죄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다.
- ▶ 몰수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거나 그 재산에 관한 범인 이외의 자의 권리 등의 사정 때문에 몰수함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할 수 있다.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하 테러자금금지법)

- (제정배경)

- ▶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테러자금금지법’)은 2008년 12월에 제정된 법률로서 테러자금조달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법이다. 동 법은 우리나라가 2004년 2월 17일 서명, 비준한 「테러자금조달의 억제를 위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uppression of the Financing of Terrorism, 1999)」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장치의 역할을 하고 있다.
- ▶ ‘테러자금’이라는 용어 대신 ‘공중 등 협박 목적을 위한 자금(공중협박자금 또는 테러자금)’을 쓰고 있는데 공중협박자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구 포함)의 권한 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유형의 폭력·파괴행위에 이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의미한다(테러자금금지법 제2조 제1호)라고 규정하고 있다.

-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특징)

-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은 테러자금금지법상 공중협박자금을 ‘불법재산’에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며, 금융기관등은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 또는 공중협박자금 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FIU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보고할 의무(의심거래 보고)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1항).
- ▶ 금융회사등의 종사자는 금융거래등과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공중협박자금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 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테러자금조달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하며, 이 경우 FIU에도 보고해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제1항제3호, 테러자금금지법 제5조제2항).
- ▶ 공중협박자금*(테러자금)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모집·제공하거나 이를 운반·보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게 되며, 또한 공중협박자금에 이용된다는 점을 알면서 자금 또는 재산의 모집·제공·운반 또는 보관을 강요하거나 권유한 자 역시 동일한 형으로 처벌받게 된다(테러자금금지법 제6조제1항).

* 공중협박자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외국정부(국제기구 포함)의 권한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할 목적으로 또는 공중을 협박할 목적으로 하는 일정한 유형의 폭력·파괴행위에 이용하기 위하여 모집·제공되거나 운반·보관된 자금이나 재산을 의미한다. (테러자금금지법 제2조 제1호)

▶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 지정) 금융위원회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를 성실히 준수하기 위하여 또는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규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중협박자금조달 또는 대량살상무기확산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법인·단체를 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테러자금금지법 제4조제1항)

•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별법 (이하 마약거래방지법)

- **(제정배경)** 1995년에 국제적 협력과 마약류 범죄의 진압과 예방을 도모하고 이에 관한 국제협약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관계 법률에 대한 특례 등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이다.

-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 특징)**

- ▶ 마약류 범죄로 얻은 불법수익은 물론 그로부터 유래한 재산도 몰수대상에 포함한다. 불법재산 이외의 재산이 혼화된 경우에는 불법재산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 범인이 아닌 자라도 범죄사실을 알고 불법재산 또는 혼화재산을 취득한 경우에는 몰수할 수 있다. 몰수해야 할 재산을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한다.
- ▶ 법원은 몰수대상 재산에 대해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몰수보전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또 추징재판을 집행할 수 없게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도 검사의 청구 또는 직권으로 추징보전명령을 내려 재산처분을 금지할 수 있다.



벤처캐피탈 및 벤처투자조합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길라잡이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제2장

고객확인 의무

제1절 고객확인 의무와 업무처리

제2절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제1절 고객확인 의무와 업무처리

- 관련 근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8호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20조 등
- 정의와 이행 대상
 - **(정의)** 고객 확인이란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거래 또는 서비스가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고객 확인 및 검증, 실제 소유자* 확인 및 거래 관계의 목적, 자금 원천 확인 등 고객에 대하여 합당한 주의를 기울이는 제도를 의미함
 - * 실제소유자 :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최대 주주가 법인인 경우, 최대 주주 법인의 실제소유자 자연인이 최종 실제소유자)
 - **(대상)** 벤처투자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투자 시 피투자 기업, 투자조합 결성 시 출자자(LP; Limited Partner) 등이며 세부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 ① (자본모집) 벤처투자회사 설립 및 조합 결성 등 자본을 모집하는 과정에 참여한 출자자 등 자금제공자에 대한 고객확인
 - ② (투자) 벤처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 그 투자대상에 대한 고객확인
 - ③ (매매) 벤처투자회사가 직접 또는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해 유가증권 등을 거래하는 경우 그 거래 상대방에 대한 고객확인
 - ④ (기존고객의 정기 또는 수시 고객확인) 기존고객에 대하여 정기 (2-3년) 또는 수시로 고객확인 재이행을 해야 하며 고객정보(예: 연락처, 주소 등)를 업데이트 해야 함
 - ⑤ (역외펀드 및 역외일임투자) 해외투자 거래의 구조, 실제 투자자의 개별운용지시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고객확인의 대상이 되는 고객은 개별투자자 또는 해외자산운용사중 일부 또는 전부가 될 수 있음
 - * 역외펀드 : 외국법령에 의하여 모집된 집합투자기구의 자금이 국내에 투자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를 의미
 - * 역외 일임투자 : 역외에서 투자자와 역외투자일임업자간 일임계약 체결후 해당 자금이 국내에 투자되는 거래를 의미

【 역외펀드의 고객 및 실제소유자 확인대상 】

위험도	고 객	실제소유자
저위험*	자산운용사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기존유권해석**)
고위험		지분비율 등 원칙대로 확인

* FATF권고기준 또는 국내 자금세탁방지 규정과 동일한 수준의 자금세탁방지 규정을 준수하고 있음을 해당국가의 금융당국등으로부터 충실히 감독·모니터링을 받고있는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 가능

** 외국 금융회사가 해당국가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충실히 감독·모니터링을 받고있는 경우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 가능

【 역외일임의 고객 및 실제소유자 확인대상 】

위험도		고 객	실제소유자
저위험	투자자 운용지시*가 있는 경우	투자자	지분비율 등 원칙대로 확인
		자산운용사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
	투자자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자산운용사	실제소유자 확인 면제
고위험		투자자	지분비율 등 원칙대로 확인
		자산운용사	

* 국내 증권사가 해외 개별투자자로부터 직접 운용지시를 받는지 여부

나. 적용 대상 고객과 이행 방법

- 적용 대상 고객과 이행 방법 : 고객과 고객확인 대상 거래시
 - 문서나 질문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정보를 획득하여 확인(Identification)
 - 고객으로부터 획득한 정보를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문서, 자료, 정보 등을 통하여 검증(Verification)
- 원칙
 - 신원확인정보는 1차적으로 금융실명법상 인정되는 실명확인증표**를 통해 확인

구 분	CDD(고객확인 의무)						EDD(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실지 명의*	주소	연락처	대표자 정보	업종	설립목적	직업 (직종)	거래 목적	자금 원천
개인 (개인사업자 포함)	●	●	●				○	○	○
영리 법인	●	●	○	○	●			○	○
비영리 법인	●	●	○	○		●		○	○

☞ ● : 확인 및 검증(검증서류의 징구) ○ : 확인(검증서류 불필요)

* 【실지명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4항

-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 법인의 경우 법인세법에 의해 교부받은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법인명 및 등록번호

** 【실명확인증표】

- 개인은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 확인 및 사본 징구(다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부착된 사진에 의하여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표도 가능)
-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사업자등록증 확인 등 (다. 실제소유자 확인과 업무처리 방법중 법인의 신원확인 및 업무처리방법 참조)

다. 실제 소유자 확인과 업무처리 방법

• 법인 및 개인의 확인 및 검증 항목

구 분	확인 및 검증 항목
법인 (단체)	○ 신원에 관한 사항 - 법인(단체)명, 실명번호, 주소(외국기업인 경우 연락 가능한 실제사업장 소재지), 연락처, 업종(영리법인), 설립목적(비영리 법인), 대표자 정보(성명, 국적, 생년월일) ○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 - 법인(단체)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실제 소유자)의 정보(성명, 국적, 생년월일)
개인	○ 신원에 관한 사항 - 성명,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업종(개인사업자) ○ 실제소유자에 관한 사항 - 개인고객은 실제소유자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 - 단, 타인을 위한 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거나 고객이 실제소유자가 존재한다고 밝힌 경우 실제소유자의 신원, 실명번호, 국적을 확인

• 실제 소유자 확인

- (개요) 실제소유자란 ‘고객을 최종적으로 지배하거나 통제하는 자연인’

- ▶ 개인 : 개인 고객은 실제 소유자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
- ▶ 법인(단체)

㉞ 국가, 지자체, 공공단체, 금융기관(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포함), 상장법인은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 가능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 5 제5항의 법인 및 단체 및 사업보고서 제출 법인)

㉟ 그 외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가이드에 따라 단계별 실제소유자 확인

단 계	내 용	비 고
1단계	25% 이상의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이름, 생년월일, 지분, 국적(외국인)을 확인
2단계	최대 지분을 소유한 사람이 있는 경우 소유자 중 1인	
	대표자 또는 임원·업무집행 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가 있는 경우	
	1, 2 단계 외에 법인·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단계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중 1인	지분 확인 불필요

※ 법인이 법인을 지배하는 사례

- 최종 지배하는 자연인을 확인 할 때까지 확인해 들어가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고객의 주주명부와 대주주의 주주명부를 징구 후 고객의 대표자를 실제소유자로 등록 (주주명부 2개 이상 필수 첨부)

※ 비영리법인(단체)의 실제소유자

-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교회 등 비영리법인의 실제소유자(실질적 지배자) 확인은 정관, 관리규약 등 서류를 징구하여 지배구조,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며, 통상은 대표자가 실질적 지배자가 되는 것이 일반적임

【 실제 소유자 확인 생략이 가능한 ‘공공단체’의 범위 】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5 제5항 제2호에 명시된 공공단체

구 분	공공단체 확인방법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 공공기관알리오(www.alio.go.kr)에 공개된 공공기관
정부 출연연구기관 및 연구회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별표]의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별표]의 연구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클린아이(지방공기업경영공시시스템, www.cleaneye.go.kr)에 공개된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지정하는 자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 규정」 별표1의 공공단체

【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 】

단체구분		징구 서류			
		신원확인 및 검증서류		실제소유자 확인 서류	설립목적 확인서류
		대표자	대리인		
사 단 법 인	주식회사			• 주주명부 • 주식 등 • 변동상황명세서	-
	유한회사 합자회사	• 법인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법인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법인등기부등본	• 출자자 명부	• 비영리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
	합명회사	• 법인등기부등본	• 위임관계 확인서류 (위임장, 법인인감 증명서 등)	• 출자자 명부 등 • 실제소유자 확인서류	
	기타 사단법인				
재단법인				• 출연자 명부	
고유번호 부여 받은 단체(유치원,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 단체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단체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위임관계 확인서류 (위임장, 법인인감 증명서 등)	• 정관, 규약 등 • 고객이 작성한 고객거래확인서의 실제소유자 확인 • 정보 확인한 서면내용	• 정관,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증, 회칙(관리) 규약, 소속증명서 (종교단체) 등 • 공공기관 웹사이트 정보활용 가능
외국법인		• 투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 법인등기부 등본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투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 대리인 실명확인증표 • 공증을 받은 위임장 • 법인등기부등본 (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주주명부(State of information) 또는 해당법인으로부터 실제소유자의 성명 (영문포함), 생년월일, 지분율, 국적정보가 명시된 공문	-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 -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법인 고객의 업무처리 방법

– (1단계) 서류 준비

구 분	신원확인 및 검증 서류	실제 소유자 확인 서류
일반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4대보험 가입증명서, 정관, 기업인증 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입증명서	주주(출자자) 명부, 주식 등 변동사항명세서
기타단체	단체의 설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고유번호증, 정관, 규약 등),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정관, 규약 등
외국기업	투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 현지 법인등기부등본(Certificate of Incorporation)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주주명부(State of Information) 실제소유자 정보*가 명시된 공문(성명, 국적, 생년월일, 지분율)

* 검증 서류 유효기간 : 법인등기부등본 3개월 이내, 실제소유자 확인서류 1년 이내

– (2단계) 고객 기본정보 최신화

- ▶ 제출 받은 서류를 바탕으로 고객기본정보 최신화
- ▶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번호, 법인유형(영리/비영리), 업종, 주소, 연락처, 대표자의 성명, 국적, 생년월일

– (3단계) 고객확인 정보 확인 – 신원 확인

- ▶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정보 비교하여 고객기본정보 최신화
- ▶ 고객실체, 본점 소재국가(외국법인인 경우), 대표자 성별(외국인인 경우) 고위험 고객 여부 확인
- ▶ 법인이 비영리법인(단체)인 경우 설립목적 확인

– (4단계) 실제 소유자 정보 확인

- ▶ 법인(단체)을 최종적으로 지배, 통제하는 자연인
- ▶ 실제소유자 확인 방법

【 법인(단체) 실제 소유자 확인 방법 】

① 25% 이상의 지분증권을 소유한 사람

↓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A, B, C 중 택 1

- A. 최대 지분 소유자 (25% 미만)
- B. 대표자·임원·업무집행사원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
- C. A, B 외에 법인(단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

↓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③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①, ②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법인 고객의 최대 주주가 '법인(단체)'인 경우 업무처리 방법
 - 아래의 ①을 원칙으로 하되, 실무상 어려울 경우 부득이 ②에 따라 업무처리 가능

【 최대 주주가 '법인'인 경우 업무처리 방법 】

- ① 최대주주 법인의 지분구조를 추가로 파악하여 최종지배자 확인
- 모회사의 주주명부 추가 징구, 금감원 DART 등을 통해 증빙

↓ (①로 실제 소유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아래 방법 ②)

② 고객거래확인서를 작성 요청하여, 실제 소유자 정보 확인

- 실제소유자 확인을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고객 또는 고객의 최대주주가 아래의 법인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 단,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시 그 근거 및 증빙서류 이미지 첨부 필수

【 실제소유자 확인 생략 가능 법인(단체) 유형 】

- ①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등
- ② 금융회사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금융회사 (단,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환전영업업자는 생략 불가)
- ③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법인 (상장회사)
 - 자본시장법 제159조 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으로, 금융감독원 DART에서 최근 1년내 '사업보고서' 공시 여부 확인

- (5단계) 고객거래확인서 작성자 정보

- ▶ 작성자 정보 : 고객거래확인서 작성한 경우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고객거래확인서 없이 고객확인 의무(CDD)를 수행한 경우 입력한 직원의 인적사항을 기재
 - * 법인의 경우 (예시)의 고객거래확인서 작성 완료후 법인명과 대표자 서명과 법인인감 날인
- ▶ 신원정보검증방법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내), 출력일자, 보통 주식수 입력
- ▶ 실제 소유자 검증 방법 : 주주명부, 전자공시 도장날인 및 보통주식수 비교 확인

- (6단계) 결재 의뢰

- ▶ 고객확인 의무(CDD) 이행 이후 결재 진행
- ▶ 결재선 지정 : 담당자-보고책임자를 원칙으로 하며 벤처캐피탈의 경우 회사 직원현황을 감안 하여 담당자와 보고 책임자를 통합해 운영 (회사 내규에 동 사항을 명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

- (7단계) 이미지 등록 또는 증빙서류 별도 보관

- ▶ 고객확인 의무(CDD) 검증 서류 일체를 반드시 이미지 등록 또는 증빙서류 별도 보관
- ▶ 이미지 미 등록시 고객확인 의무(CDD) 승인 제한

(참고2) 고객거래확인서-법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고객님의께서 금융기관과 거래 시에는 고객님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기재된 정보확인 및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문서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아래 사항은 기본정보로써 누락없이 기재해 주십시오.

법인/단체 정보				
법인명(한글명)	(예시) K파트너스		법인명(영문명)	(예시) K Partners
법인/단체 구분	☐ 대기업 ☐ 중소기업 ☐ 국가/지자체/공공단체 ☐ 금융기관 ☐ 외국법인(단체) ☐ 기타()			
상장 여부	☐ 상장 ☐ 비상장		국적	
상장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 코스닥시장 ☐ 뉴욕증권거래소 ☐ NASDAQ ☐ 런던증권거래소 ☐ 홍콩증권거래소 ☐ 기타()			
비영리법인 (단체)	설립목적	☐ 학술 ☐ 종교 ☐ 자선 ☐ 문화 ☐ 교육 ☐ 사회사업 ☐ 친족 ☐ 기타()		
	설립목적 검증서류	☐ 정관 ☐ 규약 ☐ 회칙 ☐ 비영리법인설립허가증 ☐ 인허가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 기타()		

대표자 정보				
대표자명	한글명	홍길동	성별	☐ 남 ☐ 여
	영문명	Hong Gil Dong	국적	대한민국
	생년월일	2000. 1. 1	국내거주여부	☐ 거주 ☐ 비거주

공통				
거래목적		☐ 투자조합 출자 ☐ 투자유치 ☐ 기타()		
자금의 원천 및 출처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 부동산임대소득 ☐ 법인/단체 경비 ☐ 차입금 ☐ 유상증자 ☐ 부동산 등 유형자산 처분 ☐ 유가증권 등 투자자산처분 ☐ 기타()		
가상통화취급업소 여부		☐ 예 ☐ 아니오		
사업자 정보	사업자명		직종(개인)	
	사업자등록번호		업종(법인/단체)	
사업장 전화번호		사업장 국적		
사업장 주소				
본점 전화번호		사업장 관련 정보는 “사업자등록증상 내용 기재”		
본점 주소				

공동대표자1				
공동 대표자명	한글명		생년월일	
	영문명		성별	☐ 남 ☐ 여
	국적		연락처	

공동대표자2				
공동 대표자명	한글명		생년월일	
	영문명		성별	☐ 남 ☐ 여
	국적		연락처	

법정대리인 (미성년자 대표자)				
대표자와의 관계				
공동 대표자명	한글명		생년월일	
	영문명		성별	☐ 남 ☐ 여
	국적		연락처	
주소				

실제 소유자 정보				
개인사업자				
실제소유자 여부		☐ 예 ☐ 아니오	생년월일	
성명	한글명	홍길동	국적	대한민국
	영문명	Hong Gil Dong	성별	☐ 남 ☐ 여

법인사업자/임의단체		(명의인인 경우 작성-‘미대상’ 선택 시 실제소유자 정보 입력)	
실제소유자 확인생략	☐ 대상 ☐ 미대상	확인생략대상	☐ 국가 ☐ 지자체 ☐ 공공단체 ☐ 금융회사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확인서류	☐ 주주명부 ☐ 주식변동사항명세서 ☐ 사원명부 ☐ 이사회명부 ☐ 출자자명부 ☐ 정관, 규약(설립목적확인서류 등) ☐ 법인등기부등본 ☐ 기타()		
실소유자 구분	☐ 주주명부 등 지분율 확인서류를 근거로, 다음 3단계 순서에 따라 실제소유자(자연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5%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 2) 위의 1)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최대지분소유자 ☐ ②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 ③ ①,②외에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 3) 위의 2)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실제소유자 지분율	()% 실제소유자 구분이 1),2)①인 경우 필수 기재(생년월일)		
실제소유자 정보	이름	영문명	
	생년월일	국적	
실소유자 구분	☐ 주주명부 등 지분율 확인서류를 근거로, 다음 3단계 순서에 따라 실제소유자(자연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5%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 2) 위의 1)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최대지분소유자 ☐ ②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 ③ ①,②외에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 3) 위의 2)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실제소유자 지분율	()% 실제소유자 구분이 1),2)①인 경우 필수 기재(생년월일)		
실제소유자 정보	이름	영문명	
	생년월일	국적	
실소유자 구분	☐ 주주명부 등 지분율 확인서류를 근거로, 다음 3단계 순서에 따라 실제소유자(자연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 25%이상 지분을 소유한 자 2) 위의 1)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아래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최대지분소유자 ☐ ② 대표자, 업무집행사원, 임원 등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자연인) ☐ ③ ①,②외에 법인 또는 단체를 사실상 지배하는 자 ☐ 3) 위의 2)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실제소유자 지분율	()% 실제소유자 구분이 1),2)①인 경우 필수 기재(생년월일)		
실제소유자 정보	이름	영문명	
	생년월일	국적	

작성대리인			
대표자와의 관계			성별 ☐ 남 ☐ 여
성명	한글명		생년월일
	영문명		연락처
	국적		휴대폰
주소	☐ 주택		
	☐ 직장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표자 성명(법인명):

법인은 법인인감날인 (서명/인)

- 개인 고객확인업무(CDD) 업무처리 방법

- (1단계) 서류 준비

구 분	신원확인 서류
내국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실명확인증표 사본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재외국민 국내거소증, 여권 + 주소확인서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 신고증

- (2단계) 고객 기본정보 최신화

- ▶ 고객 기본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최신화
 - ▶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업종, 사업장 주소지 확인

- (3단계) 고객확인업무(CDD) 정보 확인

- ▶ 신원정보, 생년월일, 국적, 직종, 업종(개인사업자의 경우) 확인

- ※ 개인고객의 검증 방법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기타(공무원증, 장애인등록증 등) 중 선택(필수)
 - 금융실명법상 인정되는 실명확인증표 외 다른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

- (4단계) 고객거래 확인서 작성자 정보

- ▶ 작성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고객거래 확인서 없이 고객확인업무(CDD)를 수행한 경우 입력한 직원의 인적사항을 기재

- (5단계) 결재 의뢰

- ▶ 고객확인업무(CDD) 이행이후 결재 진행
 - ▶ 결재선 지정 : 담당자-보고책임자

- ※ 임직원이 적어 부득이 담당을 나눌 수 없는 벤처캐피탈의 경우, 검직이 가능 (회사 내규에 동 사항을 명시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통하여 확정)

- (6단계) 이미지 등록 또는 별도 보관

- ▶ 고객확인업무(CDD) 검증 서류 일체를 반드시 이미지 등록
 - ▶ 이미지 미등록시 CDD 승인 제한

(참고3) 고객거래확인서-개인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고객님의께서 금융기관과 거래 시에는 고객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을 기재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에서 정한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기재된 정보확인 및 검증을 위해 추가적인 문서 및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검증이 불가능한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되거나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필수 기재사항 *아래 사항은 기본정보로써 누락 없이 기재해 주십시오.

개인 정보			
성명(한글명)	홍길동	성명(영문명)	Hong Gil Dong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	성별	☐ 남 ☐ 여
*실명확인 (여권인 경우)	(생년월일)	(여권번호)	
국적			
자택주소			
연락처 (휴대폰번호)			
직장	업종		
	직장명		
	직장주소		
	직장 전화번호		
거래 목적			
자금의 원천	☐ 사업소득 ☐ 부동산임대소득 ☐ 금융소득(이자 및 배당) ☐ 부동산임대소득 ☐ 법인/단체 경비 ☐ 차입금 ☐ 유상증자 ☐ 부동산 등 유형자산 처분 ☐ 유가증권 등 투자자산처분 ☐ 기타()		

상기 기재한 내용이 사실과 일치함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성 명:

(서명/인)

라. 제3자 고객확인

- 정의

-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벤처캐피탈이 금융거래를 할 때마다 자신을 대신하여 타인인 제3자로 하여금 고객확인을 하도록 하거나 타인인 제3자가 이미 당해 고객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 등을 벤처캐피탈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이를 활용하는 것을 말함

- 제3자를 활용한 고객확인 수행 시 벤처캐피탈이 직접 고객확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비하여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므로 다음과 같은 주의 의무가 필요

- 제3자의 고객확인의무 이행 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제3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외에 다음의 정보를 추가로 확인하여야 함.

- ① 고객확인의무 계약 체결 이전에 질의서 등을 통하여 제3자의 자금세탁방지 이행 정도 확인
- ② 제3자는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어야 하고,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을 것
- ③ 주요주주, 경영진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등 내용

- 제3자의 고객확인 계약시 주의 의무

- ① 관련 부서는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충족되는 경우에만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을 활용하여야 함

- ▶ 제3자는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벤처캐피탈에 즉시 제공할 것
- ▶ 즉시 제공의 의미는 제3자가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의 확인을 완료한 후 제3자가 타당한 사유에 의거 벤처캐피탈에 정보제공이 가능한 기간을 의미함
- ▶ 제3자는 벤처캐피탈의 요구가 있는 경우 고객 신원정보 및 기타 고객확인상 관련된 문서 사본 등 자료를 지체없이 제공할 것
- ▶ 제3자가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어야 하고,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을 것

- ② 관련 부서는 제3자와 고객확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고 책임자의 검토와 승인을 득하여야 함.

- ③ 관련 부서는 제3자에 의해 고객확인이 이행되는 경우 최종 책임은 당사에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야 하며, 만약 제3자가 수행한 고객확인 및 검증 내용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고객확인을 추가로 수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운영하여야 함

④ 제3자 고객확인 및 아웃소싱 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를 계약서에 반영하여야 함.

- “수탁사”는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중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및 「공중 등 협박목적에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한다.
- 위에 따른 고객확인 의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위탁사”가 요청하는 경우 고객확인 및 검증 수행 시 획득한 고객신원정보 및 기타 관련 문서 사본 등을 지체 없이 “위탁사”에 제공한다.
- “수탁사”는 제1항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 인터넷, 전화, 팩스 등을 통해 고객확인을 위한 추가정보를 획득하도록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은 “수탁사”와 “위탁사”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수탁사”에 의하여 고객확인 의무가 이행되는 경우 동 의무이행 관련 최종책임은 “위탁사”에 있다.
- “위탁사”는 고객확인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수탁사”에 대하여 점검 또는 검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이 때 “수탁사”는 동 점검 또는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 조합 재산을 수탁하는 것은 미해당, 조합의 출자자로 특정금전신탁 및 집합투자기구가 들어오는 경우 해당 출자자는 제3자 고객확인에 포함하여 고객확인을 이행하지 않아도 됨

제2절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EDD)

가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EDD : Enhanced Due Diligence]

- 관련 근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등
- 정의
 - 대상 고객에 대한 주의의무를 강화하기 위해 ‘신원·실소유자 정보’ 외 ‘거래목적’ 및 ‘거래자금 원천’ 등을 추가로 확인하는 것을 의미
- 이행 시기
 - 고객확인 의무(CDD) 수행시 자금세탁 위험평가(RA) 결과 해당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이 고위험으로 평가된 경우
- 금융거래시 거래 고객이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경우
 - * 대리인, 법인(단체)의 경우 대표자 및 실제소유자를 포함
 - 요주의인물 : ❶ 금융거래등제한대상자, ❷ 금융제재대상자, ❸ UN발표 테러리스트, ❹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PEPs), ❺ FATF 지정 위험국가 국적 고객

나.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EDD) 업무처리 절차

- 근거
 -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 업무규정 제42조
- 정의
 -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정보확인
- 이행방안 및 시기
 - **(시기)** 거래유형 등을 분석한 결과 자금세탁 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 투자업체/투자처에 대하여 자료 및 대면 조사 병행
 - **(확인사항)**
 - ▶ 개인 : 직업 또는 업종, 거래목적, 자금원천
 - ▶ 법인 : 법인구분 정보, 상장정보, 사업체 설립일, 홈페이지 등 회사에 관한 기본정보, 자금 원천, 거래목적 등

다. 간소화된 고객확인업무[SDD : Simple Due Diligence]

- 관련근거
 -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4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30조 등
- 정의
 -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이 낮은 것으로 평가된 고객에 한하여 신원확인을 제외한 실제소유자 확인 등 나머지 절차를 제외할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함
- 적용대상 및 업무 처리방법
 - 고객이 아래의 '간소화된 고객확인업무'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고객 기본정보 확인' 만으로 고객확인 업무 이행에 같음

구 분	내 용
간소화된 고객확인업무 적용대상	국가/지자체/공공단체 금융회사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상장회사)
적용 예외조건	FATF 미가입국가 국적 고객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 제30조에 따른 요주의인물 고객 자금세탁 고위험군 고객 ① 고위험 업종(대부업/해외송금업/스포츠토토, 온라인 복권 등) 관련 상품 보유 고객 ② 법집행기관에 의한 금융거래정보 요청 고객 ③ 보험계약유 의자(보험사기) 고객 ④ 비영리단체 ⑤ 조세피난처 국가 국민 ⑥ STR/CTR 이력 보유 고객 ⑦ 금융질서문란자 등록 고객 ⑧ 대표자가 고위험인 법인 고객 ⑨ 'Sanction List 등'에 등재된 고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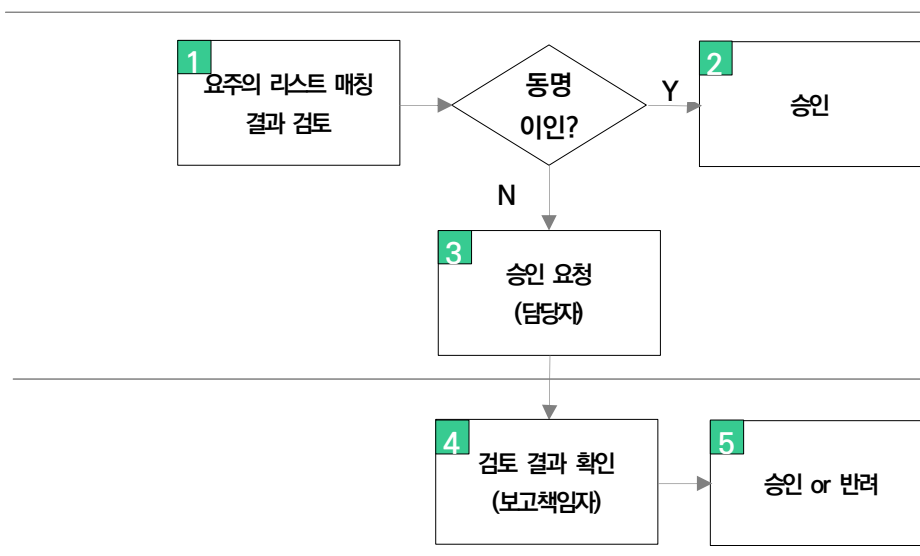
라. 요주의 인물

- 관련근거
 -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43조
- 정의
 -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가 완료되기 전에 거래 고객이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여 우리 회사 거래 고객(대리인, 실제소유자, 대표자 포함)이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거래고객이 요주의 인물로 확인된 경우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받는 등 합당한 조치를 하여야 함

*** 요주의 인물(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 제43조)**

- ①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리스트
- ②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 ③ FATF성명서 상 고위험 국가, FATF 지정 이행 취약국가 국적자(개인,법인,단체)또는 거주자
- ④ 금융회사등의 주요 해외지점등 소재 국가의 정부에서 자금세탁 행위등의 위험을 우려하여 발표한 금융거래제한 대상자 리스트
- ⑤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리스트 등

【 요주의 인물 검출시 업무 흐름도 】



벤처캐피탈 및 벤처투자조합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길라잡이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벤처캐피탈 및 벤처투자조합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길라잡이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제3장

위험평가 및 거래 모니터링

제1절 위험평가 개요

제2절 국가위험 평가

제3절 고객위험 개요

제4절 상품 및 서비스위험 개요

제5절 거래 모니터링 체계

제6절 위험평가 모델의 구축

제1절 위험평가 개요

가. 배경

- FATF는 40 권고사항에서 국가 상호평가 대응을 위하여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에 관련된 ‘위험기반접근법(Risk Based Approach)기준에 따라 위험평가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위험경감 조치를 이행토록 하고 있다.

벤처캐피탈은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에 따라 자금세탁 등과 관련된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할 수 있는 위험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위험관리체계에는 다음과 같은 위험평가 요소를 반영하여야 한다.

- 국가위험
 - 고객위험
 - 상품 및 서비스 위험 등
- 벤처캐피탈은 해당 고객의 자금세탁 등의 위험도가 적정하게 반영되도록 위험 평가요소와 중요도를 정하여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개정(시행)에 따른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체계’ 구축 및 운영 의무 준수해야 한다.

나. 금융정보분석원의 제도이행 평가

- 정의

- 제도이행평가는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위험과 통제를 식별, 평가하고 대응하는 일련의 절차를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 평가목적

- 금융회사 등이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업무 프로세스별 위험을 식별하고 분석하여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제도로써 반기별 1회 실시한다.

- 평가지표 정의

- 위험평가 지표 정의

위험	주요 내용
국가/고객	고객 위험평가 체계의 국가/고객 위험요소에 속한 고객의 해당 프로세스와 관련된 거래 건수 등을 위험지표로 설정
상품/거래	거래모니터링 등 Rule에 따른 식별 건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

- 위험지표 구분

구분	주요 내용
운영위험 지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전 업권 공통 위험평가 지표
고유위험 지표	벤처캐피탈에 해당하는 위험평가 지표

- 평가방법 : 금융정보분석원 제도이행평가 시스템에 접속후 관련 데이터 입력

제2절 국가위험 평가

가. 정의 : 국가위험이란 특정국가의 금융거래 환경이 취약하여 발생할 수 있는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말하며, 구체적인 국가 위험평가요소는 다음과 같다.

- FATF 지정 위험국가
 - FATF가 성명서(Public Statement)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Higher-risk)리스트
 - FATF가 이행 취약국가(Non-compliance)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 UN(United Nations)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등의 조치와 관련된 제재국가 리스트
-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administrators)에서 관리하는 제재국가 리스트(Sanctions Programs and Country Information)
- 미국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USA Patriot Act Sanction 311)에 따라 자금세탁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FinCEN(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정보분석기구)을 통해 특별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 및 기관 리스트
- EU에서 발표하는 자금세탁위험국가
- IMF에서 발표하는 역외금융센터(OFCs : Offshore Financial Centers) 리스트
- OECD가 발표하는 조세피난처 국가 리스트(OECD's List Unco-operative Tax Havens) - Non Complaint, Partially
- 국제투명성기구(TI)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지수(CPI : Corruption Perception Index) 20 이하의 국가
-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 INCSR(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Vol. I -마약관련 연루 국가 / Vol. II - 자금세탁관련 의심 국가 등

위의 명시된 국가는 벤처캐피탈의 자금세탁방지 전담부서 담당자가 수시로 업데이트 여부를 확인하여 자금세탁방지(AML) 시스템 상의 '국가 위험 평가부문'에 반영해야 하며 업데이트는 하단의 '국가별 출처' 표를 참조하여 해당 링크를 통해 수행한다.

【 국가별 출처 】

위험평가 국가		내 용
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www.fatf-gafi.org)	고위험국가	FATF가 성명서(Public Statement)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Higher-risk countries) 리스트
	이행 취약국가	FATF가 이행 취약국가(Non-compliance)로 발표하는 국가리스트 - Improving Global AML/CFT Compliance: On-going Process에 등재된 국가
UN *United Nations: (www.un.org/securitycouncil)	제재 국가	UN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리스트 - Sanctions에 등재된 국가
OFAC *The 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 미국 재무부 산하 국외자산통제실 (https://ofac.treasury.gov/)	제재 국가	OFAC에서 발표하는 제재, 봉쇄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조치와 관련된 국가리스트 - Sanctions에 등재된 국가
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www.fincen.gov)	조치 국가	미국 재무부가 애국법 311조(USA Patriot Act Sanction 311)에 따라 자금세탁 특별 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FinCEN (Financial Crimes Enforcement Network : 미국 재무부 산하 금융 정보분석 기구)을 통해 특별조치를 취해야 하는 국가 및 기관 리스트
OECD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경제협력개발기구 (www.oecd.org)	조세피난처	OECD에서 발표하는 조세피난처 리스트 - Non Compliant - (Provisionally) Partially Compliant - (Provisionally) Largely Compliant *조세피난처 : 법인의 실제소득의 상당부분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국가 또는 지역
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 국제통화기금 (www.imf.org)	OFCs 역외 금융센터	IMF에서 발표하는 역외금융센터 리스트 *역외금융센터 : 비거주자간의 금융거래에 대한 조세 및 외환·자본 상거래의 계약을 예외적으로 면제 또는 축소해줌으로써 그들의 금융거래를 중개해주는 금융센터
TI *Transparency International: 국제투명성기구 (www.transparency.org)	부패인식 지수 20이하	TI에서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 (CPI : Corruption Perception Index)

위험평가 국가		내 용
INCSR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s: 국제마약통제전략 보고서 (www.incsr.org)	마약 관련 국가	미국 국무부에서 발표하는 국제마약통제전략보고서(INCSR : International Narcotics Control Strategy Report) -Vol. I - Drug and Chemical Control(마약관련국가) -Vol. II - Money Laundering and Financial Crimes(자금세탁의심국가) *최종결과 : Financial Institutions transact in proceeds from international drug trafficking that significantly affects the U.S.
	자금세탁 의심국가 (Primary Concern)	
	자금세탁 의심국가 (Concern)	

나. FATF 위험국가 고객에 대한 대응조치

-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에 대한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 수행
 -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에 대한 거래는 고위경영진 승인 거래로 수행
 - FATF 지정 위험국가의 고객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및 의심되는 거래보고 체계 등 강화하여 대상자의 거래를 추적·관찰하고 필요 시 의심거래보고(STR) 수행
 - 현재 FATF가 성명서(Public Statement)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 리스트 (higher-risk countries)리스트에 해당되는 국가는 이란, 북한이며 해당 국적 고객과의 거래는 원칙적으로 거래를 거절하고, 불가피하게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해당 고객이 테러자금과 관련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득한 이후 거래를 수행하여야 함
- 그 외 FATF Statement에서 FATF 권고사항 이행 취약국가(Non-compliance)로 발표한 국가와 거래하는 경우에는 고위경영진의 승인을 득한 이후 강화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여 금융거래를 수행하여야 함
 - 회사는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상기의 대응조치 이외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이를 이행하여야 함

제3절 고객 위험 개요

가. 정의

- 고객위험이란 금융거래를 하는 고객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 위험을 말하며, 고객의 직업(업종)·거래유형 및 거래 빈도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저위험 고객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 및 제11조에 따른 감독·검사의 대상인 금융회사등(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영업자, 소액해외송금업자 제외)
 - 주권상장법인 및 코스닥 상장법인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의무를 부담하는 상장회사 등
- 고위험 고객
 - 외국의 정치적 주요인물
 - 비거주자
 - 대량의 현금(또는 현금등가물)거래가 수반되는 카지노사업자, 대부업자, 환전상 등
 - 고가의 귀금속 판매상(귀금속, 명품, 구매대행, 판화/미술용품 등)
 -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에 따라 고시하는 금융거래 제한대상자
 - UN(United Nations)에서 지정하는 제재 대상자
 - OFAC(Office of Foreign Assets Control)에서 발표하는 SDNs (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or Blocked Persons) 금융제재대상자 리스트
 - 개인자산을 신탁받아 보유할 목적으로 설립 또는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투자기구 및 신탁업자는 제외)
 - 일정 기간(최근 1년) 동안 STR 보고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고객
 - 기타 벤처캐피탈이 지정한 위험인물(금융사기 및 기타 전제범죄 연관 고객 등) 등

제4절 상품 및 서비스위험 개요

가. 정의 : 상품 및 서비스 위험이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 등의 위험을 말하며,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나. 고려사항 : 다음의 자금세탁 등의 고위험 상품 및 서비스는 금융거래 등을 고려해야 한다.

- 자금세탁 위험이 높은 비대면 거래
 - 기타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 ※ 벤처캐피탈은 업무특성상 해당 사항이 없더라도, 관련 기준을 회사(또는 조합)의 자금세탁방지 내규에 명시하고 해당이 있을 경우 이행하는 것이 필요

(참고4) 자금세탁방지 관련 업무규정

제31조(상품 및 서비스 위험)

- ① 금융회사 등(벤처캐피탈 및 벤처투자조합)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상품 및 서비스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하는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하 '상품위험'이라 한다)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품 및 서비스의 종류, 거래채널 등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② 금융회사 등(벤처캐피탈 및 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낮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할 수 있다.
 1. 연간보험료가 300만원 이하 이거나 일시 보험료가 500만원 이하인 보험
 2. 보험계약 조항이 없고 저당용으로 사용될 수 없는 연금보험
 3. 연금, 퇴직수당 및 기타 고용인에게 퇴직 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하여 급여에서 공제되어 조성된 기금으로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는 것 등
- ③ 금융회사 등(벤처캐피탈 및 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상품 및 서비스를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이 높은 상품 및 서비스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양도성 예금증서(증서식 무기명)
 2. 환거래 서비스
 3. 자금세탁행위등의 위험성이 높은 비대면 거래
 4. 기타 정부 또는 감독기관에서 고위험으로 판단하는 상품 및 서비스 등

제5절 거래 모니터링 체계

가. 개요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이 벤처캐피탈의 고객에게 지급되지 않도록 거래를 모니터링 하는 것을 말한다.
- 이를 위하여 벤처캐피탈은 투자와 관련된 업체(LP, 투자기업)와의 계약을 체결 할 경우 해당 업체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이 없는지를 확인하고 벤처캐피탈의 거래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거래에 활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나. 거래 모니터링에 대한 중점사항

- 벤처캐피탈은 자금세탁 등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의 각 절차와 방법에 따라 비정상적인 거래행위 또는 유형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거래를 모니터링을 하여야 함
 - 고객의 수집·정리된 정보 또는 유사한 고객그룹의 수집·정리된 정보와 고객의 거래 이력 비교 및 검토
 - 과거 자금세탁 사례의 정형화를 통한 고객 거래정보와의 비교 및 검토
 - 고객 거래정보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도 측정 및 거래내역 평가
 - 고객, 계좌(정산계좌) 및 거래정보의 연계를 통한 금융거래 패턴 분석 등

다. 투자업체 및 투자처에 대한 자금세탁 위험 모니터링 절차

- 벤처캐피탈의 자금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고객과 관련된 투자대상/투자처에 지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다. (벤처캐피탈의 예비검토 및 본심사 등을 병행하여 실시)
 - ① 계약관련 서류 수령
 - ▶ 계약진행 부서 또는 자금세탁방지부서는 계약절차를 진행하며 거래처로부터 사업자등록증 등을 포함한 계약관련 서류를 수령
 - ② 요주의리스트 대사
 - ▶ 계약진행 부서 또는 자금세탁방지부서는 투자대상 업체/거래처로부터 수령한 계약관련 서류 검토 시,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요주의리스트 대사를 수행
 - ▶ 투자대상이 외국국적의 거래처인 경우, 업체 영문명으로 요주의리스트 대사 수행
 - ▶ 투자대상 업체 대표자가 외국인인 경우, 대표자 영문명으로 요주의리스트 대사 수행
 - ▶ 대리인이 외국인인 경우, 대리인 영문명으로 요주의리스트 대사 수행
 - ③ 요주의리스트 대사 결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위험 고객으로 매칭되지 않거나, 매칭되었어도 동일인이 아닌 것(동명이인)으로 판명된 경우는 관련 업무절차 진행
 - ④ 요주의리스트 대사 결과,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위험 고객으로 판명된 경우는 “보고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 ⑤ 보고책임자 및 준법감시인은 보고 내용을 검토하여 투자계약 취소 및 투자금 지급 중지 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진행 부서 또는 자금세탁방지부서에 통보
 - ⑥ 계약 취소 / 투자 자금 지급 중지
 - ▶ 계약 부서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위험 고객으로 판명된 업체에 대해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지급중지 등의 절차를 이행

제6절 위험평가 모델의 구축

가. 위험평가 모델의 정의

- 투자대상 업체의 자금세탁 위험도를 평가하는 모델로 고객의 유형에 따라 국가, 고객, 상품 및 서비스 등 위험평가 요소에 벤처캐피탈의 사업 특성을 적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하고 주기적인 위험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말함

나. 고객위험평가 모델 관리 절차

- 위험평가 모델은 투자대상 업체의 업종 분포의 변화 및 행동 패턴의 변화에 의해 항상 변화될 가능성이 있고 이러한 변화는 모델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지속적으로 모델 위험평가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모델의 재설계 및 개선이 필요
 - ① 위험평가 모델 모니터링 : 위험평가요소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주기적인 모델 검정력 측정에서 모델의 검정력에 현저한 저하가 발견된 경우 등 모델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함
 - ▶ 의심거래보고 (STR) 결과와 투자대상의 위험평가 결과가 너무도 상이한 경우
 - ▶ 고위험 등급의 투자대상이 전체 투자 대비 너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
 - ② 위험평가 모델 개선 : 위험평가 모델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모델 유효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다음과 같은 모델 개선 작업을 수행함
 - ▶ 평가항목별 가중치 재계산 : 평가항목별로 고객의 위험도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의 높고 낮음을 재평가하여 가중치를 재계산함
 - ▶ 평가항목별 위험점수의 재산출 : 평가항목별로 위험점수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위험점수를 재산출함

- ③ 위험평가 모델 재설계 : 위험평가 모델 개선 작업을 통해서도 모델 유효성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다음과 같은 모델 재설계 작업을 수행함
- ▶ 평가항목의 재선정 : 의심거래보고(STR)에 영향을 미치는 평가항목을 추가하거나, 위험도가 낮은 고객에서 유의한 평가항목을 제거하거나, 실제 사례로부터 빈번하게 발생하는 위험요소를 평가항목으로 선정함
 - ▶ 평가항목의 가중치 및 위험점수 계산 : 재선정된 평가항목별로 자금세탁 위험도에 따른 가중치와 적절한 위험점수를 계산함

(예시)

1) 고유위험 평가지표 점수화

①고객위험, ②상품위험, ③채널 및 거래 특성 위험별 위험지표(FIU RBA시스템 활용)에 대한 각 금융회사의 상대적 순위 산술평균

2) 운영위험 평가지표 점수화 : ①AML위험평가체제, ②내부통제구조, ③CDD, ④STR 등 업무별 취약항목수

3) 위험평가모델 구축 : 고유위험(A) 및 운영위험(B)에 대해 각각 위험수준분포에 따라 고(30%)·중(40%)·저(30%)의 위험등급을 부여하고 매트릭스화하여 위험도를 매핑

벤처캐피탈 및 벤처투자조합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길라잡이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벤처캐피탈 및 벤처투자조합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길라잡이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제4장

보고체계와 의심거래보고

제1절 보고체계 수립과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제2절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제3절 의심스러운 거래 판단 기준

제4절 의심거래보고 업무 범위와 시기

제5절 의심거래보고 방법과 양식

제1절 보고체계 수립과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가. 개요

-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를 위해 벤처캐피탈의 담당자가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는 내부보고 체계와 이를 금융 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는 외부보고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 ※ 벤처캐피탈의 보고체계는 법인/단체 규모 및 인원에 따라 내규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나. 내부보고 체계

- 내부보고체계는 담당자와 보고책임자를 중심으로 준법감시인에게 신속하고 원활하게 보고할 수 있는 형태로 수립
-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 보고책임자는 당사의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총괄하고 보고대상거래에 대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의무를 수행
 - 보고책임자의 임면이 있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한 소정의 양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함.
- 자금세탁방지 전담부서 모니터링 담당자의 역할 및 책임
 - 자금세탁방지 전담부서 모니터링 담당자는 다음과 같이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및 보고 업무를 수행함
 - 자금세탁방지 체계에서 산출되는 Alert에 대한 분석 및 결과 보고
 - 외부뉴스의 분석, 고위험 고객 여부 결정 및 의심거래(STR) 보고 : 자금세탁방지 전담부서 모니터링 담당자가 외부뉴스의 검색 이후 해당 고객 검색 및 관리 대상 여부 결정 및 해당 고객 거래에 대한 추출/분석을 통하여 STR 보고 수행
 - 사회적인 이슈가 크고 범죄사실이 드러난 고객인 경우, 해당 고객의 과거 거래를 추출하여 임의보고를 수행
 - 수사기관의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되는 등 불법재산 등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금융거래에 대해 의심거래 보고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임의보고 수행

- 임직원의 역할 및 책임

- 벤처캐피탈의 임직원은 다음과 같이 금융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 의무 보고 대상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금세탁방지 전담부서 모니터링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자금세탁방지 전담부서 모니터링 담당자는 분석 결과에 따라 보고 여부를 판단하여 보고책임자에게 보고

Q 관련 법률 조항

- ①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을 위반하여 불법적인 금융거래를 하는 등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실명법 제3조 제3항 위반 : 불법재산의 은닉, 자금세탁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 ②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및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종사자가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5조 제1항: 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의 은닉 또는 가장(자금세탁행위)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
 - 테러자금금지법 제5조 제2항: 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제한대상자와 승인 없이 거래한 경우, 테러자금 등을 제공/모집/운반/보관한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신고

다. 외부 보고체계

- 보고책임자는 수립된 내부보고체제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KoFIU)에 보고하는 체계를 수립하여야 함 (벤처캐피탈 내규에 반영)

제2절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가. 의심스러운 거래의 정의

-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 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거래

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대상과 절차

- 의무보고 대상
 - ①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②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의심거래를 회피할 목적으로 금융거래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 ③ 범죄수익은닉규제법 및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당사의 종사자가 범죄수익이나 테러자금으로서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 임의보고대상
 - ① 특정 범죄의 존재사실까지는 확인할 필요 없으며, 당해 거래가 불법재산 수수 또는 자금세탁행위로 의심되는 근거가 있으면 보고대상
 - ②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의심스러운 거래(STR)로 보고 가능

제3절 의심스러운 거래 판단 기준

-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수단과 방법이 다양하고 수시로 변하고 있어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의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는 어려우므로

벤처캐피탈의 직원은 고객확인업무 이행을 통해 확인·검증된 고객의 신원사항 또는 실제 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과 금융거래 과정에서 취득한 고객의 업종/직업, 주소, 평소 거래상황, 사업내용 등을 감안하여 업무지식이나 전문성, 경험 등을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특히 업무부서에서는 철저한 고객확인제도 이행으로 고객의 신원사항, 실제당사자 여부 및 거래목적을 확인하고, 거래정황, 의심스러운 거래 참고유형 등을 참고자료로 삼아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보고책임자는 추가자료 및 보고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여부를 판단
- 불법재산 수수 등의 전제가 되는 구체적인 특정한 범죄의 존재 사실까지 확인할 필요는 없으며, 당해 거래가 불법재산 수수 또는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보고대상으로 판단함
- 특정금융정보법상 보고대상인 불법재산 수수,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는 수사기관 등에서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범죄 관련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 업무부서에서는 당해 거래가 불법재산 수수, 자금세탁행위 등으로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으면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는 막연한 추측보다 고객확인업무 이행을 통해 확보된 고객의 정보 및 거래내용에 대한 객관적 사실을 토대로 판단
 - 벤처캐피탈이 고객확인업무 이행을 위해 요청하는 정보에 대해 고객이 제공을 거부하거나, 수집한 정보의 검토결과 고객의 금융거래가 정상적이지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심스러운 거래로 보고하여야 함

※ 예시

- 고객확인업무 이행 시 신원정보의 제공을 거부하는 경우
- 고객이 제공한 정보와 금융거래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금융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제4절 의심거래보고 업무 범위와 시기

가. 보고업무 범위

- 자금세탁방지 부서의 모니터링 담당자는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STR) 분석 결과, 당해 거래가 불법재산 수수 또는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로 의심되면, 거래내역 등 구체적 판단 근거를 구비하여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통해 보고서를 작성하고 작성된 내용을 확인 및 검토 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 보고책임자는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보고여부를 최종 판단하여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나. 보고시기

- 보고책임자는 당해 금융거래가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3영업일 이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함
- 보고책임자는 의심스러운 거래로 판단되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기로 승인한 일자로부터 실제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된 일자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기간내 보고가 이루어졌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는 보고책임자의 보고 승인 이후 가급적 당일 또는 익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되어야 한다.
- 자금세탁방지 전담부서(준법운영팀)의 모니터링 담당자는 보고책임자 승인 이후 지체 없이 금융정보 분석원의 보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보고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5절 의심거래보고 방법과 양식

가. 보고책임자 보고

- 보고(내부보고 포함) 및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보고를 우선하되, 온라인 보고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벤처캐피탈 등은 보고사항이 비밀 유지될 수 있도록 문서 또는 이동저장매체로 봉인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온라인 보고
 - ① 첨부서류도 가능한 전자화하여 보고
 - ② 전자화가 곤란한 첨부서류는 문서 또는 이동저장매체 등의 형태로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에 의해 제출할 수 있음
 - ③ 금융정보분석원(KoFIU)은 온라인 보고를 접수한 경우 전자우편 등을 통해 접수 사실 통보
- 문서 또는 이동저장매체 보고
 - ① 온라인 보고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은 금융정보분석원(KoFIU) 홈페이지에 있는 보고서 서식을 다운받아 보고하되 작성기관 확인을 위해 공문(서면) 첨부
- 전화 또는 FAX 보고
 - ① 긴급한 보고 시 금융정보분석원(KoFIU) 소속 공무원 여부를 확인하고, 보고 받은 공무원의 성명, 보고일자 및 보고내용 등을 기록 보존하며, 추후 온라인 등으로 재보고
 - ② FAX 보고는 수신 상대방의 직위, 성명을 미리 확인하고 상대방이 대기한 상태에서 발송한 후 수신여부를 확인하고, 발송자 및 수신자에 대한 기록유지
 - ③ 전화 보고의 경우도 발신자 및 수신자에 대한 기록유지
- 보고양식 : (참고5)

(참고5)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본 보고서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에 의하여 보고되는 사항으로 본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I.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

1. 보고기관명		2. 보고책임자명	
3. 보고담당자명 ^{주)}		4. 보고담당자 전화번호	
주) 보고기관 본점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 담당자를 기재 ()번째 거래 ^{주1)}			

II. 의심스러운 거래자에 관한 정보

II-1. 공통사항

5. 거래자(사업자)명			
6. 거래자(사업자)실명 번호구분	¹ ☐ 주민등록번호(개인) ⁴ ☐ 여권번호 ⁷ ☐ 국내거소신고번호 ¹¹ ☐ BIC코드(SWIFT) ⁹⁹ ☐ 기타(기재:_____)	²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⁵ ☐ 법인등록번호 ⁸ ☐ 투자등록번호 ¹² ☐ 해당국가법인번호	³ ☐ 사업자등록번호 ⁶ ☐ 외국인등록번호 ⁹ ☐ 고유번호/납세번호
7. 거래자(사업자)실명번호			
8. 거래자(사업자) 국적	¹ ☐ 한국 ² ☐ 외국(국명:_____)		

II-2. ^{주2)} 개인의 경우

9. 거래자 우편번호/주소 (거소)	¹⁾⁻¹ 자택	(-)			
	¹⁾⁻² 직장	(-)			
10. 거래자 생년월일* ^{주3)}		11. 성별* ^{주3)}	¹ ☐ 남	² ☐ 여	
12. 거래자 자택전화번호*		13. 거래자 휴대전화번호*			
14. 실명조합번호* ^{주4)}					
15. 여권 번호* ^{주5)}					
16. 거래자직업/ 사업내용	¹⁶⁻¹ 직업구분	☐ 직장인	☐ 개인사업자	☐ 무직	☐ 파악할 수 없음
	¹⁶⁻² 직장(회사)명*		⁶⁾⁻²⁻¹ 부서명*		⁶⁾⁻²⁻² 직위*
	¹⁶⁻³ 대표자명*				
	¹⁶⁻⁴ 업종코드* ^{주6)}				
	¹⁶⁻⁵ 사업자등록번호* ^{주7)}				
17. 고액자산가 여부* ^{주8)}	¹ ☐ 여	² ☐ 부			

(II-3). 주9) 법인·단체의 경우

18.대표자명*			
19.대표자실명번호구분*	1 ☐ 주민등록번호(개인)	2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3 ☐ 사업자등록번호
	4 ☐ 여권번호	5 ☐ 법인등록번호	6 ☐ 외국인등록번호
	7 ☐ 국내거소신고번호	8 ☐ 투자등록번호	9 ☐ 고유번호/납세번호
	11 ☐ BIC코드(SWIFT)	12 ☐ 해당국가법인번호	
	99 ☐ 기타(기재_____)		
20.대표자 실명번호*		21.대표자 전화번호*	
22.대표자 자택 우편번호/주소*		(-)	
23.대표자 국적		1 ☐ 한국 2 ☐ 외국(국명:_____)	
24.사업체(단체) 설립일*		25.업종코드* 주6)	
26.법인등록번호*			
27.사업체(단체) 우편번호/주소*	27)-1 본점	(-)	
	27)-2 사업장	(-)	
28.사업체(단체) 전화번호*	28)-1 본점		
	28)-2 사업장		
29.사업체(단체)홈페이지 주소*			
30.법인구분*	30)-1 기업규모 주10)	1 ☐ 대기업 2 ☐ 중소기업	
	30)-2 금융회사등 여부 주11)	1 ☐ 여 2 ☐ 부	
	30)-3 비영리단체 여부 주12)	1 ☐ 여 2 ☐ 부	
	30)-4 국가공공단체 여부 주13)	1 ☐ 여 2 ☐ 부	
	30)-5 상장 여부 주14)	1 ☐ 여 2 ☐ 부	
31.상장정보*	31)-1 거래소	국내	1 ☐ 유가증권시장 2 ☐ 코스닥시장
		국외	1 ☐ 뉴욕증권거래소 2 ☐ NASDAQ
			3 ☐ 런던증권거래소 4 ☐ 홍콩증권거래소
		99 ☐ 기타(기재_____)	

주1) 본 항목에 거래가 일어난 순서를 기재하되 거래내용이 2건 이상이어서 추가 기재할 경우에는 본 페이지를 복사 /추가하여 기재하여야 함. 단, 이 경우 III ~ V에 관련되는 내용을 거래건별로 추가 기재하여 함

주2) II의 II-1.공통사항은 6.거래자(사업자)실명번호구분 항목에 1 ☐ 주민등록번호(개인), 4 ☐ 여권번호, 6 ☐ 외국인등록 번호, 7 ☐ 국내거소신고번호 등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

주3) 10.생년월일, 11.성별 : II의 II-1.공통사항 중 8.거래자(사업자) 국적이 외국이면서 비거주자인 경우는 사항

주4) 14.실명조합번호는 II의 II-1.공통사항 중 8.거래자(사업자) 국적이 외국인 경우로 외국인등록증 및 재외국민(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없는 경우 여권번호에 의한 실명번호 조립방법에 의거 국내금융 기관이 사용하는 번호임, 이경우 여권번호는 필수 기재

주5) 15.여권번호는 II의 II-1.공통사항 중 8.거래자(사업자) 국적이 외국인 경우로 II의 II-1.공통사항 중 6.거래자(사업자) 실명번호구분 항목에 6 ☐ 외국인등록번호, 7 ☐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

주6) II의 II-2.개인의 경우, ¹⁶⁻⁴업종코드와 II의 II-3.법인·단체의 경우, 25.업종코드는 통계청 (www.nso.go.kr)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체계"를 따르며, 대/중/세/세세분류 모두 기재할 수 있다(예: 대분류 '01'농업일 경우, 뒷자리에 'Z'를 포함하여, '01ZZZ'로 보고).

주7) ¹⁶⁻⁵사업자등록번호는 거래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기재

주8) 17.고액자산가여부는 각 금융회사등의 자체기준에 의한 고액자산관리 고객임.

주9) II의 II-1.공동사항, 6.거래자(사업자)실명번호구분 항목에 ²□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³□사업자등록번호, ⁵□법인등록번호, ⁸□투자등록번호, ⁹□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BIC코드(SWIFT), ¹²□ 해당국가법인번호 등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

주10) 대 기업은 금융감독원 발표 "30대 주채무계열" 중 상장기업을 대기업으로, 이외인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기재

주11)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제2조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규정된 금융회사등

주12) 법적 형태와 상관없이 학술, 종교, 자선, 문화, 교육, 사회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금"을 모집 또는 사용하는 단체

주13) 고액현금거래보고 제외되는 국가, 지방단체, 공공단체

주14) 국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경우

* II와 관련하여 고객신원확인사무를 이행한 고객으로부터 취득한 신원확인정보는 필수 기재하여야 한다.

III.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32.거래발생일시													
33.거래채널	¹ □ 창구 ³ □ PB센터 ² □ 자동화기기 ⁴ □ 인터넷뱅킹 ⁵ □ 전화/휴대전화 ⁶ □ 콜센터 ⁷ □ 대출모집인 ⁸ □ 보험설계사 ⁹ □ 보험대리점 ¹⁰ □ 보험중개사 ¹¹ □ 방카슈랑스 ¹² □ 모바일 앱 ¹³ □ 모바일 웹 ¹⁴ □ 인터넷 웹 ¹⁵ □ 온라인고객센터 ⁹⁹ □ 기타(기재____)												
34.거래영업점 우편번호*							35.거래영업점명*						
36.거래수단	¹ □ 현금 ² □ 수표 ³ □ 주식 ⁴ □ 채권 ⁸ □ 기타 유가증권 ⁵ □ 외환 ⁶ □ 대체 ⁷ □ 전자화폐 ⁹ □ 가상자산 ⁹⁹ □ 기타(기재____)												
37.거래종류	¹ □ 입금 ² □ 출금 ³ □ 환전 ⁴ □ 영수 ⁵ □ 송금 ⁶ □ 융자 ⁷ □ 상환 ⁸ □ 이체영수 ⁹ □ 이체송금 ¹⁰ □ 매수 ¹¹ □ 매도 ¹² □ 입고 ¹³ □ 출고 ¹⁴ □ 대체입고 ¹⁵ □ 대체출고 ¹⁶ □ 수표지급 ¹⁷ □ 수표발행 ¹⁸ □ 계약 ¹⁹ □ 해지 ²⁰ □ 보험료납입 ²¹ □ 보험금지급 ²² □ 지급 ²³ □ 발행 ²³ □ 증권청약 ²⁵ □ 가상자산 매수 ²⁶ □ 가상자산 매도 ²⁸ □ 가상자산 입고 ²⁹ □ 가상자산 출고 ⁹⁹ □ 기타(기재____)												
38.거래상품-	¹ □ 수시입출금 예금 ² □ 적립식 예금 ³ □ 거치식 예금 ¹¹ □ 신탁 ¹² □ 투자신탁 ²¹ □ 주식(장내) ²² □ 주식(장외) ³¹ □ 채권(기명) ³² □ 채권(무기명) ⁴¹ □ 대출(담보) ⁴² □ 대출(신용) ⁵¹ □ 파생(선물) ⁵² □ 파생(옵션) ⁵³ □ 파생(스왑) ⁵⁹ □ 파생(기타(기재____)) ⁷¹ □ 가상자산 ⁶¹ □ 보험(보장) ⁶² □ 보험(연금) ⁶³ □ 보험(저축) ⁶⁴ □ 보험(투자) ⁶⁵ □ 보험(일반손해) ⁶⁶ □ 보험(재보험) ²³ □ CMA ²⁴ □ Wrap ²⁵ □ 증권저축 ²⁶ □ 퇴직연금 ⁹⁹ □ 기타(기재____) ⁹¹ □ 해당사항 없음 주1)												

39.통화종류 ^{주2)}	¹ □ 원화(KRW)			
	² □ 외국환 (¹ □미국달러(USD) ⁶ □중국위안(CNY)	² □일본엔(YEN) ⁵ □기타(기재_____))	³ □유로화(EUR)	⁴ □호주달러(AUD)
	³ □ 가상자산			
40.원화거래금액*				
41.외국환거래금액*				
42.달러화 환산금액*				
43.관계계좌 존재 여부 ^{주3)}	¹ □여 (□자행계좌 ¹ □타행계좌 ²)		² □부	
44.송금/수취계좌 존재 여부 ^{주4)}	¹ □여 (□자행계좌 ¹ □타행계좌 ²)		² □부	
45.거래대리인 존재여부	¹ □ 존재	² □ 존재안함	³ □ 파악안됨	

주1) ⁹¹⁾해당사항없음은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한하여 기재할 수 있음

주2) 39.통화종류가 ²□외국환인 경우에는 41.외국환거래금액에 해당통화 외국환 금액을 기재하고 45.달러화 환산금액에 해당 외국환의 미국달러화 환산금액을 기재하며, 39.통화종류가 ³□가상자산인 경우에는 40.원화거래금액에 가상자산의 원화 환산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3) 본 항목 중 ¹□여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IV(의심스러운 거래 관계계좌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일회성거래의 경우 ²□부를 기재

주4) 본 항목 중 ¹□여를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V-1(자행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또는 V-2(타행(국외)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주5) 37.거래종류가 ²⁵□ 가상자산 매수 또는 ²⁶□ 가상자산 매도인 경우에는 43.관계계좌 존재 여부에 ¹□여(□타행계좌²)를 표기하고, IV. 의심스러운 거래 관계계좌에 관한 정보에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제3항제2호 본문에 따른 실명확인 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에 관한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주6) 가상자산의 이전, 교환 등의 경우에는 37.거래종류 중 ²⁷□ 가상자산 입고 또는 ²⁸□ 가상자산 출고로 기재한다.

첨부(III-1) 유가증권 정보 주1)

46. 관련유가증권의 종류	⁵ ☐ 자기앞수표 ⁶ ☐ 당좌수표 ⁷ ☐ 가계당좌수표 ⁸ ☐ 국고수표 ¹ ☐ 환어음 ² ☐ 약속어음 ³ ☐ 국채 ⁴ ☐ 공채 ⁹ ☐ 양도성예금증서 ⁹⁹ ☐ 기타(기재____)			
	47. 관련유가증권번호 연번호() ~ (), 개별수표번호(), (), ()			
	48. 발행/지급은행명	49. 발행/지급영업점명*		
50. 발행일	51. 발행인/최종소지인 구분 ¹ ☐ 발행인 ² ☐ 최종소지인			
52. 발행인/최종소지인명				
53. 발행인/최종소지인 실명 번호 구분	¹ ☐ 주민등록번호(개인) ²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³ ☐ 사업자등록번호 ⁴ ☐ 여권번호 ⁵ ☐ 법인등록번호 ⁶ ☐ 외국인등록번호 ⁷ ☐ 국내거소신고번호 ⁸ ☐ 투자등록번호 ⁹ ☐ 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 BIC코드(SWIFT) ¹² ☐ 해당국가법인번호 ⁹⁹ ☐ 기타(기재____)			
	54. 발행인/최종소지인 실명번호			
	55. 발행인/최종소지인 전화번호* 주2)			

주1) III의 36.거래수단 항목에 ² ☐수표, ⁴ ☐채권, ⁸☐기타 유가증권' 또는 ⁶거래종류 항목에 '¹⁶☐수표지급, ¹⁷☐수표발행, ²²☐지급', ²³☐발행'이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주2) 55.발행인/최종소지인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

※. 48.발행/지급은행명 ~ 55.발행인/최종소지인 전화번호는 자행발행 유가증권의 경우 필수적으로 기재한다.

첨부(III-2) 외환 정보 주1)

56. 외환거래목적	¹ ☐ 증여송금 ² ☐ 여행경비 ³ ☐ 유학경비 ⁴ ☐ 해외체제비 ⁵ ☐ 해외이주비 ⁶ ☐ 외화예금 ⁷ ☐ 해외직접투자 ⁸ ☐ 무역거래 ⁹ ☐ 무역외거래 ⁹¹ ☐ 알수없음 ⁹⁹ ☐ 기타(기재____)				

주1) III의 36.거래수단항목에 '⁶☐외환' 또는 ⁶거래종류항목에 '³☐환전' 이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첨부(III-3) 매수·매도 정보 주1)

57. 매매종목명	58. 매매수량
-----------	----------

주1) III의 37.거래종류 항목에 '¹⁰☐매수/¹¹☐매도'가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첨부(III-4) 입고·출고 정보 주1)

59. 거래종목명	60. 거래수량
-----------	----------

주1) III의 37.거래종류 항목에 '¹²☐입고/¹³☐출고'가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첨부(III-5) 대체입고·대체출고 정보 주1)

61.거래종류명		62.거래수량	
63.대상금융회사등명칭			
64.금융회사등영업점명		65.영업점우편번호	

주1) III의 37.거래종류 항목에 '14□대체입고/15□대체출고'가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첨부(III-6) 보험 정보 주1)

66.보험가입금액		67.고가의 자산여부*	1□여 2□부 3□알수없음
68.계약일		69.만기일	
70.보험료납입방법	1□일시납 2□연납 3□선납/완납 4□환불/취소 5□월납 99□기타(기재_____)		

구분	71.성명/ 법인명	실명		74.계약자와 의관계 ^{주3)}	75.국적
		72.실명번호구분 ^{주2)}	73.실명번호		
1주피보험자					
2종피보험자*					
3수익자*					
4모집인(중개인)*					

주1) III의 38.거래상품 항목에 '61-66□보험'이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주2) II의 II-1.공통사항의 6.거래자(사업자)실명번호구분 체계에 따라 선택 기재

주3) 74.계약자와의 관계는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상사, 동료(친구), 기타(기재_), 알수없음 중에서 선택기재

첨부(III-7) 거래대리인 정보 주1)

76.거래대리인명							
77.거래자와의 관계	1□배우자 2□부모 3□자녀 4□형제자매 5□친척 6□상사 7□동료(친구) 8□기타(기재_____) 9□알수없음						
78.거래대리인 실명번호구분	1 □ 주민등록번호(개인) 2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3 □ 사업자등록번호 4 □ 여권번호 5 □ 법인등록번호 6 □ 외국인등록번호 7 □ 국내거소신고번호 8 □ 투자등록번호 9 □ 고유번호/납세번호 11□ BIC코드(SWIFT) 12□ 해당국가법인번호 99□ 기타(기재_____)						
79.거래대리인 실명번호							
80.거래대리인 전화번호* 주2)							
81.거래대리인 국적	1□한국						
	2□외국(국명:_____)						

주1) III의 45.거래대리인 존재여부 항목에 '1□존재'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

주2) 80.거래대리인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기재

82.거래 목적*	¹ ☐ 물품 등 사업상 대금결제	¹ ☐ 차입/부채상환
	³ ☐ 상속증여성 거래	⁹⁹ ☐ 기타(기재____)

83.계좌번호	
84.계좌개설일자*	
85.계좌개설 금융회사등 명칭* 주1)	
86.계좌개설영업점 우편번호*	
87.계좌개설 영업점명*	
88.계좌 개설 목적*	☐ 급여 및 생활비 ☐ 저축 및 투자 ☐ 결제 (☐ 보험료 납부, ☐ 공과금 납부, ☐ 카드대금, ☐ 대출원리금 상환) ☐ 사업상 거래 ☐ 보장 ☐ 상속 ⁹⁹ ☐ 기타(기재____)
89.계좌개설 대리인 여부	☐ 존재 ☐ 존재안함 ☐ 알수없음

90.계좌주 성명			
91.계좌주 실명번호 구분	1 ☐ 주민등록번호(개인)	2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3 ☐ 사업자등록번호
	4 ☐ 여권번호	5 ☐ 법인등록번호	6 ☐ 외국인등록번호
	7 ☐ 국내거소신고번호	8 ☐ 투자등록번호	9 ☐ 고유번호/납세번호
	11 ☐ BIC코드(SWIFT)	12 ☐ 해당국가법인번호	
	99 ☐ 기타(기재_____)		
92.계좌주 실명번호			
93.계좌주 생년(설립)월일*		94.계좌주 국적*	
95.계좌주 우편번호 및 주소	(-)		
96.계좌주 전화번호*		97.계좌주 휴대전화번호*	

69

첨부(Ⅳ-1) 대표자 정보 주1)

98.대표자명*			
99.대표자 실명번호구분*	¹ ☐ 주민등록번호(개인)	²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³ ☐ 사업자등록번호
	⁴ ☐ 여권번호	⁵ ☐ 법인등록번호	⁶ ☐ 외국인등록번호
	⁷ ☐ 국내거소신고번호	⁸ ☐ 투자등록번호	⁹ ☐ 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 BIC코드(SWIFT)	¹² ☐ 해당국가법인번호	
	⁹⁹ ☐ 기타(기재:_____)		
100.대표자 실명번호*			
101.대표자전화번호* 주2)			
102.대표자 국적	¹ ☐ 한국		
	² ☐ 외국(국명:_____)		

주1) Ⅳ의 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주 정보(Ⅳ-2) 91.계좌주실명번호구분 항목에 ²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³ ☐ 사업자등록번호, ⁵ ☐ 법인등록번호, ⁸ ☐ 투자등록번호, ⁹ ☐ 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 BIC코드(SWIFT), ¹² ☐ 해당국가법인번호 등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

주2) 첨부(Ⅳ-1) 101.대표자 전화번호 및 첨부(Ⅳ-2) 107.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기재

첨부(Ⅳ-2) 계좌개설대리인 정보 주1)

103.계좌개설대리인명							
104.계좌주와의 관계	¹ ☐ 배우자	² ☐ 부모	³ ☐ 자녀	⁴ ☐ 형제자매	⁵ ☐ 친척	⁶ ☐ 상사	⁷ ☐ 동료(친구)
	⁸ ☐ 기타(기재:_____)	⁹ ☐ 알수없음					
105.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¹ ☐ 주민등록번호(개인)	²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³ ☐ 사업자등록번호				
	⁴ ☐ 여권번호	⁵ ☐ 법인등록번호	⁶ ☐ 외국인등록번호				
	⁷ ☐ 국내거소신고번호	⁸ ☐ 투자등록번호	⁹ ☐ 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 BIC코드(SWIFT)	¹² ☐ 해당국가법인번호					
	⁹⁹ ☐ 기타(기재:_____)						
106.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107.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 주2)							
108.계좌개설 대리인 국적	¹ ☐ 한국						
	² ☐ 외국(국명:_____)						

주1) Ⅳ의 89.계좌개설대리인 여부 항목에 ¹ ☐ 존재 라고 표기했을 경우 기입

주2) 첨부(Ⅳ-1) 101.대표자 전화번호 및 첨부(Ⅳ-2) 107.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기재

V. 송금인/수취인 정보

V-1. 자행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주1)

109.송금/수취인 계좌번호	110.계좌주명		
111.계좌주 실명번호구분	¹ ☐ 주민등록번호(개인)	²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³ ☐ 사업자등록번호
	⁴ ☐ 여권번호	⁵ ☐ 법인등록번호	⁶ ☐ 외국인등록번호
	⁷ ☐ 국내거소신고번호	⁸ ☐ 투자등록번호	⁹ ☐ 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 BIC코드(SWIFT)	¹² ☐ 해당국가법인번호	
	⁹⁹ ☐ 기타(기재_____)		
112.계좌주 실명번호			
113.계좌개설점	114.계좌개설일자		
115.계좌주 우편번호및주소	(-)		
116.계좌주 국적	¹ ☐ 한국		
	² ☐ 외국(국명:_____)		
117.계좌개설대리인여부	¹ ☐ 존재 ² ☐ 존재안함 ³ ☐ 알수없음		

주1) III의 44.송금/수취계좌 존재 여부에 ¹여를 선택하고 자행관련 거래인 경우에 기재

첨부(V-1) 송금인/수취인이 법인일 경우 대표자 정보 주1)

118.대표자명*			
119.대표자 실명번호구분*	¹ ☐ 주민등록번호(개인)	²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³ ☐ 사업자등록번호
	⁴ ☐ 여권번호	⁵ ☐ 법인등록번호	⁶ ☐ 외국인등록번호
	⁷ ☐ 국내거소신고번호	⁸ ☐ 투자등록번호	⁹ ☐ 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 BIC코드(SWIFT)	¹² ☐ 해당국가법인번호	
	⁹⁹ ☐ 기타(기재_____)		
120.대표자 실명번호*			
121.대표자 전화번호* 주2)			
122.대표자 국적	¹ ☐ 한국		
	² ☐ 외국(국명:_____)		

주1) V-1의 111.계좌주실명번호구분 항목에 ²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³사업자등록번호, ⁵법인등록번호, ⁸투자등록번호, ⁹고유번호/납세번호, ¹¹BIC코드(SWIFT), ¹²해당국가법인번호'를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

주2) 첨부(V-1) 121.대표자 전화번호 및 첨부(V-2) 127.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기재

첨부(V-2) 송금인/수취인의 계좌개설대리인에 관한 정보 주1)

123.계좌개설대리인명			
124.계좌주와의 관계	¹ ☐ 배우자 ² ☐ 부모 ³ ☐ 자녀 ⁴ ☐ 형제자매 ⁵ ☐ 친척 ⁶ ☐ 상사 ⁷ ☐ 동료(친구) ⁸ ☐ 기타(기재:_____) ⁹ ☐ 알수없음		
125.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¹ ☐ 주민등록번호(개인) ² ☐ 주민등록번호(기타단체) ³ ☐ 사업자등록번호 ⁴ ☐ 여권번호 ⁵ ☐ 법인등록번호 ⁶ ☐ 외국인등록번호 ⁷ ☐ 국내거소신고번호 ⁸ ☐ 투자등록번호 ⁹ ☐ 고유번호/납세번호 ¹¹ ☐ BIC코드(SWIFT) ¹² ☐ 해당국가법인번호 ⁹⁹ ☐ 기타(기재:_____)		
126.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127.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 주2)			
128.계좌개설 대리인 국적	¹ ☐ 한국 ² ☐ 외국(국명:_____)		

주1) V-1의 117.계좌개설대리인 여부 항목에 ‘¹☐존재’라고 표기했을 경우 기입

주2) 첨부(V-1) 121.대표자 전화번호 및 첨부(V-2) 127.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기재

V-2.타행(국외)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주)

129.송금/수취인 계좌번호			
130.계좌주구분	¹ ☐ 개인 ² ☐ 법인 ³ ☐ 알수없음		
131.계좌주명			
132.상대국가명	¹ ☐ 한국 ² ☐ 외국(국명:_____)		
133.상대금융회사등명칭	134.상대영업점명*		

주) III의 44.송금/수취계좌 존재 여부에 ¹☐여를 선택하고 타행관련 거래인 경우에 기재

VI. 의심스러운 거래유형 및 의심스러운 정도에 관한 정보

다음 중 본 보고서에 해당되는 거래라고 생각되는 항목을 모두 선택하십시오(복수선택 가능).

VI-1. 금융사고 또는 긴급조사가 요청되는 사건 관련*

※ 본 항목은 긴급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혐의거래보고(STR)에 대해, 체크하는 항목으로 본 항목 선택시 다른건에 우선하여 긴급 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 ☐ 1) 금융사고 등 거액횡령이 의심되는 거래
- ☐ 2) 뇌물공여 및 뇌물수수 등이 의심되는 거래
- ☐ 3) 거액의 외화도피로 추정되는 거래
- ☐ 4) 조직범죄 및 강.절도 등 강력사건 연루가 의심되는 거래
- ☐ 5)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
- ☐ 6) 기타 사회통념상 긴급조사(우선조사)가 요망되는 거래
- ☐ 7) 수사기관으로부터 자료제공 요청을 받은 거래

VI-2.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태도 및 특징 관련*

- ☐ 1) 실명노출 기피 또는 거래에 대한 비밀요구
- ☐ 2) 거래에 대한 합당한 답변 불제공 또는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거래
- ☐ 3) 업력이나 업체규모, 개인능력에 비해 과다한 거래실적
- ☐ 4) 언행, 행색과 거래금액간의 부조화
- ☐ 5) 중요인물 관련 거래
- ☐ 6) 어색하고 불안한 태도 및 언행
- ☐ 7) 사전거래가 없는 고객의 의심스러운 거래 요청
- ☐ 8) 의심스러운 동행자 참여거래
- ☐ 9) 불특정다수와의 거래
- ☐ 10) 계약자 또는 수익자의 빈번하거나 갑작스런 변경

VI-3. 계좌(가상자산의 경우에는 가상자산 계정, 가상자산주소 등을 포함)정보 관련*

- ☐ 1) 타인의 명의 또는 계좌의 이용 (다수계좌 여부(☐여¹, ☐부²))
- ☐ 2) 특별한 사유없이 복수의 계좌개설 (계좌주 동일 여부(☐여¹, ☐부²))
- ☐ 3) 의심스러운 계약/계좌 해지
- ☐ 14) 단발성 계좌의 이용

VI-4. 거래유형 관련*

- 15) ☐ 갑작스러운 거래패턴의 변화
- 16) ☐ 원격지거래
- 17) ☐ 교환거래
- 18) ☐ 분할거래
- 19) ☐ 현금에 집착하는 거래
- 20) ☐ 거래 입금 후 당일 또는 익일 중 인출
- 21) ☐ 무기명증서(무기명채권, CD, CP 등) 관련거래
- 22) ☐ 계좌개설 없이 거래의 환전요구 또는 외국으로의 송금
- 23) ☐ 의심스러운 담보대출 또는 보험계약 즉시 약관대출
- 24) ☐ 주금 납입거래 또는 예금잔액증명서 발급(요청)
- 25) ☐ 다중거래의 동시요청
- 26) ☐ 빈번한 입출금(입출고)
- 27) ☐ 의심스러운 대여금고 또는 보호예수 거래
- 28) ☐ 법인자산 또는 타인자산 담보 거래
- 29) ☐ 무관업종 또는 의심스런 재산에 대한 보험청약 거래
- 30) ☐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

VI-5. 기타 특징 및 유형*

- 31) ☐ 거래의 내용이 VI-1~VI-5의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그 특징 및 유형을 별도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VII.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서술부분

6하 원칙에 의거 의심스러운 거래의 개요 및 보고 이유를 설명하고, 추가적인 특징을 기술하시오.

또한, 거래내역외 첨부문서 존재시 첨부문서의 종류를 기재하시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교적 자세하게 기재할 것. ⁷⁾종합의견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반드시 기술하여야 함)

〈의심스러운 거래의 개요 및 보고 이유〉

1)의심스러운 거래자 관련

(내용을 기술하시오)

2)거래 발생일자 관련

(내용을 기술하시오)

3)거래 발생 장소(영업점) 관련

(내용을 기술하시오)

4)금융거래등 수단(상품) 관련

(내용을 기술하시오)

5)금융거래등 방법(특이거래) 관련

(내용을 기술하시오)

6)혐의거래로 판단한 사유 관련

(내용을 기술하시오)

7)종합의견

(내용을 기술하시오)

[관련문서번호] () *

[지점용] 작성자의 입장에서 본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의심스러운 정도(1은 의심스러우나 불확실함, 5는 매우 의심스러움을 의미함)를 체크하시오.



[본점용] 작성자의 입장에서 본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의심스러운 정도(1은 의심스러우나 불확실함, 5는 매우 의심스러움을 의미함)를 체크하시오.



[첨부파일(Soft Copy)] *

첨부파일명

◇ 공통사항 : 서식의 입력항목 중 ‘*’로 표시된 항목은 모두 선택사항임

Q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 작성 방법

1. 목 적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금융회사등이 혐의거래보고서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함에 있어 각 항목별로 구체적인 작성방법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2.1 이 작성안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1.1 **"보고기관"**이라 함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의무의 주체로서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1호각목에서 정하는 "금융회사등"을 말한다.

2.1.2 **"거래자"**라 함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의 대상으로서 보고기관과의 금융거래등에 있어 일방 당사자가 되는 자, 즉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제3호의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을 말한다.

2.1.3 **"거래채널"**이라 함은 입금, 수납, 출금, 지출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융거래등에 수반하여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그 행위를 행한 경로를 의미한다.

2.1.4 **"거래수단"**라 함은 입금, 수납, 출금, 지출 등 그 명목을 불문하고, 금융거래등에 수반하여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가치이전의 수단을 말한다.

2.1.5 **"거래종류"**라 함은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보고기관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행한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등의 종류를 말한다.

2.1.6 **"거래상품"**라 함은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보고기관인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거래한 의심스러운 금융상품 등의 종류를 말한다.

2.1.7 **"의심스러운거래 보고 프로그램"**이라 함은 보고기관이 자금세탁과 관련된 의심스러운 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기 위해 사용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2.2 기타 이 작성안내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본 작성안내에서 이와 달리 해설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금융정보법, 동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및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일반사항

3.1 보고기관 및 거래자의 확정

의심스러운 금융거래등의 당사자인 당해 금융회사등과 그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인 고객이 보고기관 및 거래자에 해당된다.

3.2 보고기준금액

당해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거나 금융거래등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 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 기준금액과 상관없이 보고한다.

3.4 보고의 시기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제3조에 따라 보고기관인 금융회사등이 보고대상 금융거래등으로 결정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3.5 보고의 방법

보고를 하는 금융회사등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의 내용에 따라 온라인·문서·전자기록매체(플로피 디스크 등)를 이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전자적 방식(온라인 보고방식)에 의한 보고서 작성방법에 관한 사항은 “위험기반 혐의거래보고(STR) 지침”에 따른다.

3.6 기타

“4.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의 항목별 작성요령”에서 해설되지 않은 부분은 본 작성안내에서 이와 달리 해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금융정보법, 동법 시행령 및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의 항목별 작성요령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의 구성은 표제부,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 의심스러운 거래자에 관한 정보,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의심스러운 거래 관련계좌에 관한 정보, 송금인/수취인 정보, 의심스러운 거래유형 및 의심스러운 정도에 관한 정보,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서술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각 항목별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표제부에는 일반사항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 1) 문서번호 : 보고기관별로 연도에 따른 일련번호를 기재한다(예:2008-일련 번호).
- 2) 보고일자 : 보고책임자가 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고, 문서번호를 부여한 후 금융정보분석원에 실제 보고한 일자를 기재한다.
- 3) 정정보고시 종전 문서번호 : 보고서가 종전 보고서를 정정하는 경우 종전 보고 문서번호를 기재한다.

I.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

1)~4)는 보고기관에 관한 정보를 기재한다.

1. **보고기관명** :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상호와 다른 법률상의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후자를 기재한다(예 : 기업은행의 경우 → ‘중소기업은행’으로 기재). 전산서식에는 보고기관의 기관고유 코드(Code)를 기재한다.
2. **보고책임자명** : 보고책임자(예 : 은행의 경우 준법감시인명)의 성명을 기재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3. **보고담당자명** : 본점 보고담당자(예 : 은행의 경우 준법감시실 혐의거래보고 담당자)의 성명을 기재한다. 외국인의 경우에는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4. **보고담당자전화번호** : 본점 보고담당자(예 : 은행의 경우, 준법감시실 혐의거래 보고담당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II. 의심스러운 거래자에 관한 정보

‘Ⅲ.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에서 제공되는 혐의거래의 당사자 일방이 되는 거래자에 관한 정보로서, 특정금융정보법상의 고객확인 의무 또는 고객관계관리 차원에서 확보하고 있는 고객정보 등을 이용하여 자세하게 기재한다.

II-1은 공통사항을 기재한다

5. 거래자(사업자)명 :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된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이름 또는 명칭을 말하며, 개인은 성명, 개인사업자는 개인성명(사업자명), 법인은 법인명, 임의단체인 경우 단체명을 각각 기재한다. 외국인(개인)의 경우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하며 외국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 기재된 한글명칭을 기재한다.

6. 거래자(사업자) 실명번호 구분 : ‘7.거래자(사업자)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6-8. ⁸□투자등록번호의 의미 : 거래자(사업자)가 외국단체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 실명확인에 필요한 서류의 종류는 ①외국단체등록증 ②당해 국가의 정부발행 단체설립/설정 증명서류 ③투자등록증 ④외국인투자 신고수리서(인가서)이며 이러한 실명확인증표에 의해 확인된 번호를 통칭하여 ⁸ □투자등록증번호라 한다.

6-9. ⁹⁹□기타의 의미 : 거래자(사업자)의 실명확인에 필요한 실명확인 증표가 ‘¹□주민등록번호(개인) ~ ¹²□ 해당국가법인번호’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예 : 의료보험증 번호)를 말한다. 이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서상 모든 실명번호 및 실명번호구분은 상기의 예를 준용하여 작성한다.

7. 거래자(사업자) 실명번호 :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확인된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실명확인번호를 말하며,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 번호,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8. 거래자(사업자) 국적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국적을 ‘¹□한국 ²□외국’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²□외국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에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이 경우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 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II-2는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개인인 경우에 기재한다

9. **거래자 우편번호/주소(거소)**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자택 또는 직장의 우편번호/주소를 기재한다. 내외국인 공통으로 국내주소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하며 주소의 최소단위(번지수, 공동주택의 동호수)까지 기재한다.
10. **거래자 생년월일**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국적이 외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거래자의 생년월일을 기재한다.
11. **성별**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국적이 외국이며 비거주자인 경우, 거래자의 성별을 기재한다.
12. **거래자 자택전화번호**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자택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13. **거래자 휴대전화번호**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다.
14. **실명조합번호**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으로 외국인 등록증 또는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이 없는 경우, 여권 번호에 의한 실명번호 조합방법에 의하여 국내금융 회사등이 사용하는 실명 조합번호를 기재한다.
15. **여권번호** :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로 'II-1.공통사항 6.거래자 (사업자)실명번호구분' 항목에 외국인등록번호,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선택하였을 경우에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여권번호를 기재한다.
16. **거래자 직업/사업내용** : ¹⁶⁾⁻²직장(회사)명에는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현재 직장명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명)을 기재하고 직장인의 경우 ¹⁶⁾⁻²⁻¹부서명, ¹⁶⁾⁻²⁻²직위, ¹⁶⁾⁻³대표자명을 추가로 기재한다. ¹⁶⁾⁻⁴업종코드에는 직장 및 회사가 속하는 업종코드를 기재한다. 또한 ¹⁶⁾⁻¹ 직업구분에 개인사업자를 선택한 경우에는 ¹⁶⁾⁻⁵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한다. 이 경우 거래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회사)의 업종코드를 한국표준산업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체계에 따라 분류된 업종명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www.nso.go.kr))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 분류코드 체계"에 의해, 대/중/세/세세분류를 모두 기재할 수 있다.

(예: 대분류 코드 '01' 농업일 경우, 코드 뒷자리에 'Z'를 포함하여 '01ZZZ'을 기재)

17. 고액자산가 여부 : 금융회사등이 자체 기준에 의해 선정한 고액자산관리 고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II-3은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 기재한다.

18. 대표자명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대표자명을 기재한다. 외국인(개인)의 경우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19. 대표자 실명번호 구분 : '20.대표자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20. 대표자 실명번호 : '19.대표자 실명번호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21. 대표자 전화번호 : 대표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휴대전화 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대표자 자택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22. 대표자 자택 우편번호/주소 : 법인·단체 대표자의 자택의 우편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내외국인 공통으로 국내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하며 주소의 최소단위(번지수, 공동주택의 동호수)까지 기재한다. 단,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의 거소를 주소로 본다.

23. 대표자 국적 : 대표자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1□한국 2□외국'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하고 2□외국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에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24. 사업체(단체) 설립일 : 의심스러운 거래자(법인, 단체)의 설립일을 기재한다 (예 : 2008년 7월 10일 설립된 경우 '20080710'으로 기재).

25. 업종코드 : 거래자가 다니고 있는 직장(회사)의 업종코드를 한국 표준산업 분류(Korean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체계에 따라 분류된 업종명에 따라 기재해야 한다.

업종코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통계청(www.nso.go.kr))에서 제공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체계"에 의해, 대/중/세/세세분류를 모두 기재할 수 있다.

(예: 대분류 코드 '01' 농업일 경우, 코드 뒷자리에 'Z'을 포함하여 '01ZZZ'을 기재)

26. **법인등록번호** : 법인·단체의 ‘20.대표자 실명번호’를 사업자등록번호로 기재한 경우 법인등록번호를 추가로 기재한다.
27. **사업체(단체)우편번호/주소** : 의심스러운 거래자(법인, 개인사업자, 단체)의 본점(또는 주된 사무소)과 주된 사업장의 우편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
28. **사업체(단체) 전화번호** : 의심스러운 거래자(법인, 개인사업자, 단체)의 본점(또는 주된 사무소)과 주된 사업장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본점(또는 주된 사무소)과 주된 사업장의 전화번호가 대표전화 번호이고 담당자의 전화번호가 내선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에 내선전화번호를 부기하여 기재한다 (예 : 전화번호가 서울 ‘503-6792’이고 내선번호가 ‘123’인 경우 ‘02-503-6792-123’로 기재).
29. **사업체(단체) 홈페이지 주소** : 의심스러운 거래자(법인, 단체)의 홈페이지 주소를 기재한다.
30. **법인가분** : 법인·단체의 성격을 다음과 같은 항목별로 해당여부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 ‘³⁰⁾⁻¹기업규모’는 대기업은 금융감독원 발표 “30대 주채무계열” 중 상장기업을 대기업으로, 이외인 경우는 중소기업으로 기재한다.
- ‘³⁰⁾⁻²금융회사등 여부’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금융회사등인 경우 ‘여’로 기재한다.
- ‘³⁰⁾⁻³비영리단체 여부’는 법적 형태와 상관없이 학술, 종교, 자선, 문화, 교육, 사회사업 등의 목적으로 “기금”을 모집 또는 사용하는 단체의 경우 ‘여’로 기재한다.
- ‘³⁰⁾⁻⁴국가공공단체 여부’는 고액현금거래보고 제외되는 국가, 지방단체, 공공단체의 경우 ‘여’로 기재한다.
- ‘³⁰⁾⁻⁵상장여부’는 증권거래법 등 관련규정의 공개기업의 경우 ‘여’로 기재한다.
31. **상장정보** : ³⁰⁾⁻⁵상장여부항목에 “여”라고 표시된 경우 상장되어있는 거래소를 기재한다.

III. 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

32. **거래발생일시** :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한 연월일, 시 분까지 기재한다.

(예 : 2024년 7월 1일 11시 50분이 경우 '202407011150'로 기재)

33. **거래채널** : 의심스러운거래가 발생한 거래채널을 제시된 항목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

34. **거래영업점 우편번호** :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한 영업점의 우편번호를 기재한다.

35. **거래영업점명** :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한 영업점의 명칭을 기재한다.(예 : 명동지점)

36. **거래수단** : 의심스러운거래가 발생한 거래수단을 제시된 항목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

¹☐ **현금** : 정부지폐(원화), 주화(원화)를 말하는 것으로 유가증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²☐ **수표** : 자기앞수표, 당좌수표, 가계수표, 국고수표 등을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³☐ **주식** : 주식회사의 자본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⁴☐ **채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은행, 회사 등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유가증권. 공채, 국채, 사채, 지방채 등이 포함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⁵☐ **외환** : 외국환 또는 외국통화를 말하며 원화를 제외한 모든 종류의 통화를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2)'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⁶☐ **대체** : 실질적인 자금의 흐름 없이 장부상으로 한 계정의 자금을 다른 계정의 자금으로 옮겨 적는 거래가 발생하는 거래수단을 말한다.

⁷☐ **전자화폐** : IC카드 또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컴퓨터에 은행예금이나 돈 등이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된 화폐적 가치를 말한다.

⁸☐ **기타 유가증권** : 사법상의 재산권을 표시한 증권으로 어음, 양도성 예금증서 등이 포함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⁹☐ **가상자산** : 특정금융정보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말한다.

⁹⁹☐ **기타** : 상기에 표기된 거래수단에 포함되지 않는 것들을 말한다.

37. 거래종류 :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한 거래종류를 제시된 항목 중 선택하여 기재한다.

- ¹☐ **입금**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본인의 계좌에 자금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 ²☐ **출금**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본인의 계좌로부터 자금을 인출하는 것을 말한다.
- ³☐ **환전** : 서로 다른 화폐와 화폐를 교환하는 것으로 이종통화간의 교환거래를 말한다.
- ⁴☐ **영수**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상대방으로부터 자금을 수취하는 것을 말한다.
- ⁵☐ **송금**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상대방 계좌로 자금을 맡기는 것을 말한다.
- ⁶☐ **융자** :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자금을 융통하는 모든 거래(예 : 대출)를 통칭한다.
- ⁷☐ **상환**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융통하였던 자금을 갚는 거래를 말한다.
- ⁸☐ **이체영수** :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타인의 계좌로부터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계좌로 자금이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 ⁹☐ **이체송금** : 계좌이체 등의 방식을 통해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계좌로부터 타인의 계좌로 자금이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 ¹⁰☐ **매수** : 주식이나 채권을 사는 행위를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3)’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¹¹☐ **매도** : 주식이나 채권을 파는 행위를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3)’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¹²☐ **입고**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금융회사등에 예탁 또는 판매하여 금융회사등에 주권 현물을 물리적으로 인도하는 것을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4)’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¹³☐ **출고**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예탁 철회 또는 구매하여 금융회사등으로부터 주권 현물을 물리적으로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4)’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¹⁴☐ **대체입고** : 구좌대체 중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계좌로 유입되는 것을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5)’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¹⁵□ **대체출고** : 구좌대체 중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계좌로부터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5)’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¹⁶□ **수표지급**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수표를 교환해간 거래를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¹⁷□ **수표발행**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수표로 교환해간 거래를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¹⁸□ **계약** : 사법상(私法上)의 일정한 법률적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의사의 합의를 따라 성립하는 법률행위로 의심스러운 거래자와 금융회사등간의 모든 계약행위를 포함한다.
- ¹⁹□ **해지** : 당사자 중 한쪽의 의사 표시로 계약상의 법률관계를 장래에 대하여 소멸시키는 일로 의심스러운 거래자와 금융회사등간의 모든 계약행위가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 ²⁰□ **보험료 납입**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보험료를 납부한 행위를 말한다.
- ²¹□ **보험료 지급** : 금융회사등이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의심스러운 거래자앞 보험금을 지급한 행위를 말한다.
- ²²□ **지급**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유가증권을 교환 해간 거래를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²³□ **발행**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유가증권으로 교환 해간 거래를 말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1)’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 ⁹⁹□ **기타** : 상기의 거래방식 이외의 거래방식일 경우 기타를 선택하고, 세부내역을 기재한다.
- 38. 거래상품** : 의심스러운 거래가 발생한 거래상품을 제시된 항목 중에 선택하여 기재한다. 본 항목 중 ⁶¹⁻⁶⁶□보험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6)’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⁹¹□ 해당사항 없음은 금융거래등이 발생하지 않은 거래의 경우에만 기재할 수 있다.
- 39. 통화종류** :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거래한 통화의 종류를 ¹□원화, ²□외국환 또는 ³□가상자산으로 나누어서 선택하고 ²□외국환을 선택한 경우에는 해당되는 외국통화를 선택하거나 또는 기재하도록 한다.

40. **원화거래금액** : 거래자가 거래한 금액의 최소단위 (원단위)까지 기재한다.
41. **외국환 거래금액** : '39.통화종류'에 ²☐외국환'을 선택한 경우 해당되는 외국통화 금액을 기재한다(소수점 미만은 기재하지 않아도 됨).
42. **달러화 환산금액** : '39.통화종류'에 ²☐외국환 중 ☐미국달러(USD)¹ 이외의 외국통화를 선택한 경우 해당 외국통화의 미국달러화 환산금액(US Con. Rate)을 기재한다.
43. **관련계좌 존재여부** : 'II(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와 관련된 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¹☐여'를 선택하고, 일회성 거래인 경우에는 '²☐부'를 선택한다. 본 항목을 '¹☐여'로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IV(의심스러운 거래 관련계좌에 관한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고 ²☐부'로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8)'을 추가로 기재한다.
- 관련 계좌 존재 여부에 ¹☐여를 선택할 경우, ¹☐자행계좌 ²☐타행계좌를 선택해야한다. ¹☐자행계좌를 선택할 경우, 'IV의 의심스러운 거래 관련계좌' 정보의 모든 항목은 필수 입력사항이다.
- ²☐타행계좌를 선택할 경우, 'IV의 의심스러운 거래 관련계좌' 정보 중 '84.계좌개설일자, 85.계좌개설금융회사등명칭, 86.계좌개설영업점우편번호, 87.계좌개설영업점명, 88.계좌개설목적, 89.계좌개설대리인여부' 등이 선택 항목으로 확인이 가능할 경우 기재한다.
44. **송금/수취계좌 존재여부** : 'II(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송금 또는 수취 계좌가 존재하는 경우 ¹☐여를 선택하고, 송금 또는 수취 계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²☐부를 선택한다. 본 항목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V-1(당행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또는 'V-2(타행(국외)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를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45. **거래대리인 존재여부** : 'II(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와 관련하여 거래대리인의 존재여부를 ¹☐존재, ²☐존재안함, ³☐파악안됨 중 하나를 선택한다. 본 항목에 ¹☐존재 라고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첨부(III-7)'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첨부(III-1 ~ III-7)의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첨부(III-1) : 'III의 36.거래수단 항목'에 ²☐수표, ⁴☐채권, ⁸☐기타 유가증권' 또는 37.거래종류 항목에 ¹⁶☐수표지급, ¹⁷☐수표발행, ²²☐지급, ²³☐발행'이 표기 되었을 경우 작성한다.

46. **관련 유가증권의 종류** : 관련된 유가증권의 종류를 선택한다.
47. **관련 유가증권번호** : 관련된 유가증권의 번호를 기재한다. 관련된 유가 증권이 1매일 경우 또는 관련된 유가증권이 2매 이상이나 연번호 발행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된 유가증권별로 각각 기재하고, 관련된 유가증권이 2매 이상 이면서 연번호로 발행된 유가증권일 경우에는 제일 빠른 유가증권 번호와 마지막 유가증권번호를 각각 기재한다.
48. **발행/지급은행명** : 유가증권이 지급제시(교환제시 및 청구제시)된 은행을 기재한다.
49. **발행/지급영업점명** : 유가증권이 지급제시(교환제시 및 청구제시)된 은행의 영업점명을 기재한다.
50. **발행일** : 교환제시 및 청구제시된 유가증권의 발행일을 기재한다.
51. **발행인/최종소지인 구분** : 교환제시 및 청구 제시된 유가증권의 제시인이 발행인인지 최종소지인인지 여부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52. **발행인/최종소지인명** : 교환제시 및 청구 제시된 유가증권의 발행인/ 최종소지인인 개인 및 법인명을 기재한다.
53. **발행인/최종소지인 실명번호 구분** : 교환제시 및 청구제시된 유가증권의 ‘54.발행인/최종소지인 실명번호’에 기재될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54. **발행인/최종소지인 실명번호** : ‘53.발행인/최종소지인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된 실명확인증표상 실명확인번호를 기재한다.
55. **발행인/최종소지인 전화번호** : 발행인/최종소지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휴대 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발행인/최종소지인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 첨부(III-2)** : ‘III의 36.거래수단 항목’에 ‘⁶□외환’ 또는 37.거래종류 항목에 ‘³□환전’이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한다.
56. **거래목적** : 당해 외국환거래의 목적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첨부(III-3) : 'III의 37.거래종류 항목'에 '¹⁰□매수/¹¹□매도'가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한다.

57. 매매종목명 : 주식이나 채권을 사거나 팔 경우 해당되는 주식이나 채권의 종목명을 기재한다.

58. 매매수량 : 주식이나 채권을 매수하거나 매도한 수량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첨부(III-4) : 'III의 37.거래종류 항목'에 '¹²□입고/¹³□출고'가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한다.

59. 거래종목명 : 입고 또는 출고한 거래종목명을 기재한다.

60. 거래수량 : 입고 또는 출고한 수량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첨부(III-5) : 'III의 37.거래종류 항목'에 '¹⁴□대체입고/¹⁵□대체출고'가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한다.

61. 거래종목명 : 대체입고 또는 대체출고한 거래종목명을 기재한다.

62. 거래수량 : 대체입고 또는 대체출고한 수량을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한다.

63. 대상금융회사등명칭 : 대체입고 또는 대체출고 할 상대금융회사등의 명칭을 기재한다.

64. 금융회사등영업점명 : 대체입고 또는 대체출고할 상대금융회사등의 영업점명을 기재한다.

65. 영업점 우편번호 : '64.금융회사등영업점명'에 기재된 영업점의 우편번호를 기재한다.

첨부(III-6) : 'III의 38.거래상품 항목'에 '⁶¹⁻⁶⁶□보험'이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한다.

66. 보험가입금액 : 보험계약금액을 말하며, 청약서 및 보험증권 상 기재되는 주 계약금액과 동일한 의미이다.

67. 고가의 자산여부 : 일반손해보험의 경우, 담보 또는 보험목적물 등으로 제공되는 대상목적물이 거래자의 재산 보유 정도에 비추어 과도하다거나 (¹□여) 그렇지는 않다(²□부) 라고 판단하여 그 해당여부를 선택한다.

68. 계약일 : 보험의 계약일자를 기재한다.

69. **만기일** : 마감일자를 의미하며 정해진 보험기간이 다 경과하여 끝나는 일자를 기재한다. 종신 보험의 경우는 만기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99991231'로 기재한다.
70. **보험료 납입방법** : 보험료 납입방법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보험에 대한 계약내용을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수익자, 모집인(중개인)으로 나누고 각 이해 관계별로 다음의 해당내용을 기재한다.
71. **성명/법인명** :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수익자, 모집인(중개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72. **실명번호 구분** : '73.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73. **실명번호** : '72.실명번호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74. **계약자와의 관계** : 계약자와의 관계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상사, 동료(친구) 중에서 선택하고 그 이외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기타' 란에 기재한다.
75. **국적** : 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수익자, 모집인(중개인)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 첨부(III-7)** : 'III의 45.거래대리인 존재여부 항목'에 '1□존재'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작성한다.
76. **거래대리인명** : 거래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77. **거래자와의 관계** : 거래대리인과 거래자와의 관계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상사, 동료(친구) 중에서 선택하고 그 이외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8□기타' 란에 기재한다.
78. **거래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 '79.거래대리인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 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79. **거래대리인 실명번호** : '78.거래대리인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 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80. 거래대리인 전화번호 : 거래대리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휴대 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거래대리인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81. 거래대리인 국적 : 거래대리인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첨부(III-8) : 'III의 43.관련계좌 존재 여부 항목'에 '□부'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기재한다.

82. 거래 목적 : 일회성 거래의 목적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IV. 의심스러운 거래 관련계좌에 관한 정보 :

'III의 43.관련계좌 존재 여부 항목'에 '□여'라고 표기되었을 경우 기재한다.

IV-1 : 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 정보를 기재한다.

83. 계좌번호 : 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의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84. 계좌개설일자 : '83.계좌번호'에 기재한 해당 계좌의 개설일자(계좌의 이월 발행일이 아닌 최초 개설일)을 말하나, 영업점간 계좌 이수관이 발생한 경우로 계좌의 최초 개설일이 전산관리 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점앞 이·수관일자를 기재할 수 있다.

85. 계좌개설 금융회사등명칭 : 타행계좌 예금을 대지급한 경우에 한하여 83.계좌 번호'에 기재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등의 명칭을 기재한다.

86. 계좌개설 영업점 우편번호 : '87.계좌개설 영업점명'에 기재한 영업점의 우편번호를 기재한다.

87. 계좌개설 영업점명 : '83.계좌번호'에 기재한 해당 계좌의 개설점(계좌의 이월 발행점이 아닌 최초 개설점)을 말하나, 영업점간 계좌 이·수관이 발생한 경우로 계좌의 최초 개설점이 전산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점을 기재할 수도 있다.

88. **계좌 개설 목적** : 계좌 개설 목적에 가장 부합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한다.

89. **계좌개설대리인 여부** : '83.계좌번호'에 기재한 계좌가 대리인에 의해 개설 되었는지 여부를 선택한다.

IV-2. **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주 정보** : 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주 정보를 기재한다.

90. **계좌주 성명** : 관련 계좌주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91. **계좌주 실명번호 구분** : '92.계좌주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92. **계좌주 실명번호** : '91.계좌주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93. **계좌주 생년(설립)월일** : 계좌주가 개인일 경우 계좌주의 생년월일을 기재 하고,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에는 설립 년월일을 기재한다.

94. **계좌주 국적** : 관련 계좌주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 (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95. **계좌주 우편번호 및 주소** : 계좌주의 최근 자택, 직장 또는 사업체 주소 및 우편번호를 기재한다.

96. **계좌주 전화번호** : 계좌주의 최근 자택, 직장 또는 사업체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97. **계좌주 휴대전화 번호** : 계좌주가 개인인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첨부(IV-1) : 'IV-2. 의심스러운 거래에 사용된 계좌주 정보'중 '91.계좌주 실명번호구분' 항목에 ²
☐주민등록번호(기타 단체), ³☐사업자등록번호, ⁵☐법인등록번호, ⁸☐투자등록번호, ⁹
☐고유번호/납세번호, ¹¹☐BIC코드(SWIFT), ¹²☐해당국가법인번호 등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한다.

98. **대표자명** : 관련계좌주가 법인·단체인 경우 법인·단체의 대표자명을 기재한다. 외국인(개인)의 경우
 성, 이름(Last Name, First Name)순으로 기재한다.

99. 대표자 실명번호 구분 : ‘100.대표자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100. 대표자 실명번호 : ‘99.대표자 실명번호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101. 대표자 전화번호 : 대표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102. 대표자 국적 : 대표자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첨부(IV-2) : ‘IV의 89.계좌개설대리인 여부’ 항목에 ‘☐존재’라고 표기했을 경우 기재한다.

103. 계좌개설 대리인명 : 계좌개설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104. 계좌주와의 관계 : 거래대리인과 계좌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 친척, 상사, 동료(친구) 중에서 선택하고 그 이외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⁸☐기타’란에 기재한다.

105. 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 ‘106.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106. 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 ‘105.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 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107. 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 : 계좌개설대리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108. 계좌개설대리인 국적 : 계좌개설대리인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V-1. 자행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 'III의 44.송금/수취계좌 존재 여부'에 '□'여를 선택하고 자행관련 거래인 경우에 기재한다.

109. 송금/수취인 계좌번호 : 거래자가 당행(자행) 타 영업점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는 송금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또한 거래자가 당행(자행)내 타 영업점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는 수취인의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110. 계좌주명 : '109.송금/수취인 계좌번호'에 기재한 계좌번호의 계좌주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111. 계좌주 실명번호 구분 : '112.계좌주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112. 계좌주 실명번호 : '111.계좌주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113. 계좌개설점 : '109.송금/수취인 계좌번호'에 기재한 해당 계좌의 개설점 (계좌의 이월 발행점이 아닌 최초 개설점)을 말하나, 영업점간 계좌 이·수관이 발생한 경우로 계좌의 최초 개설점이 전산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점을 기재할 수도 있다.

114. 계좌개설일자 : '109.송금/수취인 계좌번호'에 기재한 해당 계좌의 개설일자 (계좌의 이월 발행일이 아닌 최초 개설일)을 말한다. 영업점간 계좌 이·수관이 발생한 경우로 계좌의 최초 개설일이 전산관리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는 관리점 앞 이·수관일자를 기재한다.

115. 계좌주 우편번호 및 주소 : 계좌주의 자택 우편번호 및 주소를 기재한다. 내외국인 공통으로 국내주소지를 기준으로 하여 기재하며 주소의 최소단위(번지수, 공동주택의 동호수)까지 기재한다. 단, 국내에 주소가 없을 경우에는 현재의 거소를 주소로 본다.

116. 계좌주 국적 : 관련 계좌주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 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117. 계좌개설대리인 여부 : '109.송금/수취인 계좌번호'에 기재한 계좌가 대리인에 의해 개설되었는지 여부를 선택한다.

첨부(V-1) : 'V-1의 111.계좌주실명번호구분' 항목에 ²□주민등록번호(기타 단체), ³□사업자 등록번호, ⁵□법인등록번호, ⁸□투자등록번호, ⁹□고유번호/납세번호, ¹¹□BIC코드 (SWIFT), ¹² □해당국가법인번호 등을 선택하였을 경우에 기재한다.

118. 대표자명 : 대표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119. 대표자 실명번호 구분 : '120.대표자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120. 대표자 실명번호 : '119.대표자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증표상의 실명 번호를 기재한다.

121. 대표자 전화번호 : 대표자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 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122. 대표자 국적 : 대표자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 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 (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첨부(V-2) : 'V-1자행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의 '117.계좌개설대리인 여부' 항목에 '□존재'라고 표기했을 경우 기재한다.

123.계좌개설 대리인명 : 계좌개설대리인의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124. 계좌주와의 관계 : 거래개설대리인과 계좌주와의 관계를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 자매, 친척, 상사, 동료(친구) 중에서 선택하고 그 이외의 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타'란에 기재한다.

125. 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구분 : '126.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에 기재된 실명확인 증표의 종류를 선택하여 기재한다.

126. 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 '125.계좌개설대리인 실명번호 구분'에서 선택한 실명확인 증표상의 실명번호를 기재한다.

127. 계좌개설대리인 전화번호 : 계좌개설대리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한다. 전화번호는 휴대전화번호가 존재할 경우 휴대전화번호를 우선 기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법인단체의 전화번호를 지역번호를 포함하여 기재한다. (예 : 서울 503-6792의 경우 '02-503-6792'의 방식으로 기재)

128. 계좌개설대리인 국적 : 계좌개설대리인의 국적이 외국인 경우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해당국적코드는 국가표준화기구(ISO)가 정한 국가별 ISO코드 (두자리의 국가코드 약어)를 기재한다. (예 : 일본의 경우 'JP'로 기재)

V-2. 타행(국외)관련 영수/송금(이체)시 송금인/수취인 정보 : 'III.의심스러운 거래내역에 관한 정보'의 '44.송금/수취계좌 존재 여부'에 '□여'를 선택하고 타행관련 거래인 경우에 기재한다.

129. 송금/수취인 계좌번호 : 거래자가 타행(국외 포함)으로부터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는 상대 송금인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또한 거래자가 타행(국외 포함)으로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는 수취인 계좌번호를 기재한다.

130. 계좌주 구분 : '129.송금/수취인 계좌번호'에 기재한 계좌번호의 계좌주를 개인과 법인중 하나를 선택한다.

131. 계좌주명 : '129.송금/수취인 계좌번호'에 기재한 계좌번호의 계좌주 성명 또는 법인명을 기재한다.

132. 상대국가명 :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 자금을 송금한 상대국가,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수취하게 되는 상대국가를 ¹□한국 또는 ²□외국 중 하나를 선택하고 ²□외국을 선택하였을 경우에는 ()에 해당국 코드를 기재한다.

133. 상대금융회사등명칭 :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 자금을 송금한 상대금융회사등,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수취하게 되는 상대금융회사등의 명칭을 기재한다.

134. 상대영업점명 : 자금을 영수하는 경우 자금을 송금한 상대금융회사등의 영업점명, 자금을 송금하는 경우 수취하게 되는 상대금융회사등의 영업점명을 기재한다.

VI. 의심스러운 거래유형 및 의심스러운 정도에 관한 정보

본 항목은 등록된 혐의거래의 유형이라고 생각되는 내용을 선택하는 것으로 금융사고 또는 긴급조사가 요청되는 사건 관련(VI-1) ~ 기타 특징 및 유형(VI-6)에 이르는 6개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구성항목별 작성요령은 다음과 같다. 본 항목은 복수 선택이 가능하다.

VI-1. 금융사고 또는 긴급조사가 요청되는 사건 관련(VI-1) : 본 항목은 의심의 정도가 크고 전제범죄로 의심되어 시급히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자가 판단하는 사건인 경우에 기재하며, 다른 보고건에 우선하여 긴급조사 하기 위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신중히 판단하여야 한다.

VI-2. 의심스러운 거래자의 태도 및 특징 관련(VI-2) : 혐의거래자의 태도 및 특징과 관련하여 ¹⁾□~¹⁰⁾□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한다.

VI-3. 계좌정보 관련(VI-3) : 혐의거래자의 계좌정보와 관련하여 ¹¹⁾□~¹⁴⁾□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한다.

VI-4. 거래유형관련(VI-4) : 혐의거래자의 거래유형과 관련하여 ¹⁵⁾□~²⁹⁾□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재한다.

VII. 의심스러운 거래에 대한 서술부분

1. 해당 혐의거래의 혐의근거(의심스러운 거래의 개요 및 보고이유)를 6하 원칙에 의거 기술한다. 종합의견은 6하 원칙에 의거하여 반드시 작성하며, 아래 목차별로 구분하여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 의심스러운 거래의 개요 및 보고 이유 (예시) 】

1. 의심스러운 거래자 관련	(주)ABC상사는 2003년 1월 24일 설립된 무역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02년말부터 당 은행을 거래하는 중소기업임
2. 거래 발생일자 관련	지난 2005년 2월 10일부터 동년 3월 13일까지 거래가 발생하였다
3. 거래 발생 장소 (영업점) 관련	미국 LA소재 000은행 및 NY소재 000은행의 거래처라고 말하는 미상의 회사로부터 거래하였다
4. 금융거래등 수단 (상품) 관련	총4회에 걸쳐 미화 590만 달러에 해당하는 자금을 (주)ABC상사 명의의 당행 000지점 계좌로 입금 받아 원화 입금처리 하였음
5. 금융거래등 방법 (특이거래) 관련	이후 동사의 대표이사인 이XX(현재 신용불량거래자임)가 당행 000지점에입금일 익일 내점하여 입금액 중 10억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영업점내 현금확보 문제로 일단 거절하였음.
6. 혐의거래로 판단한 사유 관련	거래의 현금이 필요한 사유를 묻자, 회사가 수출하는 0000 장치에 필요한 원자재 구입자금이라고 하면서 최근 환율폭등으로 인한 손실을 현금할인으로 대신하고자 한다라고 함
7. 종합의견	1. 제목 : 추정되는 전제범죄 또는 의심유형 2. 거래자 정보 관련 종합의견 3. 거래내역 정보 관련 종합의견 4. 의심되는 사유 관련 종합의견

2. 작성자의 입장에 본 의심스러운 거래자가 의심스러운 정도를 선택한다. 혐의도는 1~5점으로 구성되며 지점용과 본점용으로 나누어진다.
 - 지점용 : 지점에서 작성한 경우, 지점담당자가 지점 혐의도를 선택한다.
 - 본점용 : 본점에서 작성한 경우, 본점담당자가 본점 혐의도를 입력한다.
 - ▶ 혐의도 1 : 의심스러우나 불확실함
 - ▶ 혐의도 2 : 조금 의심스러움
 - ▶ 혐의도 3 : 의심스러움
 - ▶ 혐의도 4 : 보통이상 의심스러움
 - ▶ 혐의도 5 : 매우의심스러움
3. 첨부파일(Soft Copy) : 혐의거래와 관련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좌측에 표기된 파일명을 참조하여 파일을 첨부하고 별도로 파일명을 추가하여 첨부할 수도 있다.
4. 별도 송부하는 문서(FAX 포함) : 혐의거래보고 이후에 별도로 FAX로 전송할 파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한 것으로 본점에서만 사용한다.

벤처캐피탈 및 벤처투자조합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길라잡이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제5장

내부통제

제1절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제2절 교육 및 연수

제3절 직원알기제도

제4절 독립적 감사

제5절 기록보존

제6절 비밀보장 및 면책 규정

제1절 구성원별 역할 및 책임

- 이사회의 역할 및 책임
 - 벤처캐피탈 등 자금세탁방지과 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확산자금조달금지(이하 "자금세탁방지등"이라한다) 업무와 관련하여 이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사회의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
 - ① 벤처캐피탈 등의 업무 지침 제정·개정 및 폐지
 - ② 독립적 감사 결과 및 사후 조치에 대한 검토와 승인
 - ③ 대표이사·"금융사지배구조법"등 법령에 따른 준법감시인 또는 보고책임자 등에게 내부통제 체계 구축·운영 실태의 보고요구, 취약점에 대한 개선지시, 취약점 개선조치 사항에 대한 검토와 승인
- 대표이사의 역할 및 책임
 - 벤처캐피탈 등은 대표이사에게 자금세탁방지 등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① 자금세탁방지등을 위한 내부통제체계의 총괄적 구축·운영
 - ② 업무지침 제정·개정·폐지 안건의 이사회 상정(법규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 자구수정 등 업무지침 내용의 실질적인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개정의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이를 승인할 수 있다) 및 세부 업무지침 승인
 - ③ 전문인력 배치 등 지원조직 구성·유지
 - ④ 보고책임자 등에게 보고받은 내부통제체계의 취약점 개선 및 개선조치 사항의 이사회 보고
- 준법감시인의 역할 및 책임
 - 벤처캐피탈 등은 준법감시인등에게 자금세탁방지 등 업무와 관련하여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① 임직원의 직무 수행시 업무지침 준수여부 감독
 - ② 보고책임자가 수행하는 자금세탁방지등 업무를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감독할 책임 (준법감시인등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

- 보고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

- ① 의심거래보고와 고액현금거래보고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
- ② 고객확인업무 이행과 관련된 업무 총괄
- ③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구체적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보고 책임자에게 역할과 책임 부여
- ④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구축·운영을 위한 역할 및 책임에는 다음의 사항 포함
 - ▶ 세부 업무지침의 마련 및 운용
 - ▶ 직무기술서 등에 자금세탁방지등의 업무와 관련한 임직원별 역할과 책임 및 보고체계 등 명시
 - ▶ 전자금융기술의 발전, 금융 신상품의 개발 등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대량살상무기 확산자금 조달 유형과 기법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 ▶ 직원알기제도의 수립 및 운영
 - ▶ 임직원에게 대한 교육 및 연수
 - ▶ 자금세탁방지 등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보존책임
 - ▶ 자금세탁방지 등 관련 내부통제체계 구축·운영실태의 정기적 점검 및 그 결과 발견된 취약점의 대표이사 등에 대한 보고
 - ▶ 기타 자금세탁방지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등

- 자금세탁방지 업무부서

- 자금세탁방지 업무부서는 벤처캐피탈의 자금세탁방지 및 전사 자금세탁 위험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팀에서 총괄하며,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효율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적정규모의 인원을 두어야 함.

※ (자금세탁방지 업무부서) 대형사는 준법감시인이 속한 부서 또는 리스크 관리부서, 중소형사는 관리부서가 될 수 있음

(자금세탁방지 담당자) 보고책임자는 준법감시인 또는 대표이사, 전담직원은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맡은 자

- ① 전담직원은 가급적 다음과 같은 직원으로 임명

- ▶ 실무경험 3년 이상인 자로서 자금세탁방지업무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직원
- ▶ 보고책임자가 자금세탁방지 업무 지식을 보유한 관리부서 직원 등 자금세탁방지 업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직원 등

- ②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전담직원의 임명에서 제외함.
- ▶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건책은 1년, 감봉이상은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 근무성적이 불량한 자
 - ▶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한 자
- ③ 전담직원은 보고책임자를 보좌하여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담당하며, 그 역할 및 책임은 다음과 같다
- ▶ 고객확인업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자금세탁 위험관리
 - ▶ 의심스러운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의 모니터링 및 보고
 - ▶ 자금세탁방지 임직원 교육 및 연수 계획 수립·운영
 - ▶ 기타 보고책임자가 지시하는 사항

제2절 교육 및 연수

가. 교육 및 연수 개요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대한 임직원의 이해와 관심제고 등을 위해 보고책임자는 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임직원에게 대하여 연 1회(집합교육 포함)이상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 교육 및 연수 주관에 대한 사례 :

보고책임자는 교육 및 연수계획 수립, 연수교재 선정 등 주요 업무를 수행하고 세부 진행사항은 유관부서(교육/인사 담당 부서 등)와 협조하여 진행

나. 교육 및 연수 관리 절차

① 연간 교육 및 연수 계획 수립

- 자금세탁방지 업무부서의 자금세탁방지 전담직원은 직전 연도말 또는 연초에 경영진을 포함한 모든 임직원에게 대한 자금세탁방지 교육 대상, 교육 방법, 교육 장소 등을 고려하여 자금세탁방지 교육 및 연수 계획을 수립 후 보고 책임자에게 보고하여 승인

② 교육 및 연수 수행

- 수립된 계획에 근거하여 교육 및 연수를 수행하며, 교육 방법은 집합교육, 온라인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

③ 교육 및 연수 이수 관리

- 교육 및 연수 수행부서는 교육 및 연수 참가자들(교육 대상자들)의 교육 이수여부를 기록/관리하고,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 참가자들의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자금세탁방지 업무부서에 공유
- 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교육 및 연수 참가 출석부, 온라인/인터넷 교육 등의 경우 이수확인증 등이 될 수 있다.

④ 교육 및 연수 결과 보고

다. 교육 및 연수 내용

- 교육 및 연수는 직위, 담당업무 등 교육대상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및 연수의 내용은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관련법규 및 제도의 주요 내용
 - 자금세탁방지 관련 내부정책 및 절차(고객확인 및 검증방법, 고객확인업무 절차 등)
 - 고객확인업무 이행과 관련한 고객유형별 관련업무 처리절차
 - 의심되는 거래의 유형 및 최근 동향
 - 의심되는 거래 및 고액현금거래 보고 업무처리 절차
 - 자금세탁방지와 관련된 임직원의 역할 등
- 자금세탁방지제도의 변경 내용 및 자금세탁사례 등 새로운 내용을 지속적으로 교육 및 연수 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교육방법 등

- 교육 및 연수는 임직원의 담당 업무 및 직급에 따라 현행 교육제도를 세분화하여 실시한다.
-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한 경우 교육일자, 교육대상, 교육내용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 ① 시기 : 정기적 또는 수시로 임직원에게 자금세탁방지교육을 실시하여 직원들의 인식제고에 노력하여야 함
 - ② 방법 : 집합, 사이버
 - ③ 기록관리 : 교육실시 후 교육일자, 교육대상, 참석자, 및 교육내용 등 결과에 대해 기록하고 5년 이상 보관
 - ④ 교육 대상자 관리 : 보고책임자 및 전담직원은 교육 및 연수 미 이수자에 대하여 해당 부서에 통지하고 교육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

제3절 직원알기제도(Know Your Employee)

가. 정의

- 직원알기제도란 당사가 자금세탁 등에 당사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채용 시 또는 재직중인 임직원에 대하여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나. 직원알기제도 수행 절차 및 방법

- 인사 담당부서(인사팀)는 임직원을 신규채용 하는 경우 채용 대상자의 이름, 실명번호, 국적, 주소, 연락처 등을 확인하여야 함
- 인사 담당부서(인사팀)는 위 확인한 내용을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등 공적 서류를 통해 검증
- 인사 담당부서(인사팀)는 전담부서에 전체 임직원 및 신규채용 대상자에 대한 요주의리스트 대사를 요청하고 자금세탁방지 업무부서는 요주의 리스트 대사 및 검토를 수행 후 결과를 통보
- 대상자가 요주의 인물인 경우 채용 시 보고책임자의 승인을 얻어야 함

다. 지속적인 직원알기제도 수행

- 인사 담당부서(인사팀)는 연1회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에 대하여 이름, 실명번호, 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인사 담당부서(인사팀)는 월1회 이상 재직 중인 임직원에 대해 요주의리스트 대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필요시 전담부서에 요청
- 재직 중인 임직원이 요주의 인물인 경우 관련 내용을 보고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해당 임직원의 처리에 대해 결정

제4절 독립적 감사

가. 개요

- 벤처캐피탈은 영업의 규모, 업무범위, 내부통제 수준 등에 따른 위험을 고려하여 독립적인 감사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독립적 감사의 주체는 자금세탁방지업무 수행으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한 감사 조직이 자금세탁방지업무에 대한 감사를 수행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한다.

나. 독립적 감사 대상, 방법 및 수행 주기

- 독립적 감사대상 : 독립적 감사는 자금세탁방지 전담부서를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업무를 수행하는 현업부서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직접 방문 감사, 서면감사, 시스템을 통한 감사 등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 감사 범위 : 자금세탁방지체계 관련 다음의 영역에 대해 각 감사 항목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 감사 절차
 - ① 자금세탁방지 감사 계획 수립
 - ▶ 감사조직은 직전 연도말 또는 연초에 자금세탁방지 감사 대상 부서, 감사 시기, 감사 방법 등을 반영한 자금세탁방지 감사 계획을 수립
 - ② 자금세탁방지 감사 수행
 - ▶ 감사조직은 자금세탁방지 감사 계획에 근거하여 감사 대상 부서에 사전에 감사 항목(고객확인업무 수행의 적정성, 교육의 적정성, 직원알기제도 수행 적정성 등) 및 시기 등을 공지하여 자금세탁방지 감사 협조 요청 후 감사 수행

③ 감사 수행결과 보고

- ▶ 감사조직은 자금세탁방지 감사 결과와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이사회에 보고

④ 감사 지적사항 개선 요청 및 개선 계획 수립

- ▶ 감사조직은 감사 결과와 발견된 지적사항에 대해 자금세탁방지 업무부서에 통보
- ▶ 자금세탁방지 업무부서는 지적사항이 발견된 해당 부서의 부서장(예: 팀장)에게 개선 시기 및 개선 방법 등을 고려하여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 개선조치는 지적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 강화 및 문서/서류 (예: 고객확인업무 관련 실명증표 사본, 실제소유자확인 관련 주주명부 서류 등) 보완 등이 될 수 있음

⑤ 개선계획의 수령 및 적정성 검토

- ▶ 자금세탁방지 업무부서는 지적사항이 발견된 해당 부서로부터 수령한 개선 계획의 적정성을 검토 후, 개선계획이 미흡한 경우, 개선 계획 보완을 해당 부서에 요청

⑥ 감사 지적사항 개선 및 개선 결과 확인

- ▶ 지적사항이 발견된 해당 부서는 개선 계획에 따라 개선을 수행하고 개선결과를 자금세탁방지 업무부서에 보고함
- ▶ 자금세탁방지 업무부서는 지적사항이 발견된 해당 부서로부터 보고된 개선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하며, 필요 시 지적사항의 실제 개선여부를 재감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⑦ 개선 결과의 이사회 및 경영진 보고

- ▶ 준법감사인/보고책임자/자금세탁방지 업무부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결과를 이사회 및 경영진 보고

제5절 기록 보존

가. 보존기간

- 벤처캐피탈은 고객확인기록, 금융거래기록,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를 포함한 내·외부 보고서 및 관련 자료 등을 금융거래가 종료한 때로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또한, 고객확인 의무를 통해 확인 또는 검증된 고객 관련 정보를 기존 고객정보 관리와 동일한 주의 의무로 보관·관리 하여야 함

나. 보존 대상

- 고객확인 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음
 - 고객(대리인, 실제 소유자 포함)에 대한 고객거래확인서, 실명확인증표 사본 또는 고객신원정보를 확인하거나 검증하기 위해 확보한 자료
 - 고객신원정보 외에 금융거래의 목적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로 확인한 자료
 - 고객확인 의무 이행을 위한 내부승인 관련 자료
 - 고객확인 의무 이행 일시, 고객확인 의무 이행 담당자 등 고객확인 의무 이행 관련 자료 등
- 금융거래 기록과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음
 - 거래에 사용된 계좌(정산계좌)번호, 상품 종류, 거래일자, 통화 종류, 거래 금액을 포함한 전산자료나 거래신청서, 약정서, 내역표, 전표의 사본 및 업무서신
 - 금융거래에 대한 내부승인 관련 근거 자료 등

- 내·외부 보고와 관련하여 보존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음
 - 의심되는 거래 보고서(사본 또는 결재 양식) 및 보고 대상이 된 금융거래 자료
 -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를 기록한 자료 (영업부서 등으로부터 수집한 자료나 의심되는 거래로 판단한 이유에 관해 검토한 자료 또는 보고서 서식에 기재한 내용도 가능)
 - 의심되는 거래 미보고 대상에 대하여 자금세탁 등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조사하였던 기록 및 기타 자료
 - 자금세탁방지업무 보고책임자(법무실장)의 경영진 보고서 등
- 다음의 기타 자료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함
 - 자금세탁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활동의 설계·운영·평가와 관련된 자료
 - 독립적인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 기록 → 독립적 감사수행 및 사후조치업무 담당부서의 주관하에 보관
 - 자금세탁방지 등 교육내용, 일자, 대상자를 포함한 교육 관련 사항
 - 신규 상품 및 서비스 자금세탁 위험평가 결과
 - 직원알기제도 수행 결과

다. 보존방법

- 보존대상 문서 및 자료를 보존·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운영하여야 함
- 보존대상 문서 및 자료는 원본, 사본, 마이크로필름, 스캔, 전산화 형식 등 다양한 형태로 내부관리 절차에 따라 보존할 수 있음
- 보고책임자(법무실장)의 책임하에 보안이 유지되도록 보존 자료를 관리하여야 함

-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보존대상 자료를 요구하는 때에는 적시에 제공하여야 함(단, 특정금융정보법에 의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의 규정에 의한 관련 자료는 제외함)
- 보존자료 중 금융정보분석원 보고 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정보 보안관리 대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를 취하는 등의 금융정보분석원 보고정보 보안관리 절차를 수립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상세 절차는 별도로 정한 바에 따름.

라. 보존 장소

- 보존대상 자료는 벤처캐피탈 자금세탁방지부서 내에 보존하여야 함 단, 보존대상 자료를 동 부서 내에 보존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보고책임자의 판단으로 그 밖의 다른 장소에 보존할 수 있음 (관련 보존 근거 필요)

마. 자료의 폐기

- 자금세탁방지 관련 자료의 폐기는 벤처캐피탈내 폐기 절차에 따라 수행해야 함

제6절 비밀보장 및 면책 규정

가. 비밀보장

- 보고사실 누설 금지
 - 임직원은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고자 하거나 보고를 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
 - 임직원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5조제1항(수수한 재산이 범죄수익 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때 또는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범죄수익 등의 은닉·가장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하고자 하거나 신고한 경우 그 사실을 당해 신고에 관련된 금융 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5조제2항)
 - 임직원은 테러자금금지법 제5조제2항(수수한 재산이 테러자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거나 금융거래의 상대방이 동법 제4조제3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거래나 그에 따른 지급·영수를 하고 있다는 사실 또는 동법 제6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따라 관할수사기관에 신고를 하려 하거나 신고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금융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됨(테러자금금지법 제5조제3항).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공이 가능함
 - 당사 내부에서 테러자금의 조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신고 사실을 제공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의 명령 또는 지시에 따라 감독·검사를 하는 자가 감독·검사에 필요하여 금융거래 정보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불법재산 등으로 의심되는 거래의 보고 등) 및 제4조의2(금융회사등의 고액 현금거래 보고)에 따라 보고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해당 정보의 제공이 가능함)
- 금융거래정보 등의 우선제공
 - 다음의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42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

- ① 금융회사 등의 의심스러운 거래보고, 고액현금거래보고
 - ② 한국은행총재, 세관장, 외환정보집중기관장은 외국환업무 거래자료 통보
 - ③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법 집행기관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 ④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
 - ⑤ 금융정보분석원(KoFIU)의 관계행정기관장, 신용정보집중기관장에 자료제공 요청
 - ⑥ 금융회사 등에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제공 요구에 따라 외국환거래법에 규정된 외국환업무에 따른 거래를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 ⑦ 금융정보분석원장의 명령 또는 지시에 따라 감독·검사를 하는 자에 대한 특정금융거래정보 제공
-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외국환금융거래 정보 또는 자료 제공 요구
 - 요구내용 및 방법: 거래자의 인적사항, 사용목적, 요구하는 금융거래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로 벤처캐피탈의 장에게 요구
 - 거래자 인적사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만 기재하면 됨
 - ① 거래자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
 - ② 주민등록번호(여권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금융거래 시 거래자의 확인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번호 포함)
 - ③ 계좌번호 또는 증서번호
 - ④ 기타 금융회사가 누구의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
 -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에 의하여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음. 이때 정보 또는 자료 제공의 요청이나 요구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함
 - 기재 사항
 - ① 거래자 인적 사항
 - ② 사용목적
 - ③ 요구하는 금융거래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내용

나. 면책 규정

- 손해배상책임 면제
 - 금융회사 등(금융회사 등의 종사자 포함)은 의심스러운 거래보고를 한 경우 당해 보고와 관련된 금융거래의 상대방 및 그의 관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음.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보고를 한 경우에는 제외
- 재판상 증거 불인정
 -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한 사항 중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사기관 등 법집행기관 등에 제공한 특정금융거래정보는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음
- 증언 거부
 -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에 관여한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과 관련된 재판을 제외하고는 당해 보고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음. 다만,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거부할 수 없음

(참고6) 특정금융정보법과 금융실명법 및 외국환거래법과의 관계

특정금융정보법 상 다음 경우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제27조 및 「외국환거래법」 제22조(외국환거래의 비밀보장)의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

- 1)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스러운 거래를 보고하는 경우
- 2) 금융회사 등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고액현금거래를 보고하는 경우
- 3) 금융정보분석원장이 보고된 의심스러운 거래보고사항을 분석하기 위해 금융회사 등의 보관자료를 열람·복사하는 경우
- 4)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한국은행총재, 세관의 장으로부터 지급수단의 수출입에 대한 허가·신고관련 자료 및 외환정보집중기관의 장으로부터 국제청장, 관세청장에게 통보된 외환거래자료를 제공받는 경우
- 5)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수사기관 등에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 6) 수사기관 등이 특정 형사사건의 수사 등을 위해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정보, 고액현금거래보고정보 또는 외환자료정보를 정리 또는 분석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 7)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외국 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하는 경우
- 8) 금융정보분석원장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분석을 위해 관계행정기관장, 신용정보집중기관장에게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 9) 금융회사 등의 장에게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구분	금융실명법	특정금융정보법
고객 정보 수집	1) 실명확인	1) 고객확인업무 이행으로 신원확인, 2) 실제 소유자 여부 및 금융거래목적 확인
비밀보장예외 및 정보 제공	1) 예금주의 요구·동의 2) 영장 등 특별한 경우	1)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보고된 정보를 수사기관 등에 제공가능 2) 금융정보분석원장의 요청에 의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분석을 위한 정보제공
정보제공 사실통보	1) 정보제공사실을 본인에게 통보(타인 누설금지)	1) 본인 통보금지(보고사실 누설금지)
면책	-	1) 보고관련 손해배상책임 면제, 재판상 증거 불인정, 증언거부

벤처캐피탈 및 벤처투자조합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길라잡이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벤처캐피탈 및 벤처투자조합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길라잡이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제6장

자금세탁방지 감독 및 검사기관

제1절 감독기관 : 금융정보분석원(FIU)

제2절 검사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제1절 감독기관 : 금융정보분석원(FIU)

가. 금융정보분석원(FIU) 설립 배경과 FATF의 권고사항 29(FIU)

- **(설립 배경)** 우리나라는 1998년 10월에 아시아태평양자금세탁방지기구(APG)에 가입한 이후 FATF의 국제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를 위한 법령 등을 정비하였고,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의 회원 자격요건 충족을 위하여 2001년 특정금융정보법 제정과 함께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설립하였다. 이후 2006년 8월에 FATF의 준회원 자격을 얻었고 2009년 10월에는 FATF의 정회원 자격을 얻었다.
- **(FATF 권고사항 29)** FATF 권고사항 29 (금융정보분석원, 이하 FIU)에 따르면 FATF 회원국은 FIU를 설립해야 하며 FATF가 제시한 FIU의 기능 및 역할, 목적은 다음과 같다.
 - **(기능 및 역할)** FIU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법집행기관과의 적절한 협력을 통해 지연 없이 정보를 교환할 수 있어야 한다. 범죄가 의심되는 모든 경우 및 테러자금과 관련된 정보는 과도한 지체 없이 직접적이고 신속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FIU 간의 권한과 협력을 명확히 함으로써 FIU의 효과와 효율성을 더욱 향상시켜야 한다. FIU는 모든 관계기관으로부터 FIU의 기능과 관련한 모든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정보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은 자금의 흐름을 제대로 추적하고 불법적인 범죄 네트워크와 흐름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FIU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과 관련해 의심스러운 부분에 근거해 관계기관으로부터 얻고자 하는 추가 정보는 FIU에 보고된 이전의 의심스러운 거래 보고서에 의해 인지될 수도 있지만, FIU의 자체분석, 관련 당국이 제공한 정보 또는 다른 FIU가 보관하고 있는 정보와 같은 다른 수단에 의해 제시될 수도 있다.
 - **(목적)** FIU의 목적은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위해 의심스러운 거래와 근본적인 범죄활동 간의 연결고리 구축을 목적으로 받는 정보를 수집 및 정보분석하고 관할당국에 자금세탁 관련 전제범죄 또는 테러자금조달을 의심할 근거가 있는 분석결과와 추가 정보를 배포하는 것 등이다.

나. 금융정보분석원의 주요 업무

- 금융정보분석원은 복합행정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 직원 뿐만 아니라 파견기관인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법원 등 관계기관의 관련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의심 거래 등을 수집·분석하여 비정상적인 금융거래를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금융회사 등의 의심거래보고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외국 FIU와의 협조 및 정보교류 등을 담당하고 있다.

Q FIU의 주요 업무

- AML/CFT 정책 수립 및 법령 개정 : 특정금융정보법
- 심사분석 업무 : 금융회사 등의 CTR/STR 심사분석
- 감독 및 검사 업무 : 금융회사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 대외협력 업무 : 외국 FIU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
- 전산시스템 구축 및 보안 업무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
- 기타 협의회 운영 등 : AML/CFT 관련 정책협의회, 정책자문위원회, 법집행기관 협의회, 유관기관 협의회 등

(참고7) FIU 관련 특정금융정보법령 주요 조항

〈 특정금융정보법 제3조 금융정보분석원 〉

제3조(금융정보분석원)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

1. 제4조·제4조의2 및 제9조에 따라 보고받거나 통보받은 사항의 정리·분석 및 제공
2. 제4조·제4조의2·제5조·제5조의2·제5조의3·제5조의4 및 제8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감독 및 검사
3. 제4조제6항제2호에 따른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협조 및 정보 교환
4.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업무
5. 제15조의2에 따른 외국 금융감독·검사기관과의 협조 및 정보교환

6.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② 금융정보분석원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며,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 외에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 ③ 금융정보분석원의 정원(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의 정원을 포함한다)·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업무의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정기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제4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건수
 2. 제10조에 따라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제공을 요구받은 건수 및 제공한 건수
 - 2의2. 제10조의2에 따른 통보 및 통보유예 현황에 관한 통계자료
 3. 제11조에 따라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 정보를 교환한 건수
 4. 그 밖에 금융정보분석원 업무와 관련된 통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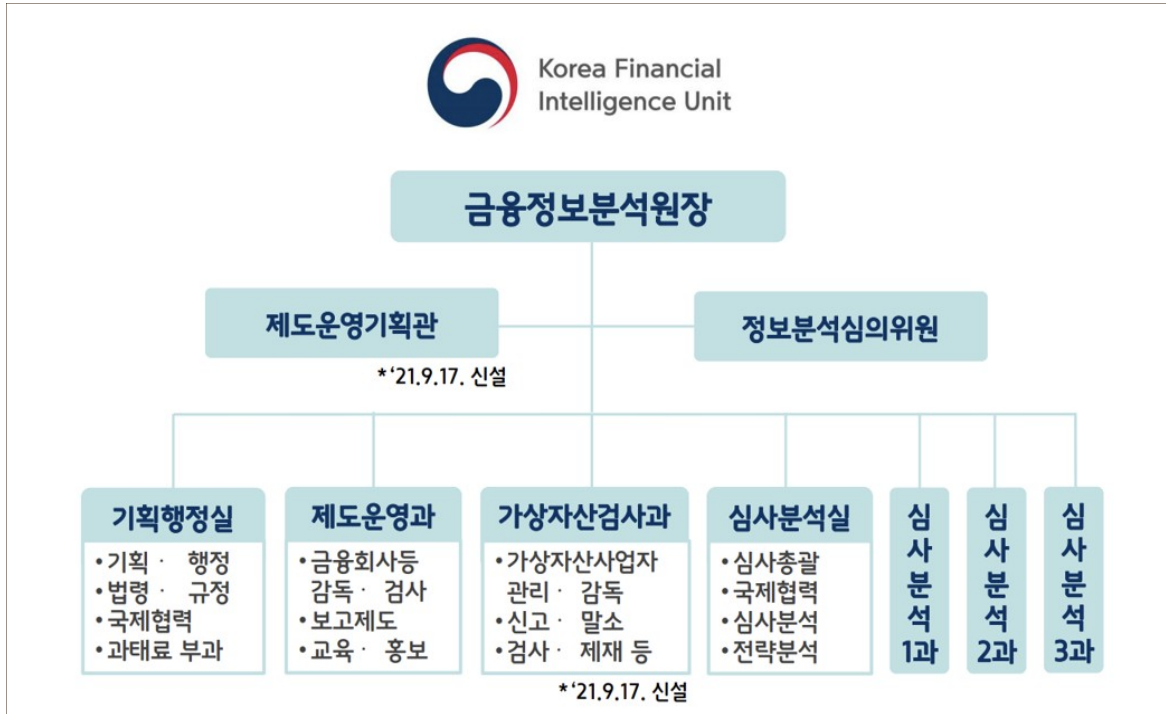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5조 〉

제5조(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 ①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동향 및 방지대책에 관한 조사·연구
 2.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금융회사 등에 대한 교육훈련 지원 및 상담
 3.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의 방지를 위한 국내외 협력증진 및 정보교류
- ② 금융정보분석원의 장(이하 “금융정보분석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이 보고하는 정보 및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이하“특정금융거래정보”라 한다)의 효율적인 보고·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시스템의 보호 및 보안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③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금융정보분석원 및 검찰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청·해양경찰청·행정안전부·국세청·관세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금융위원회·국가정보원의 소속 공무원을 구성원으로 하는 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국가 차원의 자금세탁행위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위험 평가 및 대책 검토
 2. 법 제10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제공된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활용결과에 관한 적정성 검토
 3. 금융정보분석원의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그 밖에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분석원의 업무 중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④ 금융정보분석원장은 자금세탁행위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금지 관련 국제협약과 국제기구의 권고사항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에 관한 세부내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보고체제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업무지침의 작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임직원의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4.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확인조치에 관한 사항
 5. 법 제5조의4에 따른 자료 및 정보의 보존에 관한 사항
- ⑤ 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금융정보 분석원장이 정한다.

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의 부서별 주요 업무

- 금융정보분석원 조직과 부서별 주요 업무



- 기획행정실
 - 자금세탁방지제도에 관한 정책과 주요업무계획의 종합·조정
 -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제도의 운영 및 전산시스템의 개발·관리 업무의 총괄·조정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처리 체계의 개선에 관한 사항
 - 금융기관 등 및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로부터 제공되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접수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수집 관련 기록보존에 관한 사항
 -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협력의 총괄·조정
 -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
 - 자금세탁방지 관련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

- 국제기구의 회원국 간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의 평가에 관한 사항 등
- 외국의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에 관한 정보 수집
-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법령질의 회신의 총괄
- 자금세탁방지 등에 관한 법규집·백서의 편찬 및 발간
- 자금세탁방지제도 및 그 운영에 관련된 자문위원회 운영 등
- 제도운영과
 - 금융기관 등의 보고책임자 임명 등 보고제도의 운영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보고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 수렴
 - 금융기관 등의 혐의거래보고 관련 업무지침의 작성 및 제공
 - 금융기관 등에 대한 보고대상 금융거래의 참고유형 제공 등 업무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금융정보분석원장으로부터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과의 검사업무 협력 및 조정
 - 자금세탁방지 관련 금융기관 등에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자금세탁방지 관련 주요정책 및 제도에 관한 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가상자산검사와
 - 가상자산사업자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수리·갱신·말소에 관한 사항
 - 가상자산사업자 검사 및 제재에 관한 사항
 -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행위 방지 관련 감독·검사 정책의 기획·총괄
 - 1~5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및 금융감독원의 업무에 대한 위원회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 심사분석실
 - 심사분석제공업무의 총괄·조정
 - 심사분석제공업무지침의 수립·분석 및 평가
 - 심사분석업무의 종결처리 및 금융기관에 대한 자료제공의 요청 등에 대한 지휘
 -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배당
 - 수사기관 등·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의 접수 및 배당
 - 수사기관 등·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에 대한 정보제공
 - 금융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전략적 심사분석
 - 심사분석기법의 연구·개발 및 지도
 - 자금세탁범죄의 동향분석 및 대처방안 연구 및 배포
 - 그 밖에 심사분석업무와 관련하여 심사분석1과·심사분석2과 및 심사분석3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심사분석1과
 - 외국환거래 등을 이용한 조세범죄 관련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국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심사분석1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 조세범죄와 관련된 자금세탁행위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 조세범죄 관련 심사분석 기법의 연구 및 개발

- 심사분석2과
 - 금융기관 등이 보고하는 대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심사분석1과의 주관에 속하는 것은 제외한다)
 - 관세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대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대외 금융거래 관련 정보의 심사분석
 - 심사분석2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 대외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 대외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심사분석기법의 연구 및 개발
- 심사분석3과
 - 금융기관 등이 임의적으로 보고하는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금융위원회·검찰총장 및 경찰청장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의 정보제공 요구에 따른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심사분석
 - 외국금융정보분석기구가 제공하는 국내 금융거래 관련정보의 심사분석
 - 심사분석3과 소관 심사분석 내용의 기록 및 관리
 - 국내 금융거래를 통한 자금세탁행위의 유형 및 참고사례 연구
 - 국내 특정금융거래정보에 대한 심사분석기법 연구 및 개발

제2절 검사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3호에서는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이하 벤처캐피탈)에 대한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위탁하였고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융정보분석원을 대신하여 자금세탁방지 검사를 이행해야 한다.

〈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5조 〉

제15조(감독·검사 등)

- ① 법 제1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회사등이 금융거래등의 상대방 또는 그의 관계자와 공모하여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하여 금융거래 질서를 해치거나 해칠만한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15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관세청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산림조합중앙회장·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및 새마을금고중앙회장을 말한다.
- ③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검사, 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른 조치와 같은 조 제3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조치요구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위탁한다.
 1.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2. 행정안전부장관: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4. 관세청장: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환전영업자
 5. 삭제 <2017.7.26>
 6. 삭제 <2016.3.22>
 7. 금융감독원장: 다음 각 목의 금융회사등
 - 가. 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은행
 - 나. 법 제2조제1호마목, 바목 및 카목에 따른 금융회사등
 - 다.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제7호, 제13호 및 제14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
 - 라. 「농업협동조합법」 제161조의11 및 제161조의12에 따른 농협은행, 농협생명보험, 농협손해보험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41조의4에 따른 수협은행
 - 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 바. 「외국환거래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소액해외송금업자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탁기관이 실시한 검사 결과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한 추가적인 검사가 필요하다고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8.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 :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9.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장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10. 산림조합중앙회장 :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11.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 :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12. 새마을금고중앙회장: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1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43조제1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카지노업을 하는 카지노사업자
- ④ 수탁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계획·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계획·절차 등에 적용되는 지침을 정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의 장은 그 지침에 따라야 한다.
- ⑤ 수탁기관의 장은 제4항 전단에 따라 검사 및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의 기준·계획·절차 등을 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금융정보분석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하게 할 수 있다.
- ⑦ 수탁기관의 장은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검사에 따른 조치결과를 포함한다)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FIU는 감독·검사의 총괄기관으로서 11개 검사수탁기관(행안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관세청, 금감원, 농협/수협/신협/신협, 새마을금고, 제주도청 등을 검사 수탁기관으로 검사권한을 위탁(또는 병행 위탁)하고 있다. 검사수탁 기관은 대상 기관에 대한 검사 및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FIU에 통보하고 있다.

가. 검사 절차

- ① **(연간검사 계획 수립)** 금융정보분석원장은 매년 연간 감독·검사 정책방향 등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 ② **(분기검사 계획)**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분기별로 이전 직전분기 검사실적, 검사대상 금융회사등에 대한 검사결과, 조치사항 및 다음분기 검사계획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사전통지)** 벤처캐피탈에 대한 효율적인 감독·검사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벤처캐피탈에 검사에 대한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한다.
- ④ **(검사)** 효율적인 감독·검사를 위하여 벤처캐피탈 관계자에 대한 출석, 진술요구, 금융거래 기록 등의 관련 자료 제출 요구를 할 수 있다.
- ⑤ **(조력을 받을 권리)** 검사를 받는 벤처캐피탈의 임직원은 문답서 및 확인서 작성 시, 변호사 또는 전문지식을 갖춘 조력자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⑥ **(검사결과의 통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캐피탈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검사 결과를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⑦ **(검사후 시정조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캐피탈에 필요한 조치를 직접 취하거나 해당 벤처캐피탈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나. 제재

특정금융정보법령에서는 AML/CFT위반에 대한 제재의 종류는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제재 조치별로 부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다. 아울러, 양정에 대한 기준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이하 검사 및 제재 규정)'에 명시되어 있다.

- 기관 제재
 - 법규위반 정도에 비례하여 시정명령, 영업 전부 또는 일부 정지요구 (6월 이내), 기관경고, 기관중의 등이 규정되어 있다(검사 및 제재규정 제14조).
- 인적 제재(임직원 제재)
 - FIU원장이 검사결과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임원에 대하여 해당 벤처캐피탈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의 종류 및 사유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가 있다.
- 제재의 감면과 가중
 - **(감면)** 금융정보분석원장과 검사수탁기관의 장은 금융회사등에 대한 제재 및 임직원에 대한 조치요구를 함에 있어서 사후 수습, 공적, 자진신고, 시정 여부 등을 참작하여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 **(가중)** 최근 3년 이내에 4회 이상 기관주의 이상의 제재를 받고도 관련 법규를 다시 위반한 경우,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문책 경고 또는 2회 이상의 주의적 경고 조치를 받고도 다시 주의적 경고 이상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직원이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조치를 받고도 다시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는 조치를 1단계 가중할 수 있다.
- 제재 절차
 - **(제재 조치 또는 건의)**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검사결과 적출된 지적사항에 대하여 조치내용을 결정하여 FIU원장에게 제재를 건의하거나 직접 조치한다.
 - **(제재심의위원회 심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과태료, 시정명령 등 제재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제재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심의한다. (10인 이내의 민간위원이 구성되며 심의 위원회에는 2인 이상이 포함되어 개의)

-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 금융정보분석원장 또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제재 조치를 하는 때에는 제재의 내용 등을 제재 대상자에게 사전통지하고 일정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 제재권 및 위탁 현황 】

구분	제재 종류	제재권자	
		금융정보 분석원장	중소벤처 기업부장관
기관	시정명령	○	
	(관계부처장에 대한) 영업정지 요구	○	
	과태료	○	
	기관경고·기관주의		○
임원	해임권고·직무정지	○	
	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
직원	면직·정직·감봉·견책·주의		○

벤처캐피탈 및 벤처투자조합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길라잡이

KOREA VENTURE
CAPITAL ASSOCIATION

제7장

해외사례를 통한 벤처캐피탈 가이드스

제1절 2022년 싱가포르통화청-자본시장 중개인법: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예방 고시 주요 내용

제2절 2024년 미국 재무부-투자자문 위험평가 가이드스 주요내용

제1절 2022년 싱가포르통화청-자본시장 중개인법

Q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예방 고시 주요 내용 (MAS Notice SFA04-N02)

〈 용어 정의 〉

- Capital Market Intermediaries (이하 CMI) : 자본시장 중개인
- Capital Market Product (이하 CMP) : 자본시장 상품
- Business relations (사업 관련)
 - CMI가 다음 이름으로 계좌를 개설하거나 유지하는 것
 - CMI의 재정적 조언 제공 또는 CMI에 의한 자금 관리 서비스 제공인 (자연인, 법인 또는 법적 합의 여부)
- Exempt Report Advisers (이하 ERA) :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또는 주 규제 당국에 자문사로 등록할 필요가 없는 비등록투자 자문사 이지만, 수수료를 지불하고 IARD/FINRA 시스템을 통해 공개 정보를 보고
- Registered Investment Advisors(이하 RIA) : 등록투자자문업자(RIA)는 고객에게 증권 투자에 대해 조언하고 투자 포트폴리오를 관리할 수 있는 금융 회사
- Asset Under Management (이하 AUM) : 운용자산(AUM)은 개인 또는 법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관리하는 투자 자산의 시장 가치

가. 배경

- 싱가포르통화청(Monetary Authority of Singapore, 이하 MAS)은 싱가포르 중앙은행과 금융기관 규제 및 감독 권한을 가진 기관으로서, 1970년 싱가포르 자본시장 중개인법을 제정하였다. 2022년 3월, 자본시장 중개인을 위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예방을 위한 고시를 공표하였다.

나. 기본 원칙

- 본 고시는 모든 CMI의 운영 및 사업 활동 수행에 대한 지침 역할을 하며 다음의 내용을 기본으로 한다.
 - CMI는 고객, 고객과 관련된 당사자 및 실제 소유자를 대신하여 권한을 행사하며 업무 수행시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CMI는 높은 윤리적 기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하며, 디지털토큰거래를 포함한 사업관계를 수립하거나 거래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금세탁과 연결되거나 연결될 수 있거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해야 한다.
 - CMI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싱가포르의 관련 법 집행 기관을 최대한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다. 위험평가 및 위험기반접근법(RBA) 적용

- CMI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을 식별, 평가 및 이해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고객
 - 고객이 거주하는 국가 또는 관할권;
 - CMI가 사업을 운영하는 국가 또는 관할권
 - 디지털 CMP 토큰 거래를 포함한 제품, 서비스, 거래 및 CMI의 전달 채널.
- 위의 조치를 위한 방법
 - CMI의 위험평가를 문서화
 - 모든 관련 위험 요소를 고려하여 전반적인 위험 수준과 위험 완화의 적절한 유형 및 범위를 결정
 - CMI의 위험평가를 최신 상태로 유지
 - 위험평가 정보를 당국에 제공하기 위한 체계 구축

- 위험 완화를 위한 CMI의 이행
 - CMI가 식별했거나 싱가포르 당국 또는 기타 관련 당국이 CMI에 통보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완화할 수 있도록 고위 경영진이 승인한 내부통제 정책, 절차를 개발하고 이행
 - 내부통제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강화
 - 고위험이 식별된 경우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한 강화된 조치를 이행
 - 식별된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 또는 강화된 조치의 이행이 싱가포르 당국 또는 관련 당국의 위험 평가 및 지침을 준수하는지를 검증
- (새로운 제품, 관행 및 기술) CMI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을 식별하고 평가해야 한다.
 -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 신기술 및 신기술의 사용
 - 신상품과 기존 상품 모두에 대한 신기술의 사용
- CMI는 해당 상품, 관행 및 기술을 출시하거나 사용하기 전에(본 통지에서 해당 사용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위험 평가를 수행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완화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CMI는 위의 요구사항을 준수 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새로운 제공 메커니즘을 포함한 신상품 및 서비스, 비즈니스 관행
 - 익명성을 선호하는 신기술 또는 개발 중인 기술

라. 고객확인(CDD)

- 익명 또는 가상 계정
 - CMI는 거래관계의 성립 또는 계좌를 개설하지 아니하고 거래를 하기 전에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익명 계정이나 가상 이름의 계정을 개설하거나 유지해서는 안된다.
 - CMI가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하거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거래를 시작하기 전에 CMI가 고객의 자산이나 자금이 마약 거래 또는 범죄 행위의 수익금이라고 의심할 합리적인 근거가 있거나 테러자금 조달 범죄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다음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a) 고객과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하거나 고객을 위한 거래를 수행하지 않는다.
 - (b) 의심거래보고를 감독 당국에 제출한다.
- 고객확인(CDD) 이행 시기
 - CMI는 다음의 경우에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 (a) CMI가 고객과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 시
 - (b) CMI가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고객과 디지털 CMP 토큰 거래 외에 \$20,000를 초과하는 거래를 할 경우
 - (c) CMI가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고객과 디지털 CMP 토큰 거래를 할 경우
 - (d) CMI가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가치 이전을 통해 디지털 CMP 토큰을 제공하거나 수령할 경우
 - (e) CMI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이 의심되는 경우
 - (f) CMI가 이전에 획득한 정보의 진실성이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 CMI가 둘 이상의 거래가 연관되어 있거나 연결되어 있거나, 명시된 상황과 관련하여 본 통지에 제공된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단일 거래를 더 작은 거래로 고의적으로 재구성한 결과라고 의심하는 경우

고객 식별

① 고객을 식별해야 한다.

② CMI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획득해야 한다.

(a) 별칭을 포함한 성명

(b) 고유 식별 번호(예: 신분증 번호, 출생 증명서 번호 또는 여권 번호, 고객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 법인 번호 또는 사업자 등록 번호)

(c) 고객의 거주지 주소 / 등록된 주소나 사업장 주소

(d) 생년월일, 설립, 법인 설립 또는 등록일(해당하는 경우)

(e) 국적, 법인 설립 장소 또는 등록 장소 (해당하는 경우)

- 고객이 법인 또는 법적 계약인 경우 CMI는 고객을 식별하는 것 외에도 법인 또는 법적 계약을 규제하고 구속하는 법적 형식, 권한도 식별해야 한다.
- 고객이 법인 또는 법적 계약인 경우 CMI는 각 관련 당사자에 대해 최소한 다음 정보를 획득하여 고객의 관련 당사자를 식별해야 한다.
 - 별칭을 포함한 성명
 - 고유 식별 번호 (예: 신분증, 출생증명서 또는 여권)
- CMI는 CDD와 고객식별을 위한 위험평가 등 필요한 이행조치를 문서화해야 한다.

고객 확인

- CMI는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소스 데이터, 문서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고객의 신원을 확인해야 한다. 고객이 법인 또는 법적 관계인 경우 CMI는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소스 데이터, 문서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법적 형식, 존재 증명, 법적 근거와 규제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
(고객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임명된 자연인의 식별 및 신원확인)
- 고객이 자신을 대리하여 행동하도록 한 명 이상의 자연인을 임명하는 경우 또는 고객이 CMI와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할 때 고객을 대신하여 행동할 한 명 이상의 자연인을 임명하거나 고객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 CMI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해당 자연인에 대해 최소한 다음 정보를 획득하여 고객을 대신하여 행동하거나 행동하도록 임명된 각 자연인을 식별
 - (i) 별칭을 포함한 전체 이름,
 - (ii) 고유 식별 번호(신분증 번호, 출생, 인증서 번호, 여권번호 등)
 - (iii) 거주지 주소
 - (iv) 생년월일
 - (v) 국적
 -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소스 데이터, 문서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각 자연인의 신원을 확인
- CMI는 다음을 통해 고객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임명된 각 자연인의 적법한 권한을 확인해야 한다.
 - 고객이 고객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해당 자연인을 임명하는 것을 승인하는 적절한 문서 증거를 확보
 - 임명된 자연인의 견본 서명. 해당 자연인이 고객을 대신하여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개인의 견본 서명을 얻거나 전자 확인 수단을 사용하는 등의 방법을 사용
- CMI가 자연인의 사업장 주소를 획득한 경우, CMI는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소스 데이터, 문서 또는 정보를 사용하여 사업장 주소를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CMI는 고객확인을 위한 평가 등 결과에 대해 취해진 모든 조치를 문서화해야 한다.

■ 실제소유자의 신원확인

- CMI는 고객과 관련하여 실제소유자가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
- 고객과 관련하여 실제소유자가 한 명 이상인 경우 CMI는 실제소유자를 식별하고 관련 정보 또는 신뢰할 수 있는 회사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제소유자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 ① 법인인 고객의 경우
 - (i) 법인소유의 자연인을 식별
 - (ii) 법인을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자연인이 수익적 소유자인지 또는 법인을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자연인이 없는 경우 (i)에 따라 의심스러운 경우 최종적으로 법인을 통제하거나 법인에 대한 궁극적인 실효적 통제권을 갖고 있는 자연인을 식별
 - (iii) (i) 또는 (ii)호에 따라 자연인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법인이나 동등하거나 유사한 지위에 집행 권한을 갖고 있는 자연인을 식별
 - ② 법적 계약을 맺은 고객의 경우 -
 - (i) 신탁의 경우 위탁자, 수탁자, 보호자(있는 경우), 수혜자(지정된 범위에 속하는 모든 수혜자를 포함) 및 궁극적인 행사를 수행하는 모든 자연인
 - (ii) 다른 유형의 법적 합의의 경우 (i)항에 설명된 것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치에 있는 사람을 식별
- 고객이 자연인이 아닌 경우 CMI는 고객 비즈니스의 성격과 소유권 및 통제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 사업관계의 목적과 성격에 관한 정보

- CMI는 비즈니스 관계 수립 신청서를 처리할 때 고객으로부터 비즈니스 관계의 목적과 의도된 성격에 관한 정보를 이해하고 적절하게 얻어야 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

- CMI는 고객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한다.
- CMI는 고객과의 비즈니스 관계 과정에서 고객의 계좌 활동을 관찰하고 과정 전반에 걸쳐 이루어진 거래를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또한 CMI는 자금출처 확인을 위하여 거래 고객에 대한 위험과 비즈니스가 적절한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 CMI는 비즈니스 관계 전반에 걸쳐 명백하거나 경제적 또는 합법적인 목적이 없는 모든 복잡하고 비정상적인 거래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위해 CMI는 CMI의 규모와 복잡성에 비례하여 다음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구현해야 한다.
 - 고객과의 비즈니스 관계를 모니터링
 - 의심스럽고 복잡하며 비정상적으로 크거나 비정상적인 거래 패턴을 탐지하고 보고
- CMI는 가능한 한 위의 거래 배경과 목적을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당국에 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사 결과를 문서화해야 한다.
- CMI는 고객과 고객을 대신하도록 임명된 자연인, 고객과 관련된 당사자 및 고객의 실제 소유자와 관련하여 획득한 CDD 데이터, 문서 및 정보가 관련성이 있고 최신 상태인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위험도가 높은 고객 범주의 경우, 기존 CDD 데이터, 문서 및 검토한 정보 등과 날짜를 기록한다.
- 고객과의 기존 비즈니스 관계가 자금세탁이나 테러자금 조달과 연결되어 있다는 의심을 받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고 CMI가 고객을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CMI는 고객을 유지하는 이유를 입증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 고객과 CMI의 비즈니스 관계는 강화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그에 상응하는 위험 완화 조치를 받아야 한다.

- CMI가 고위험 고객 또는 고객과의 비즈니스 관계가 더 높은 위험에 처해 있다고 평가하는 경우, CMI는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 CMI 고위 경영진의 승인을 얻는 것을 포함하는 강화된 CDD 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 CMI는 고객을 대리하도록 임명된 자연인 및 실제소유자의 신원확인을 완료하기 전에 고객과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 CMI가 고객의 신원을 확인하기 전에 고객과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하는 경우, 고객을 대리하도록 임명된 자연인, 그리고 필요한 경우 고객의 실제 소유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검증에 앞서 해당 비즈니스 관계가 수립될 수 있는 조건에 관한 내부 위험관리 정책 및 절차를 개발하고 이행
 - 신원확인이 안될 경우, 합리적으로 신속히 신원확인을 이행
- CMI가 고객확인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 고객과 비즈니스 관계를 시작 또는 지속할 수 없으며 고객을 위해 거래를 수행할 수 없다. 또한, CMI는 STR 제출을 보장하기 위해 상황이 의심스러운지 고려해야 한다.

■ 기존 고객

- CMI는 기존 고객의 데이터, 문서, 정보 등에 대하여 이전에 적용한 조치 및 해당 조치가 마지막으로 적용된 시간을 고려하여 중요성 및 위험에 대한 자체 평가를 기반으로 기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 CMI는 관련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정보 출처와 당국이 제공한 목록 및 정보에 대해 고객 및 고객을 대리하도록 임명된 자연인, 고객과 관련된 당사자 및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선별해야 한다.
 - CMI가 고객과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하는 시점 또는 합리적으로 고객확인을 이행한 직후
 - CMI가 고객과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한 후 정기적으로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 다음에 대한 변경이나 업데이트가 있는 경우
 - (i) 당국 또는 기타 관련 기관이 CMI에 제공한 목록 및 정보
 - (ii) 고객, 고객과 관련된 당사자 또는 고객의 실제소유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임명된 자연인.
 - CMI와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고객을 위해 CMI가 디지털 CMP 토큰 거래를 수행하는 경우
 - CMI와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CMI가 가치 이전을 통해 디지털 CMP 토큰을 적용하거나 수신하는 경우

강화된 고객 실사

- 정치적 요주의 인물
 - "국내 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이란 국내에서 주요 공적 기능을 위임받았거나 위임받은 자연인을 의미
 - "가족 구성원"이란 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의 부모, 의붓부모, 자녀, 의붓자식, 입양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의붓형제자매 및 입양형제자매를 의미
 - "외국의 정치적 노출자"란 외국 또는 관할권에서 주요 공적 기능을 위임받았거나 위임받은 자연인을 의미
 - "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이란 국내의 정치적 노출인, 외국의 정치적 노출인 또는 국제기구의 정치적 노출인을 의미 (예: 국가 원수, 정부 수반, 정부 장관, 고위 공무원, 고위 사법 또는 군 관료, 국유 기업의 고위 간부, 정당 고위 관료, 국제기구의 입법부 및 고위 경영진 등)
- CMI는 고객, 고객을 대신하여 행동하도록 임명된 자연인, 고객과 관련된 당사자 또는 고객의 수익적 소유자가 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 또는 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의 가족이나 가까운 동료에 대하여 고객확인을 이행해야 한다.
- CMI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같은 강화된 고객확인(EDD)를 이행해야 한다.
 - 고객과 비즈니스 관계를 수립하거나 지속하기 위해 CMI의 고위 경영진으로부터 승인이 필요
 - 적절하고 합리적인 수단을 통해 고객과 고객의 수익적 소유자의 부의 원천과 자금의 출처를 확인
 - 고객과의 비즈니스 관계가 진행되는 동안 고객과의 비즈니스 관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
- CMI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 조치를 이행할지 여부 또는 범위를 결정할 때 위험기반접근법(RBA)을 채택할 수 있다.
 - 국내 정치적으로 노출된 개인, 그 가족 및 가까운 동료,
 - 국제기구에서 정치적으로 노출된 개인, 그 가족 및 가까운 동료
 - 중요한 공직에서 물러난 정치적으로 노출된 사람, 그러한 사람들이 주요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는 영향력 수준을 고려하여, 그들의 가족 및 가까운 동료.

마. 기록 보관

- CMI는 본 통지에 따른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CMI가 획득하거나 생산해야 하는 모든 데이터, 문서 및 정보와 관련하여 해당 데이터, 문서 및 정보의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 CMI는 위에서 요구하는 조치를 다음사항을 고려하여 이행해야 한다.
 - 법에 따른 모든 요건(본 통지 포함)이 충족되었는지 여부
 - CMI가 수행한 모든 개별 거래는 필요한 경우 범죄 행위 기소를 위한 증거를 제공하기 위해 재구성될 수 있음(관련된 통화의 금액 및 유형 포함).
 - 싱가포르 당국 또는 기타 관련 당국과 CMI의 내부 및 외부 감사인은 CMI의 비즈니스 관계, 거래, 기록 및 CDD 정보를 검토하고 통제에 대한 준수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
- CMI는 합당한 시간 또는 법률이나 요청 기관이 부과한 보다 구체적인 기간 내에 정보에 대한 싱가포르 관련 기관의 문의나 명령을 충족해야 한다.
- CMI는 기록 보존 목적을 위해 기록 보존 정책을 설정할 때 다음 기록 보존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 계정을 개설하지 않고 수행된 비즈니스 관계, 가치 이전 및 거래와 관련된 CDD 정보와 계정 파일, 비즈니스 서신 및 수행된 분석 결과의 경우 종료 후 최소 5년 동안 해당 비즈니스 관계 또는 가치 이전이나 거래의 완료
 - 거래를 설명하고 재구성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여 거래와 관련된 데이터, 문서 및 정보의 경우 거래 완료 후 최소 5년 보존
- CMI는 싱가포르 법원에서 증거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데이터, 문서 및 정보를 원본이나 사본, 종이, 전자 형식 또는 마이 크로 필름으로 보관
- CMI는 의심거래보고당국(STRO)의 요청이나 명령에 따라 조사 중이거나 STR의 대상이었던 문제와 관련된 고객과의 모든 비즈니스 관계 또는 거래에 대한 데이터, 문서 및 정보의 기록을 보관

바. 의심거래 보고

- CMI는 자금세탁 또는 테러자금조달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를 당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법령(싱가포르 몰수 및 테러관련 법률-CDSA 10, TSOFA)의 조항을 염두에 두고 적절한 내부 정책, 절차를 구현해야 한다.
 - 자금세탁이나 테러 자금 조달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든 거래를 즉시 보고하도록 대표 및 모든 임직원에게 공지한다.
 - 모든 내부 거래와 함께 감독당국(STRO)에 보고된 모든 거래 기록을 보관한다.
- CMI는 거래 금액에 관계없이 의심스러운 거래(거래 시도 포함)에 대한 보고서를 즉시 감독당국(STRO)에 제출해야 한다.
- CMI는 의심거래보고 제출을 보장하기 위해 상황이 의심스러운 정황을 고려하고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결정 근거를 문서화 해야 한다.
 - CMI가 어떤 이유로든 의심거래보고 등 조치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 제공에 관한 중대 범죄법(CDSA)의 제48조를 참고
 - 고객이 CMI가 요청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꺼려하거나 제공할 수 없거나 제공할 의사가 없거나, 비즈니스 관계 설정이나 보류 중인 거래를 위해 보류 중인 신청을 철회하거나 기존 비즈니스 관계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경우

사. 내부 정책, 규정 준수, 감사 및 교육

- CMI는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위험과 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고 이를 직원들에게 전달해야 한다.
- CMI의 내부통제 정책, 절차는 본 공지의 모든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아. 규정 준수

- CMI는 최소한 경영진 수준에서 AML/CFT 규정 준수 책임자를 임명하는 것을 포함하여 적절한 규정 준수 관리 계획을 개발해야 한다.
- CMI는 AML/CFT 규정 준수 담당자뿐만 아니라 AML/CFT 규정 준수 담당자를 지원하도록 임명된 기타 사람이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모든 고객 기록 및 기타 관련 기록에 적시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자. 독립적 감사

- CMI는 자원이 적절하고 독립적이며 CMI의 내부 정책, 절차 및 통제의 효율성과 규제 요구 사항 준수 여부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감사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차. 임직원 채용

- CMI는 직원 채용, 임원 및 대표 임명 시 높은 기준을 보장하기 위한 심사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타. 교육

- CMI는 직원, 임원 및 대표자(싱가포르 또는 기타 지역에 관계 없이)가 다음 사항에 대해 정기적이고 적절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조달금지 관련 법률 및 규정, 특히 고객확인(CDD) 조치, 의심스러운 거래 탐지 및 보고(STR)
 -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의 일반적인 기술, 방법 및 경향 등

제2절 2024 미국 재무부-투자자문 위험평가 가이드스 주요내용

〈 핵심 요약 〉

- 미국의 투자 자문업은 개인 투자자, 고액 자산가, 민간 기관, 기업 등에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범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구성된다.
- 연방 및 주의 증권규제기관의 투자자문 산업에 대한 감독은 사기 및 조작으로부터 투자자와 전체 증권 시장을 보호하는 데 광범위하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
- 투자자문사는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이하 AML/CFT)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동의무의 준수 여부도 조사되지 않는다. 다만, 일부 투자 자문사의 경우는 해당 기업이 등록된 브로커-딜러(즉, 이중 등록자)이거나, 은행이거나, 은행의 자회사인 경우 AML/CFT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 투자 자문사가 은행 또는 계열사이거나 해당 투자자문가를 포함하는 전사적 AML/CFT 프로그램을 구현하는 중개업자 등은 은행비밀보호법(BSA)에 따라, 다른 금융기관의 공동 고객에 대한 계약상 의무에 AML/CFT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AML/CFT 이행은 투자자문업 전반에 걸쳐 일률적이지 않으며, 투자 자문사의 관련된 자발적 조치 이행은 포괄적으로 시행되지 않는다.
- 모든 투자 자문사에 적용되는 AML/CFT 요구 사항이 없기 때문에 동일 업종 투자자문사가 서로 다른 AML/CFT 의무(필요시)를 감독받을 수 있다. 때로는 자금출처와 신원확인이 모호한 투자자 또는 고객이 AML/CFT 조치를 적용할 필요가 없는 투자자문사를 선택할 수도 있다.
- 법집행 사례 및 AML/CFT의무와 관련된 은행비밀법(BSA)보고와 미국 정부내 정보를 검토한 바에 따르면 투자자문가와 관련된 몇몇 불법 금융 거래에 대한 위협이 확인되었다.
 - 투자 자문사는 외국의 부패, 사기, 탈세와 관련된 불법 수익의 미국 시장 진입에 중요 역할을 해왔다.
 - 러시아 정치인의 불법자금에 대한 투자 자문, 중국과 러시아의 장기 기술사용 및 면허에 대한 투자 자문, 초기 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 투자 자문사는 여러 가지 이유로 위의 이러한 위협에 취약할 수 있다. 그 이유로 투자자문 부문은 일반적으로 차익거래에 대하여 포괄적인 AML/CFT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세부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다.

- 첫째, 투자자문 부문은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AML/CFT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없는데, 이는 범죄자가 고객확인이 취약하거나 형식적인 투자자문을 통해 미국 금융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차익거래 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 둘째, 중개업자가 투자자문 활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AML/CFT 의무가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의무를 지는 주체 (예: 투자 자문가와 협력하는 수탁은행 또는 브로커-딜러)는 반드시 고객(또는 사모펀드의 경우 사모펀드의 기본 투자자)과 직접적인 관계를 가질 필요는 없으며, 투자자문사에 관련 정보 공개를 요구할 수 없어 이로 인하여 정보의 비대칭이 발생될 수 있다.

또한, 투자자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회사(일반적으로 자문 펀드에 대한 자문가 및 특정 서비스 제공자)는 잠정적으로 의심스러운 활동을 보고할 필요가 반드시 있는 것은 아니다.

- 셋째, 특정 비즈니스 관행에서는 고객이나 투자자의 신원과 정보의 비밀을 장려하고 주요 규정 준수 책임을 아웃 소싱하여 연방증권법에 따라 AML/CFT의무가 제한되어 있다. (예 : 미국증권거래위원회 등록 면제되는 사모펀드, 이러한 사모펀드에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자문, 은행과 연관된 중개업자, 헤지펀드, 벤처캐피탈 펀드 등)

이러한 펀드를 관리하는 투자자문사는 일반적으로 궁극적인 수익적 소유자를 공개할 필요가 없는 외국 법인의 자산을 일상적으로 투자할 수도 있다. 2022년 4분기 현재, 관련 감독당국이 관리하는 사모 펀드중 파악되지 않은 미국인이 아닌 투자자 소유 지분은 2,840억 달러에 달했다.

이는 실제 소유자가 복수인 경우로 제3자 중개인을 포함한 구조를 통하여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펀드 중 상당수는 AML/CFT 규제 수준이 다양한 미국 이외 지역의 관할권에 소재하고 있으며, 미국 재무부가 이에 대한 투자자 신원 및 자금 출처 정보를 얻을 수 없는 경우 투자자를 대표하는 중개인의 진술 및 보증에 의존하는 것이 일상적인 관행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 시장구조와 규제 체계

- 미국에는 다양한 유형의 고객에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광범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갖춘 수천 명의 투자 자문가가 있다. 투자 자문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에는 포트폴리오 관리, 재무 계획 및 연금 컨설팅이 포함되며 자문 서비스는 "재량" 또는 "비재량"으로 제공될 수 있다.
- 투자 자문가는 개인 투자자, 고액 자산가, 민간 기관, 정부 기관(지방, 주 및 외국 정부 자금 포함)을 포함한 광범위한 고객에게 전문지식을 제공한다. 투자 자문가는 고객과 긴밀히 협력하여 고객의 투자 전략을 수립하고 구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자문가는 기업, 개인 기업, 파트너십, 유한 책임 회사 등 다양한 법적 형태로 조직될 수 있다. (2023년 7월 현재 등록된 투자자문사(이하 RIA)는 15,391개, 운용자산(AUM)은 약 125조 달러)
- 미국 전역에 약 17,000명의 주정부 등록 투자 자문가가 있고,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이하 SEC) 등록이 면제되지만, 특정 정보를 SEC에 제출해야 하는 5,846명의 등록면제자문사(이하 ERA)가 있다.
- RIA 및 ERA는 개인, 기관 투자자 또는 개인 자금을 대신하여 수십억 달러를 관리하는 반면, 소규모 주정부 등록 투자 자문사는 중소기업 및 개인 투자자에게 조언을 제공한다.
- 대부분의 투자 자문가는 일반적으로 특정 보고 요건을 따르지만, 해당 감독당국의 특정보고 요건의 범위는 해당 자문사가 RIA인지, 주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지, 잠재적으로 ERA인지 아니면 연방 정부에 등록할 필요가 없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또는 주정부 등록요건과 운용자산에 따라 달라지기도 한다.
- 특정 주정부 등록 투자 자문사에는 주 증권법 및 규정에 따라 유사한 요구 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투자 자문사는 등록 상태에 따라 일반적으로 SEC 또는 주종류 증권규제기관의 조사를 받기도 한다.

나. 투자자문 참여 대상

1) 투자자문가

- 1940년 투자 자문법(Advisers Act)에 정의된 투자 자문가는 보상을 받고 타인에게 조언을 제공하거나 증권에 관한 보고서 또는 분석을 발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회사이다. 투자 자문가는 개인이나 회사가 특정한 법적 의무를 갖고 있으며 SEC 또는 주 증권감독기관에 투자자문으로 등록되었거나 등록이 필요하거나 그러한 요구 사항이 면제됨을 의미하는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다.
- 투자 자문가의 일반적인 이름에는 자산 관리자, 투자 상담사, 투자 관리자, 포트폴리오 관리자 및 자산 관리자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 대부분의 투자 자문가는 자문가에 대한 특정 정보를 수집하는 자기 표준양식(Average Daily Value, 이하 ADV)을 제출해야 한다. 표준양식(ADV)는 다음을 포함하여 자문가에 대한 특정 정보를 수집한다.
 - 운용자산, 소유권, 고객 수, 직원 수, 비즈니스 관행, 고객 자금 관리인 및 제휴, 특정 징계 또는 중대한 사건 등
 - SEC 또는 주증권규제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ERA는 축약된 버전의 ADV 양식만 제출하면 된다. 즉, 고객 관련 질문에 더 적게 답변하고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더 적은 정보를 제공하면 된다. 표준양식(ADV)에서는 투자자문가가 개별 고객이나 투자자의 이름을 공개하도록 요구하지는 않는다.
- 1억 1천만 달러 이상의 운용자산을 관리하는 투자자문사는 SEC에 등록해야 하며 표준양식(ADV)을 제출하고 최소한 매년 업데이트해야 한다. SEC는 RIA에 적용되는 연방증권법을 관리하고 집행한다.
 - 2023년 7월 31일 현재 15,391개의 RIA가 있으며 고객을 위해 약 125조 달러의 운용자산을 보고했다.

2) 면제보고자문사(ERA)

- ERA는 SEC에 등록해야 하는 투자 자문가이지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법적으로 그러한 요구 사항이 면제된다.
 - ① 하나 이상의 벤처 캐피탈 펀드에만 자문을 제공
 - ② 하나 이상의 민간 펀드에만 자문을 제공하고 미국에서 운용자산이 1억 5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 등록이 필수는 아니지만 ERA는 표준 약식(ADV)양식을 SEC에 제출해야 하며 SEC는 ERA를 조사할 권한을 유지한다. 2023년 7월 31일 현재 SEC 등록이 면제 되었지만 표준 약식(ADV)양식을 제출한 ERA는 5,846개였다.
 - (사모펀드 자문가) ERA의 일종인 사모펀드 자문사는 사모펀드만을 자문하고 미국내 운용자산이 1억 5천만 달러 미만인 경우 SEC 등록이 면제된다. 2023년 7월 31일 기준으로 약 4,400명의 면제 민간 펀드 자문가가 있으며, 이 중 약 500명은 벤처 캐피탈 자문이기도 하다.
 - (벤처캐피탈 자문가) 다른 유형의 ERA인 벤처캐피탈 자문가는 운용자산 금액에 관계 없이 벤처캐피탈펀드에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SEC 등록이 면제된다. 2023년 7월 31일 현재 면제 벤처캐피탈 자문가는 약 2,000명이며, 이 중 약 500명은 민간 펀드 자문사이기도 하다.

3) 주정부 등록 투자 자문사

- 주에 등록된 투자 자문사는 일반적으로 운용자산이 1억 달러 미만이다. 주등록 투자 자문사는 일반적으로 SEC에 등록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으며, 대신 특정 예외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한 해당 주당국에 등록하고 감독을 받는다.
- 주정부에 등록된 투자 자문가도 표준양식(ADV)을 제출하여 관련 주규제기관에 제출한다. 주에 등록된 투자자문사는 소규모인 경향이 있으며, 81%는 직원이 1~2명, 99%는 직원이 10명 이하이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운용자산이 약 4,200억 달러에 달하는 주정부 등록 투자자문가는 17,063명이다.
- 외국 개인 고문. 외국 민간 자문사는 다음과 같은 경우 SEC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
 - ① 미국에 사업장이 없는 경우
 - ② 총 15명 미만의 미국 고객과 자문가가 조언하는 사모펀드의 미국 투자자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 ③ 해당 고객이 관리하는 총 자산이 2,500만 달러 미만인 경우
 - ④ 일반적으로 미국 대중에게 투자 조언자로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 경우이며 ERA와 달리 조언자는 특별히 면제된다.

- 자문가법(Advisers Act)에 따른 외국 민간자문가 면제에 따라 보고 또는 기록 보관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조사 대상이 아니며, SEC에 보고서를 제출하지도 않는다.

4) 가족회사(Family Office)

- 가족회사는 일반적으로 부유한 가족이 자산을 관리하고 가족 구성원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한 자문 기관으로 운영된다. 가족회사는 법적으로 자문사법상 '투자자문사'의 정의에서 제외된다. SEC 규정에 따라 "가족회사"는 다음과 같은 회사로 정의된다.
 - ① 규칙에 정의된 대로 "가족 고객"만 보유
 - ② 가족 고객이 전적으로 소유하고 가족 구성원 및/또는 가족 법인이 독점적으로 통제
 - ③ 대중에게 투자 조언자로서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이 면제는 혈연관계가 아닌 두 가족 이상의 재산을 관리하는 다세대 사무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5) 투자회사

- 일반적으로 투자회사는 자체 증권을 발행하고 주로 다른 증권에 투자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공동투자기구(Pooled investment Vehicle, 이하 PIV)이다.
- 투자회사는 규모, 투자자 수 및 유형, 보유기간 및 투자전략 측면에서 투자자문가와 다르다. 투자회사는 1940년 투자회사법(회사법)에 의해 확립된 규제 체제의 적용을 받으며, 면제 자격이 없는한 SEC에 등록해야 한다.
- 투자회사에는 개방형 투자회사, 폐쇄형 투자회사, 단위투자신탁(UIT), 액면인증회사 등 4가지로 분류한다. 등록된 많은 개방형 투자 회사(예: 뮤추얼 펀드 또는 상장지수펀드)에는 은행비밀법(BSA) 및 해당 시행 규정에 따라 AML/CFT 의무가 적용된다.
 - 다만, 증권을 발행하고 주로 증권 투자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회사가 회사법에서 정의된 "투자회사"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 일부는 사모펀드 등 "투자 회사"의 정의에서 제외되므로 연방증권법에 따라 투자 회사로 규제되지 않는다. (또는 등록이 필요)
- (SEC 등록 투자 회사) SEC에 등록된 투자회사는 초기 등록 양식을 제출하는 것 외에도 SEC에 정기적으로 주주 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최소 자본금을 충족해야 한다.

6) 투자 자문 활동의 기타 주요 참여자 펀드 관리자

- 펀드와 투자자에게 평가, 관리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기관을 말하며, 이러한 서비스에는 수수료 계산, 장부 및 기록 유지, 구독 및 상환 처리 등이 있다.
- 다수 펀드 관리자는 잠재 투자자에 대해 실사를 실시하고 펀드를 대신하여 AML/CFT 요건(펀드의 국내법에서 요구하는 경우) 또는 자발적인 AML/CFT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도 있다.
 - 일부 대형 금융기관에는 자체 펀드는 물론 외부 펀드도 관리하는 내부 펀드관리자가 있다. 그러나 일부 펀드 관리자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 기반을 둔 독립 법인이다 (예: 케이맨 제도와 아일랜드는 펀드 관리 활동에 널리 사용되는 지역임)

7) 프라임 브로커

- 프라임 브로커는 대규모 기관 고객, 패밀리 오피스 또는 헤지 펀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 또는 브로커-딜러를 말한다.
 - 이러한 서비스에는 거래 실행, 결제, 자금 조달(마진 대출 포함)등이 있다. 자문사는 하나 이상의 프라임 브로커를 보유할 수 있으며, 펀드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프라임 브로커를 통해 모든 사업을 진행할 의무는 없다.
 - 프라임 브로커는 은행 또는 브로커-딜러이기 때문에 BSA 및 그 시행 규정에 따라 또는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운영되는 프라임 브로커의 경우 유사한 외국 AML/CFT 제도에 따라 포괄적인 AML/CFT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이러한 AML/CFT 제도의 효과적인 구현은 관할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다. 투자자문 규제 체계

- 관련 법률 및 규정
 - 자문자법(Advisers Act)은 시행 규칙 및 규정과 함께 기타 연방 증권법 및 시행 규칙 및 규정과 함께 투자 자문 활동(투자 자문가가 수행하는 기타 활동의 특정 측면 포함)을 관장하는 기본 틀을 형성한다.
 - 1933년 증권법(증권법) 및 거래법: 1996년과 2010년에 자문사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운용자산이 1억 달러 이상이거나 등록된 투자 회사에 자문을 제공하는 투자 자문사만 SEC에 등록할 수 있다. 다른 투자자문사는 일반적으로 해당 투자자문사는 주 사무소와 사업장을 운영하는 주에 등록합니다.
- 수탁규정
 - 일반적으로 RIA가 보관하는 고객 증권 및 자금을 "적격 보관인"(미국 AML/CFT 의무가 적용되는 금융기관일 수 있지만 유사한 AML/CFT 의무가 적용되는 외국 금융 기관이어야 함)은 RIA에 의한 손실, 오용, 도난 또는 남용 및 지급 불능 또는 재정적 손실로부터 자문 고객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 자격을 갖춘 수탁인은 고객의 이름으로 각 고객을 위한 별도의 계좌에 고객 자금과 증권을 유지하거나, 고객의 대리인 또는 수탁자로서 투자 자문가의 이름으로 고객 자금과 증권만 포함하는 계좌에 보관한다.
- 준법감시 규정
 - 준법감시 규정에 따라 RIA는 자문법 및 시행 규칙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고안된 서면 정책 및 절차를 채택하고 구현해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 절차는 해당 회사의 운영 특성을 고려해야 하며 모든 위반 사항을 예방, 감지하고 즉시 시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 준수 규정은 또한 각 RIA가 정책 및 절차를 매년 최소 1회 검토하여 실행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결정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검토사항으로는 전년도에 발생한 규정 준수 문제, RIA 또는 계열사의 비즈니스 활동 변경, 해당 법률 또는 규정의 변경을 고려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규정 준수 규칙은 각 RIA가 규정 준수 정책 및 절차를 관리할 최고 규정 준수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요구합니다.

- 장부 및 기록 규정 : RIA는 투자자문 사업과 관련된 장부와 기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동 장부와 기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① 재무 및 회계 기록-투자 조언 제공 및 고객계좌 거래와 관련 기록
 - ② 고객계좌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RIA의 권한을 문서화하고 광고 및 성과 관련 기록
 - ③ 윤리강령 규정 및 RIA를 대신한 면 공개 문서 및 RIA를 대신하여 고객의 변호사가 제공한 공개 문서와 법적근거에 따른 RIA의 연례 검토 과정에서 준비된 모든 문서
 - ④ 고객 자금을 보관하거나 감독 또는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에 대한 추가기록 유지 등

라. 기존 완화 조치

1) 자금세탁방지(이하 AML/CFT) 조치

- 투자 자문가는 일반적으로 포괄적인 AML/CFT 요구 사항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경우에 따라서 신원확인 프로그램(CIP), 고객확인(CDD) 및 의심활동보고(SAR) 제출과 같은 특정 AML/CFT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 일부 투자 자문사는 해당 기업이 등록된 브로커-딜러(즉, 이중 등록자)이거나 은행이거나 은행의 운영 자회사인 경우 특정 AML/CFT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 투자 자문가를 포함하는 전사적 AML/CFT 프로그램을 구현할 수 있는 은행 또는 브로커-딜러의 계열사로서 투자 자문가는 브로커-딜러(예: 공동 고객의 경우 CIP) 또는 기타 금융 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AML/CFT 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
 - RIA는 포괄적인 AML/CFT 프로그램 요구 사항을 광범위한 규정 준수 프로그램에 포함되지는 않으며 AML/CFT 체제의 목표와 목표에 대한 친밀도와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다.

2) 비적용 자금세탁방지(AML/CFT) 규정 등

- RIA는 무엇보다도 고객에 대한 마케팅 및 공개, 고객 거래에 대한 최선의 실행, 이해 상충 및 징계 정보 공개 등을 관리하는 다양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다.
- 이러한 규제 요건은 AML/CFT 위험을 명시적으로 해결하도록 설계되지는 않지만 RIA로 인한 사기, 유용 또는 기타 불법 행위로부터 고객을 보호하도록 일부 AML/CFT 조치와 유사한 제한을 가하는 정보가 필요한 특정 상황에서는 정보의 수집 또는 공개가 필요할 수 있다.
- 수탁 관련 규정
 - 집행 브로커 역할도 하는 자격을 갖춘 관리인은 거래 자체가 의심스러울 수 있는 투자자문 절도, 사기 또는 시장 조작을 탐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다.
 - RIA는 자격을 갖춘 여러 명의 관리인이나 브로커를 활용할 수 있다.

2024

VENTURE CAPITAL AML GUIDE BOOK

벤처캐피탈 업계를 위한 자금세탁방지 교육은
국내 유일의 벤처캐피탈 전문 교육기관인
한국벤처캐피탈연수원(edu.kvca.or.kr)에서 진행됩니다.

“VC 자금세탁방지교육, 한국벤처캐피탈연수원에서 시작해 보세요!”

벤처캐피탈 및 벤처투자조합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길라잡이

